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435-01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2013. 12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책임연구원 김 승 근

○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승근 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중신 (주)마을제작소 대표  
권순찬 (주)마을제작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신지은 (주)마을제작소 선임연구원  
김세진 (주)마을제작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재엽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부과정  
신지혜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부과정  
권용선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부과정  
김윤지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부과정



# 목 차

## 서\_연구과제의 개요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0.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7
0.3 연구과업의 내용 .....	8
0.4 연구추진체계 .....	10

## 제1장\_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1.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개념 및 유형 .....	13
1.1.1 공동생활홈 .....	13
1.1.2 공동급식시설 .....	18
1.1.3 작은 목욕탕 .....	19
1.2 국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	20
1.2.1 농촌 고령자시설 관련 연구동향 .....	20
1.2.2 정부 중앙부처의 지원제도 및 정책 .....	24
1.2.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 .....	29
1.3 국외 선행연구 및 정책 .....	32
1.3.1 미국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32
1.3.2 유럽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36
1.3.3 일본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51
1.4 국내외 연구 및 사례에 나타난 시사점 .....	55

## 제2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실태분석

2.1 공동생활홈 .....	61
2.1.1 지역별 시설현황 .....	61
2.1.2 거주유형별 분류 .....	63
2.1.3 운영방식의 유형과 특성 .....	65
2.2 공동급식시설 .....	71
2.2.1 지역별 시설현황 .....	71
2.2.2 운영실태 .....	72
2.3 목욕탕 .....	76
2.3.1 지역별 시설현황 .....	76
2.3.2 운영실태 .....	77
2.4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과제 .....	82

## 제3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분석

3.1 조사개요 .....	91
3.1.1 조사목적 및 내용 .....	91
3.1.2 조사대상지의 선정 .....	94
3.1.3 조사대상지 개요 .....	99
3.2 공동생활홈 .....	105
3.2.1 사업추진 방식 .....	105
3.2.2 시설의 물리적 현황 .....	109
3.2.3 운영주체 및 방식 .....	116
3.3 공동급식시설 .....	120
3.3.1 사업추진 방식 .....	120
3.3.2 시설의 물리적 현황 .....	122
3.3.3 운영주체 및 방식 .....	124

3.4 작은 목욕탕 .....	127
3.4.1 사업추진 방식 .....	127
3.4.2 시설의 물리적 현황 .....	129
3.4.3 운영주체 및 방식 .....	131
3.5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소결 .....	134
3.5.1 시설의 건축방식 .....	134
3.5.2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세부유형별 장단점 분석 .....	136

## 제4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유형 및 모델제안

4.1 공동생활홈 .....	139
4.1.1 기존 모범사례의 검토 .....	139
4.1.2 거주유형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및 기준 .....	167
4.1.3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지침 .....	173
4.1.4 운영관리 방안 .....	176
4.2 공동급식시설 .....	179
4.2.1 모범사례의 시설규모 및 기준 .....	179
4.2.2 유지관리방안 .....	181
4.3 작은 목욕탕 .....	182
4.3.1 모범사례의 시설규모 및 기준 .....	182
4.3.2 유지관리방안 .....	184
4.4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적 복합화와 그 가능성 .....	186
4.4.1 복합형 .....	186
4.4.2 연계형 .....	188

## 결\_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	202
[회의록] .....	206

[조사양식]	211
[조사진행과정]	226

## 표 목 차

표 1-1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의 개념비교	16
표 1-2	공동생활홈의 개념	17
표 1-3	공동급식시설의 개념	18
표 1-4	작은목욕탕의 개념	19
표 1-5	농촌고령자 주거실태 관련연구	21
표 1-6	농촌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	22
표 1-7	농촌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	23
표 1-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개요	26
표 1-9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	31
표 1-10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의 유형분류	34
표 1-11	영국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38
표 1-12	독일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39
표 1-13	스웨덴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42
표 1-14	핀란드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46
표 1-15	덴마크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50
표 1-15	일본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53
표 2-1	지자체별 공동생활 홈 현황	62
표 2-2	공동생활홈의 개념	63
표 2-3	거주유형에 따른 공동생활홈	65
표 2-4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66
표 2-5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67
표 2-6	거주유형에 따른 운영주체	68
표 2-7	운영비 조달에 따른 공동생활 홈	69
표 2-8	지역에 따른 운영비조달	69
표 2-9	공동급식시설 현황	70
표 2-10	지역별 공동급식시설	71
표 2-11	지역별 기존시설이용 분포현황	72
표 2-12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73
표 2-13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74
표 2-14	공동급식시설 실태분석	74
표 2-15	운영비조달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75

표 2-16 지역별 작은목욕탕 시설현황 .....	76
표 2-17 사업주체별 작은목욕탕 .....	78
표 2-18 시설유형에 따른 사업주체 .....	78
표 2-19 운영주체에 따른 작은 목욕탕 .....	79
표 2-20 작은 목욕탕 시설현황 .....	80
표 2-21 운영비조달에 따른 사업주체 현황분석 .....	81
표 2-22 공동생활 홈의 유형분류 .....	82
표 2-23 공동급식시설의 유형분류 .....	83
표 2-24 작은목욕탕의 유형분류 .....	84
표 3-1 조사의 일정 및 진행내용 .....	92
표 3-2 고령자 공동시설의 선정기준 .....	95
표 3-3 고령자 공동시설의 선정과정 .....	95
표 3-4 고령자 공동시설 조사대상지 최종선정 .....	97
표 3-5 공동생활 홈 조사대상지 개요 .....	99
표 3-6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개요 .....	102
표 3-7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개요 .....	103
표 3-8 공동생활 홈 사업추진 방식별 분류 .....	105
표 3-9 공동생활 홈 물리적 현황별 분류 .....	109
표 3-10 공동생활 홈 1인당 사용면적(면적/거주인원으로 산정시) 집계표 .....	113
표 3-11 공동생활 홈 운영주체 및 방식별 분류 .....	116
표 3-12 공동급식시설 사업추진 방식별 분류 .....	120
표 3-13 공동급식시설 물리적 현황별 분류 .....	122
표 3-14 공동급식시설 운영주체 및 방식별 분류 .....	124
표 3-15 작은목욕탕 사업추진 방식별 분류 .....	127
표 3-16 작은목욕탕 물리적 현황별 분류 .....	129
표 3-17 작은목욕탕 운영주체 및 방식별 분류 .....	131
표 3-18 공동생활홈 거주유형별 장단점 .....	137
표 3-19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설치유형별 장단점 .....	138
표 4-1 공동생활 홈 사례검토 대상의 선정 .....	142
표 4-2 공동생활 홈 사례개요 .....	143
표 4-3 월성여자경로당 공동생활 홈 개요 .....	144
표 4-4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공동생활 홈 개요 .....	147
표 4-5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공동생활 홈 개요 .....	151

표 4-6 갈산리 공동생활 홈 개요	154
표 4-7 덕암리 공동생활 홈 개요	157
표 4-8 장승리 공동생활 홈 개요	159
표 4-9 월문리 공동생활 홈 개요	161
표 4-10 부흥리 공동생활 홈 개요	163
표 4-11 송면리 공동생활 홈 개요	166
표 4-12 세계가족단체협회의 콜로뉴 기준	168
표 4-13 일반주택수준(영국)	168
표 4-14 공동생활 홈 거주유형별 내부공간 면적의 검토	169
표 4-15 공동생활 홈 거주유형별 내부공간 면적구성의 검토	173
표 4-16 건축물의 공간규모에 따른 거주유형별 활용가능성과 지침	175
표 4-17 공동생활 홈 운영유지관리 현황	177
표 4-18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개요	180
표 4-19 옥곡 공중목욕장 개요	183
표 4-20 복합형의 조합유형에 관한 특성고찰	188
표 4-21 연계형의 유형구분과 특징	190

## 그림 목 차

그림 0-1 연구추진체계	14
그림 1-1 필라델피아 CCRC(샤논델)	35
그림 1-2 쉘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	37
그림 1-3 케어 홈(Care Home)	37
그림 1-4 독일의 요양시설	40
그림 1-5 스웨덴의 고령자주택	43
그림 1-6 고령자주택의 내부	43
그림 1-7 스웨덴의 그룹홈	44
그림 1-8 그룹홈의 개실내부	44
그림 1-9 핀란드 서비스하우스의 평면	47
그림 1-10 핀란드 서비스하우스 개인실 단위평면	47
그림 1-11 핀란드 노인홈 사례-1	48
그림 1-12 핀란드 노인홈 사례-2	48

그림 1-13 덴마크 고령자주택(호스홀름) .....	50
그림 1-14 고령자주택(호스홀름)의 내부 .....	51
그림 1-15 프라이엠의 내부 .....	51
그림 1-16 생활지원하우스(야마쿠니) .....	54
그림 2-1 지역별 시설현황분석 .....	61
그림 2-2 거주유형별 공동생활 홈 현황분석 .....	63
그림 2-3 지역별 공동거주형 현황분석 .....	64
그림 2-4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66
그림 2-5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67
그림 2-6 운영비조달에 따른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68
그림 2-7 지역별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71
그림 2-8 시설유형별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72
그림 2-9 사업주체별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73
그림 2-10 운영주체별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73
그림 2-11 운영비조달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74
그림 2-12 지역별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	76
그림 2-13 시설유형에 따른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	77
그림 2-14 사업주체에 따른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	77
그림 2-15 운영주체에 따른 작은 목욕탕 현황분석 .....	79
그림 2-16 운영비조달에 따른 작은 목욕탕 현황분석 .....	81
그림 2-17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82
그림 2-18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83
그림 2-19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	84
그림 3-1 조사대상지 사례조사 진행 사진 .....	93
그림 3-2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사례조사 대상지 분포 현황 .....	98
그림 3-3 공동생활홈 조사대상지 건축물 외관 사진 .....	100
그림 3-4 공동생활홈 조사대상지 건축물 내부 사진 .....	102
그림 3-5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건축물 외관 사진 .....	102
그림 3-6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건축물 내부 사진 .....	103
그림 3-7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건축물 사진 .....	104
그림 3-8 공동생활 홈 1인당 사용면적 그래프 .....	113
그림 3-9 거주 유형별 현황 사진 .....	114
그림 3-10 공동생활 홈 조사대상지 도면 .....	115



그림 3-11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도면	124
그림 3-12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도면	131
그림 4-1	공동생활 홈 사례검토 대상 외관사진	142
그림 4-2	월성여자경로당 평면구성	145
그림 4-3	월성여자경로당의 내부 공간	146
그림 4-4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평면구성	148
그림 4-5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의 내부공간	149
그림 4-6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평면구성	152
그림 4-7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의 내부공간	152
그림 4-8	갈산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155
그림 4-9	갈산리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	156
그림 4-10	덕암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158
그림 4-11	덕암리 공동생활홈 전경 및 내부공간	158
그림 4-12	장승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160
그림 4-13	장승리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	160
그림 4-14	월문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162
그림 4-15	월문리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	162
그림 4-16	부흥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164
그림 4-17	부흥리 공동생활홈의 내외부 공간	164
그림 4-18	송면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167
그림 4-19	송면리 공동생활홈의 내외부 공간	167
그림 4-20	I.F.H.P 케른 기준에 의한 주택 내부공간 면적구성	176
그림 4-21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평면구성	181
그림 4-22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내외부	182
그림 4-23	옥곡 공중목욕장 평면구성	184
그림 4-24	옥곡 공중목욕장 내외부	185
그림 5-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체계	198

## 서\_연구과제의 개요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0.3 연구의 내용

0.4 연구추진체계



# 서\_연구과제의 개요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에는 도시로의 산업 및 경제구조 집중화 현상에 의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지역에는 최근 고령의 독거노인가구와 노후화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는, '00년 약 28만 가구(9.2%)에서 '10년 약 44만 가구(13.3%)로 10년 사이에 4.1%가 증가하였으며,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 수의 약 21%에 해당하는 64만 동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독거 노인가구와 노후화된 주택의 증가추세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 겨울철 난방미흡, 영양 불균형, 위생상태 불량 등 농촌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 독거노인 중 한 해 최소 500~1,000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독사의 연령층도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
- 겨울철 난방미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난방시설 중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49.1%이며, 겨울철 난방비는 월 평균 약 6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도시지역의 약 3배(KREI, 201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저생활비(3인기준 1,260,316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최소 50%를 겨울철 난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1일 식사 결식률은 7.9%, 목욕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는 7.7%에 이르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위생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9년 7월 국회 농어업선진화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공동체형 농어민 홈 조성’ 및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노인공동 주거시설 지원’에서 정책이 제안되는 등 정부의 친 서민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sup>1)</sup> 있다.
- 또한, 2013년에 들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52번)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에서 ‘공동생활 홈 조성 추진’과 ‘마을회관·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sup>2)</sup> 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HOPE프로젝트)방향 보고서」 71쪽의 ‘고령자 맞춤 서비스 확대’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장날 목욕탕(작은 목욕탕) 등의 시범조성에 대하여 언급<sup>3)</sup>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국정과제(52번 과제)에서 발췌  
52번 과제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공동생활 홈 조성
  - 마을회관·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확대
-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HOPE프로젝트) 보고서(71쪽)에서 발췌  
② 고령자 맞춤 서비스 확대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공동급식시설을 설치
  - 다양한 형태의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시범조성
  - 장날 목욕탕(작은 목욕탕) 시범조성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멀리 도시지역에 떨어져 사는 자녀 등의 부양자보다 긴 세월 동안 같은 터전에서 동고동락해 온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마을 단위로 공동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필요<sup>4)</sup>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한 관련 사례조사 및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델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개발 연구, 2010, 1쪽  
 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3)를 참조하여 기술함.  
 3)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방향 보고서(2013), 71쪽  
 4) 김용하, 독거노인 100만 시대와 사회안전망, 문화일보, 2010.7.23., 29면을 참조.

## 2) 연구목적

- 현재,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복지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고령자 농가,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기반이 미약한 취약계층<sup>5)</sup>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2013)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농어촌 주택의 약 25%는 주택법이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군에 속한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2%, 면 지역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이 각각 45%와 52%에 불과하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군 지역 주택의 비율이 29%,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34만동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정책수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선, 독거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다. 대부분의 독거 노인가구는 노후화된 재래식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 난방미흡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영양 불균형, 위생상태 불량 등의 복합적 요인이 연동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일상생활 속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인 측면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홀로 의지할 곳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고독감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은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대인기피증 또는 사회공포증 등으로 이어져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마을 내의 사회적 유대감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병 등과 같은 질환성 병증이 수반될 경우에는 소위 ‘고독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5) 취약계층(또는 소외계층)은 소득기반이 미약한 고령자 농가,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결혼가정 등을 일컬으며, 이 중에서 고령자 독거노인은 대부분이 고령자 농가,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내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생활 속의 정서적인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공동생활체적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독거 노인가구 등의 거주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숙식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을 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노인 공동주거(Senior Community Living Home)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이와 더불어, 각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공동생활체적 거주환경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과 공동목욕탕 등의 사회기반적 공동이용시설을 동시에 도입하는 정책수립 또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로서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을 대상으로 하여,
  - ①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정립과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고찰하고,
  - 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또는 건축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유형별로 분석·검토하며,
  - ③ 최종적으로,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거주특성 및 정주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농어촌 고령자 및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0.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및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먼저, 물리적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 및 민간 지원사업에 의해 조성하고 있는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 등 세 가지 종류의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현재 농촌마을 고령자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생활 속의 정서적인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며, 각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공동생활체적 거주환경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시간적 범위로는 2013년 11월 현재 시설물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는 사례조사를 통한 시설의 조성방식 및 규모, 지원내용, 거주유형, 설계기준, 운영주체 및 지원내용, 지원근거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 마지막으로, 과업지시서 상에 기술된 과업의 내용 및 범위를 토대로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행한다.
  - ② 조사된 공동이용시설을 유형화하여 분류·분석하고, 관련 법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③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타 부처 관련제도)의 결합방식 및 운영사례를 조사한다.
  - ④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거주 후 평가(POE)를 시행하고, 거주 후 평가에 대한 지표개발 및 종합분석을 실행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추후 사업시행에 참고하도록 공동이용시설을 유형화 및 모델을 제시한다.



### 0.3 연구과업의 내용

- 본 연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 및 민간 지원사업에 의해 조성하고 있는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 등에 관한 사례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여,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사례조사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및 민간지원 사업에 관한 사례조사 및 일본 등 관련 시설에 관한 해외 사례조사

#### 2) 사례조사 결과를 유형화하여 분류·분석하고, 관련 법규 등의 종합적 검토

- 조사대상 사례의 조성방식 및 규모, 지원내용, 거주유형, 설계기준, 운영주체 및 지원내용, 지원근거 등의 분석
  - － 유희시설 리모델링 사례, 시설물 규모 및 투입예산, 사용자 현황 파악, 운영관리 주체 및 지원현황, 지원근거 등
- 사례조사를 토대로 한 유형분류 및 특징(장·단점) 분석
  -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 시 유형별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류·분석
- 공동생활 홈 적용법규, 마을단위 각종 지원제도 및 내용
  - － 타 부처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 제시

#### 3)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소프트웨어 결합방식 및 운영사례 조사

- 방문진료, 노인케어, 노인일자리 사업, 가사도우미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과의 결합방식 및 운영방식

#### 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거주 후 평가(POE) 지표개발 및 종합분석

- 기술적 요소(거주자 건강, 안전, 안정), 기능적 요소(거주자 사용 편의성 등), 사용자 만족 등을 면밀히 분석

#### 5) 지자체가 사업시행에 참고하도록 유형화 및 모델제시

- 각 시설별로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사회적 요소를 도출

#### 5) 결론 및 구상

- 최종적으로,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모델을 구축

## 0.4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추진과정은 [문제제기 및 필요성 검토], [연구의 방향성 및 전체상 설정], [조사계획 및 실행], [관련제도 및 사례검토], [시설현황 분석], [현장조사 및 분석], [유형 및 사례분석], [연구결과의 도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 연구진의 구성은 총 9명으로, 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1인, 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4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 체계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연구의 방향설정과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별로 담당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구성하였다. 공동이용시설별로 구체적인 팀 구성을 살펴보면, 공동생활 홈은 연구원 1인과 연구보조원 2인이 담당하였으며, 그 외 공동급식시설과 공동목욕탕은 연구원 1인과 연구보조원 1인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그림 0-1 연구추진체계

## 제1장\_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

- 1.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개념 및 유형
- 1.2 국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 1.3 국외 관련제도 및 정책
- 1.4 국내의 연구 및 사례에 나타난 시사점



# 제1장\_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 1.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개념과 유형

### 1.1.1 공동생활 홈

#### 1)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의 유형별 개념

-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매우 다종·다양하다. 직접적으로는 공동생활주거<sup>1)</sup>, 그룹 홈<sup>2)</sup>, 노인 홈<sup>3)</sup>, 경로 홈<sup>4)</sup>,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sup>5)</sup>, 노인복지주택<sup>6)</sup>, 노인집합주거<sup>7)</sup>, 노인주택<sup>8)</sup>, 노인공동생활주택<sup>9)</sup>, 공동생활 홈<sup>10)</sup>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좀 더 광의적인 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양로원(양로시설) 등도 공동주거시설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생활주거(Community Living Home)이라는 용어는 주민이 하나의 공간(장소)에 공통으로 모여 사는 주택과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을 공동주거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sup>11)</sup>.
- 그룹 홈(Group Home)은 스웨덴에서 주로 치매노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시작된 주거유형으로, 6~8개의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

1) 박현춘외 2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2호(통권41호), 2011. 5, 1~8쪽

2) 오찬옥,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3호, 2008, 59~70쪽

3)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 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2권 2호(통권208호), 2006. 3, 23~32쪽

4) 조원석외 1인, 독거노인용 경로 홈의 유형개발과 계획기준의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4호(통권47호), 2012. 11, 27~35쪽

5) 노래원의 1인,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를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활성화 계획,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10, 141~144쪽

6)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

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 12

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10)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1호(통권 48호), 2013. 2, 21~28쪽

11) 박현춘외 2인(2011), 위의 논문, 2쪽

성된 주택을 말한다. 개인공간은 침실, 욕실, 거실(개인), 수납공간으로 구성되고, 공동공간은 식당과 부엌, 그리고 거실(공동) 등으로 이루어진 것<sup>12)</sup>이 일반적이다.

- 노인 홈(Senior's Home)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여러 규제가 있는 공적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입주자가 부담하는 입주금, 관리비, 생활비, 요양비 등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홈으로, 입주의 결정은 홈(시설)과 입주 희망자의 자유의사로 계약을 하여 운영<sup>13)</sup>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며, 대규모의 노인 홈을 실버타운(Silver Town)으로 부르기도 한다.
- 경로 홈(Home for the Elderly)은 마을 단위로 3인 이상 9인 이하의 독거노인 전용주거로서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확장 형태로 추진 가능한 시설<sup>14)</sup>을 지칭한다.
-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은 노래원의 1인(2010)의 연구<sup>15)</sup>에서 대상지가 갖고 있는 집객요소를 극대화 시켜 외부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소외계층 및 마을주민들에게 할 일을 부여하여 도농교류의 지속적인 순환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복합주거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 공동생활 홈과 관련한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31조 제1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32조 제1항 제3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공동주택

12) 오찬욱(2008), 위의 논문, 60쪽

13) 이진혁(2006), 위의 논문, 24쪽

14) 조원석외 1인,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 제도와 경로 홈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11, 45쪽

15) 노래원의 1인(2010),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를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활성화 계획,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제30권 제1호(통권 제54집), 2010. 10, 27~28쪽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 등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 2제 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음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음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는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시설 주거로서, 노인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상생활에서 자립이 가능한 독신 혹은 부부의 고령자가 입주대상인 주거<sup>16)</sup>를 뜻한다.
- 노인주택(Senior’s House)은 노인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노인 거주자의 독립성과 선택권이 보장되어 노인시설과는 다른 시설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노인주거 중에서 단독주택 및 3세대 동거형 아파트 등을 이른다<sup>17)</sup>.
-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은 노인의 자립적인 생

16)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10쪽

1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10쪽



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① 20~30가구 정도의 소규모로 계획되고 개별 거주공간은 부엌과 욕실이 있는 완결된 주택, ② 공동거실, 공동부엌 등의 공용공간을 활용하고 관리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③ 응급 시 대처 시스템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가 단지 내 또는 단지 밖에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노인시설이 아닌 주택을 이른다<sup>18)</sup>.

- 마지막으로, 공동생활 홈(Community Living Home)이라는 용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을 통해 농어촌 집 고쳐주기 “희망 家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 농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 홈 조성을 통해 사용하게 되었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생산을 통해 주민과 교류하는 등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시도하였다<sup>19)</sup>.

## 2) 공동생활 홈의 정의

- 고령자 공동주거시설과 관련한 여러 용어를 통하여 그 개념을 살펴 본 바,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은 ‘시설(Facility)’과 ‘주거(Home 또는 House)’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는 점을 알 수 있다(표 1-1).

표 1-1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의 개념비교

구분	시설(Facility)	주거(Home 또는 House)
개념	고령자에 대한 공공, 의료, 케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시설 개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 공간적 주거개념
종류	공동생활시설(Community Living Facilities) 그룹 홈(Group Home) 노인홈(Senior's Home)/실버타운(Silver Town)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경로 홈(Home for the Elderly)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me)

1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10쪽

19) 김승근(2013), 앞의 논문, 22쪽

- ‘시설’은 고령자에 대한 공공, 의료, 케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시설로서의 개념으로 파악되며, ‘주거’는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적 주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주거’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련 시설에 관한 용어로는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특히, 이 관련 용어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use)에 대하여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범위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1-2 공동생활홈의 개념

구 분	내 용
개 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사 관련용어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랑의 집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1.1.2 공동급식시설

- 급식시설은 ‘다수의 사람 또는 단체가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리 및 식당의 제공을 위한 각종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의 대표적인 예는 학교(학생식당)나 공장 등의 구내식당이며, 비영리의 급식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NGO, NPO, 종교단체 등)에서 무료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대표적이다.
- 최근, 농촌마을 및 중소도시 외곽의 쇠퇴지역에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또는 경로당) 등의 마을 공공시설에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공동급식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공동급식시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공동시설의 한 종류로서 공동급식시설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 또는 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급식시설’이라 정의하고, 특히, 마을회관, 노인회관(또는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등의 마을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 내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3 공동급식시설의 개념

구 분	내 용
개 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로서 조리 및 식사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경로식당(경남 의령), 공동급식소(전북 완주), 마을 공동식당 등

### 1.1.3 작은 목욕탕

- 목욕탕의 사전적 의미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는 곳’ 또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으로, 공중목욕탕은 공중이 하나의 장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목욕시설이라 말할 수 있다.
- 최근,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와 인구감소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목욕탕이 운영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점차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에서 지원·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공중목욕탕이 건립되고 있다.
- ‘작은 목욕탕’은 전라북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책으로 작은 규모의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면서 명명한 용어로서, 그 의미는 ‘남녀가 격일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와 비슷한 개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장날목욕탕’이 있다. 장날목욕탕은 읍면단위의 농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장날에만 문을 여는 목욕탕을 병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문을 여는 시기만 다를 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과 운영시스템이 매우 유사하다.
- 본 연구에서는 작은 목욕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에서 채용하여 용어 그대로 사용하며, 그 개념은 ‘남녀가 격일제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으로,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 목욕서비스 설비를 마련하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였다.

표 1-4 작은목욕탕의 개념

구 분	내 용
개 념	남녀가 격일제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으로,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 목욕서비스 설비를 마련하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장날 목욕탕, 공중목욕탕 등

## 1.2 국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 1.2.1 농촌 고령자시설 관련 연구동향

-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농촌 고령자시설과 관련한 최근 연구동향은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관련 연구’,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와 관련해서는 주로 저소득층 독거가구 고령자의 주거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케어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 등 주로 서비스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주거 시설에 관한 공간 및 기능 등의 건축계획적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한편, 현재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로서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 목욕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고령자 주거시설과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촌 고령자 주거실태 관련 연구

- (사)문화도시연구소는 2009년과 2010년에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2009년), 상남면 및 기린면(2010년)을 대상으로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고령자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였다.
- 채준섭외 2인(2008)은 노인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거실태에 관한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추출된 주거지표를 전라북도의 노인주택에 적용하여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 김승희(2009)는 강원도 지역의 중소도시 3개소를 대상으로 고령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 장미선외 2인(2011)은 쇠퇴지역으로 변한 도시 외곽부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고령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실태를 조사·연구하였다.

표 1-5 농촌고령자 주거실태 관련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내용
(사)문화도시연구소	2009	인제군 서화면 독거노인 주거실태 조사연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을 대상으로 노인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임대주택의 수요를 예측
채준섭 외 2인	2008	전북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분석연구	노인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거실태에 관한 지표를 추출하고, 추출된 주거지표를 통하여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김승희	2009	고령가구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의 중소도시 3개시를 대상으로 고령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사)문화도시연구소	2010	상남면 및 기린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연구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및 기린면을 대상으로 노인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임대주택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장미선 외 2인	2011	쇠퇴지역 거주 노인의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실태 조사연구	쇠퇴지역의 기존에 살고 있는 고령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실태를 조사·연구하였다.
김신영 외 1인	2011	강원도 과소지역의 정주실태 연구	강원도에서 과소화 정도가 심각한 농·산촌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박현춘 외 1인	2011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실태조사 연구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태를 고찰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거를 지원하고 있는 충남의 시범사업을 분석하였다.
김승근	2011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연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및 백곡면을 대상으로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조사·연구하였다.
김강섭 외 1인	2011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시설 이용실태 고찰	농어촌 공동생활시설 중에서 공동주거에 관하여 이용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김신영 외 1인(2011)은 강원도에서 과소화 정도가 심각한 농산촌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실태 및 주거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 정주현황을 고찰하였다.
- 김승근(2011)은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의 고령자 주택에 대한 물리적 주거현황 및 주생활 실태분석을 위하여 개별 농가주택의 실측 및 거주자 히어링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김강섭 외 1인(2011)은 농어촌 공동생활시설 중에서 공동주거에 초점을 두고 주거시설의 이용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②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

- 조부철(2007)은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주거정책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 유종국(2007)은 재가 노인케어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진국인 독일 및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는 동시에, 재가 노인케어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케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2007)는 농촌 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하여 입거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점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조원석외 1인(2011)은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거주에 대한 선호경향을 분석하였다.
- 정인수외 2인(2011)은 전북 김제시 독거노인 생활공동체가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표 1-6 농촌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내용
조부철	2007	농촌노인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주거정책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유종국	2007	재가 노인케어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	재가 노인케어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는 동시에, 재가 노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케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2007	농촌임대주택의 도입방안 및 사업운영체계 연구	농촌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하여 입거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점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원석 외 1인	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거주에 대한 선호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인수 외 2인	2012	농촌지역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거주만족도	전북 김제시 독거노인 생활공동체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최병숙	2013	농촌지역의 주거복지의 개념설정을 위한 연구	농촌주택의 정책을 주거복지의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주택 정책대상의 접근방식을 다루고 있다.
정금호	2013	농촌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거개선 욕구를 도출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주택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 최병숙(2013)은 농촌주택의 정책을 주거복지의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 주택 정책대상의 접근방식을 다루었다.
- 정금호(2013)는 농촌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거개선 욕구를 도출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주택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③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

-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2007)는 농어촌 주택의 실내 및 실외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및 형태 디자인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 박미지(2007)는 시설로부터 주거로 전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시설로서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배치형태의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계획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1-7 농촌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내용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2007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매뉴얼 개발	농어촌 주택의 실내 및 실외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및 형태 디자인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박미지	2007	클러스터 구성방식을 통한 그룹형 노인주거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시설로부터 주거로 전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시설로서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배치로 노인주거시설을 계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 외 2인	2007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 및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령 외 1인	2008	노인주거 복합시설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 주거시설과 자립형 복지시설의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화 방안과 이와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승엽	2008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지역 이용시설에 관한 연구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이용 복지시설의 거점을 구축하고 조직화된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조원석 외 1인	2012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에 관한 건축계획적 특성연구	농어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주거 생활양식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선호경향을 분석하여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건축계획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 박준영외 2인(2007)은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 및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은령외 1인(2008)은 노인 주거시설과 자립형 복지시설의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화 방안과 이와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승엽(2008)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이용 복지시설의 거점을 구축하고 조직화된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 조원석외 1인(2008)은 농어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주거 생활양식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선호경향을 분석하여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건축계획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 1.2.2 정부중앙부처의 지원제도 및 정책

- 그동안 정부중앙부처의 농촌지역 노인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후주택의 개량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안전행정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sup>20)</sup>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sup>21)</sup> 등을 들 수 있으나, 200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일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 특히,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주택개량 외에 기반시설 또한 포함되는 등 다방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들어 농촌지역 노인 주거복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농촌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측면에

20)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서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서비스<sup>22)</sup>가 결합된 형태 또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농촌 고령자 이용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제도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의 3개 부처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요사업 및 정책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고령자이용시설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이 있다.
- 삶의질법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농어촌주택개량자금조성, 자금지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지원제도 및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마을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등이 있다.

##### 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010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단일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2) 현재, 보건복지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르며,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머용 서비스, 종합건강 검진 서비스 등이 있다.

표 1-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제108조(자금지원)
시행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용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민 주민 (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대상지역	·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50백만원/세대, 부분개량 25백만원/세대
대출대상	· 세대 당 주택 건축면적 150㎡ 이하

②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어촌 고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7년 11월에는 농어촌의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다솜등지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현재,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재)다솜등지복지재단이 연계하여 매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③ 농어촌 마을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 2008년부터 (재)다솜등지복지재단에서는 매년 농어촌 마을의 낡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보건진료소 등 기능이 상실되어 비어있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매년 (재)다솜등지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관련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의 농촌 고령자이용시설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으로는 고령자 주거 안정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고령자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지원 사업’, ‘고령자 주택개조지원’, ‘고령자 주거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고령자 임대주택 및 고령자 주택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농촌 고령자 이용시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주요 지원제도 및 사업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①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독 및 다세대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해피하우스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②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

-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 계층의 자가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012년 종료사업)으로, 시행주체는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의 개조, 지붕 보수, 세대 내부 수장공사 등이 있다.

## 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농촌 고령자이용시설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으로는 노인복지법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 외로 기초노령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전국적인 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지서비스가 대부분이다.

-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지원제도는 소득지원, 식생활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지원 등으로 구분<sup>23)</sup>할 수 있다.

① 소득지원

- 크게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되며, 현금 지원은 기초노령연금지원, 무의탁 노인 명절 위로금 지원, 장수 수당,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등이 있고, 서비스 지원은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있다.

② 식생활지원

- 식사 제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과 재가배달 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시설지원사업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지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이 있고, 재가배달 지원서비스에는 무료도시락 배달서비스, 독거노인 대상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 등이 있다.

③ 건강지원

- 의료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지원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지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고, 돌봄서비스 지원은 의치보철사업 지원, 치매조기진단 서비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④ 주거지원

- 주거비를 직접 제공해 주거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비 제공은 무주택 저소득 노인주거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화장실 개선사업, 독거노인 가정환경 개선 등이 있다.

---

23) 각 지역별 노인복지정책사업 안내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 ⑤ 보호지원

- 기타,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노인보호 전문기과 운영, 노인상담소 운영지원, 사회안전망 시스템 설치운영 등이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고령친화모델지역, 노인가구 형태별 주요 정책사업 등이 있다.

## ① 지역사회 복지계획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부터 지역사회 복지계획(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 전반의 복지 문제를 파악하여 과제로 설정하며,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중장기계획이다.

## ② 고령친화모델지역

- 보건, 복지, 생활, 문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고령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였다.

## ③ 노인가구 형태별 주요 정책사업

- 특히, 독거노인의 정책사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독거노인 안전 확인, 건강음료 배달·발굴지원, 명절위로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

## 1.2.3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포함)의 관련사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사업의 시설명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sup>24)</sup>, 사랑의 집<sup>25)</sup>,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공동거주제(의령군), 한울타리 행복의 집(김제시) 등이 있다.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충청남도에서 2010년에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24)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2호(통권45호), 2012. 5, 59~66쪽

25) ‘사랑의 집’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시설과 강원도 인제군에서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설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원”을 목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추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연마을 단위의 경로당, 마을회관, 유희주택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랑의 집’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나눔 경영실천 및 경로사상 고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부지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시설이다. 노인 전용의 공동주택의 형태로 만들어진 시설로 현재까지 용인(2007), 제천(2009), 장성(2009), 강화(2009)의 네 곳에 건축<sup>26)</sup>되었으며,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한 무주택 독거노인이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의 ‘사랑의 집’은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으로써 인제군의 지원에 의해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실시하는 농촌 집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례도 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은 경북 봉화군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집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에게 무료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이다. 본 시설은 봉화노인복지센터 내에 노인 그룹 홈,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노인보금자리<sup>27)</sup>’는 충북 단양군에서 수몰 이주민 중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로 생활안정 지원을 시행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 상기 외에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홈은 경남 의령군 ‘공동거주제’ 및 전북

26) 2010년 기준으로 경북 포항시에 ‘사랑의 집’ 건립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27) 정식명칭은 사랑의 보금자리 “둥지”이다.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있다. 충북 단양군에서 수몰 이주민 중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로 생활안정 지원을 시행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대한 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표 1-9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

시설명칭	시행주체	사업 내용	비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충남	2010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경로당, 마을회관, 유희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으며, 천안, 공주, 예산, 서산의 네 곳에 조성하였음	
사랑의 집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해당 지자체	노인 전용의 공동주택 형태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용인, 제천, 장성, 강화의 네 곳에 조성·운영 중	
	강원 인제군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의해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실시하는 농촌 집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경북 봉화군	봉화군의 자체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에게 무료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봉화노인복지센터 내에 조성하였음	
노인보금자리	충북 단양군	수몰 이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 위탁관리 중임	
공동거주제	경남 의령군	2007년부터 기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공동주거시설로 개보수 등을 통하여 활용한 사례로, 기존 마을회관 내부공간의 변경은 최소화하여 조성하고 있는 사업	
한울타리 행복의 집	전북 김제시		



### 1.3 국외 관련제도 및 정책

-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는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세기 중반부터는 식생활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복지정책 등에 의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급속한 핵가족화와 저 출산 등에 의해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게 되었다.
-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노인부양 비용 증가 등 국가의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내 부족적으로는 독거가구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룹 홈 또는 노인 홈 등 의료 및 케어 서비스가 공존하는 주거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대응해 왔으며, 현재는 고령자 공동체 생활에 기반을 두고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대응이 가능한 공동 생활공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거의 완성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의 관련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3.1 미국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미국 최초의 고령자 관련 법령은 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s)으로 1965년 제정되었으며, 연방정부의 보건사회복지성(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고령사회 관리국(Administration on Aging)을 설치하여 고령자 복지에 관한 조사,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연수계획의 수립,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고령자 프로그램 구축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 고령자법에 의한 고령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고령자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고령사회 관리국을 중심으로 주(州) 단위에는 고

령복지국을 두고, 각 지역단위에는 지역고령자국을 설치하였으며, 이 지역고령자국이 각 지역의 비영리 단체(NPO) 등에 위탁하여 해당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후, 1973년에는 지역 단위의 지역고령자국 보조금 대상으로, 지역 고령자의 요구조사, 고령자 서비스 계획 수립, 고령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등의 항목을 개정·추가하였고, 1987년에는 원주민 고령자 서비스, 저소득 소수민족 고령자 서비스, 고령자 건강증진과 예방지원, 취약계층 고령자 재택 서비스,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고령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2000년에는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이 추가되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간병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고령자 영양 프로그램(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으로 대표되는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Nutrition Services Program)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현재,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고령자 시설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고령자 지역서비스, 고령자 재택서비스, 퇴직 고령자 지역 프로그램,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영양서비스 등이 있고, 시설지원은 그룹 홈(Nursing Home) 등의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 장기요양시설 음부즈맨 제도 등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내 고령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약 90%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고, 약 10%는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 또는 그룹 홈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포티브 하우스와 그룹 홈의 입소자 비율은 각각 50%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서포티브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식사 서비스, 고령자 이동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고령자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집합주택을 지칭하며, 고령자 전용

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고령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도 더불어 입주가 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0]과 같다.

표 1-10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의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고령자 전용	Section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연방정부가 주도한 유일한 고령자 전용주택</li> <li>· 입주자격 : 62세 이상, 연 수입이 지역평균의 반 이하</li> <li>· 서비스 : 생활지원, 간호서비스 등</li> <li>· 특징 : 장기 입주자가 많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의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협력</li> </ul>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NPO가 중심이 되어 발달한 퇴직 고령자 주택</li> <li>· 입주자격 : 퇴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li> <li>·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문화행사, 사회교류 등</li> <li>· 특징 : 최근에는 영리목적의 CCRC도 등장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li> </ul>
고령자 외 입주가능	AL(Assisted L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의료 및 간호 서비스형 고령자 주거시설</li> <li>· 입주자격 : 저소득층 고령자</li> <li>· 서비스 : 각 주(州)별로 서비스를 재량에 맡김</li> <li>· 특징 : 1970년대 후반에 성립되어 네덜란드 그룹 홈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입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중요시함</li> </ul>
	Residential Care Home & Family Care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5~6인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민간 주거시설이며, 가족형의 경우에는 5인 미만임</li> <li>· 입주자격 : 저소득층 고령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간호 서비스</li> <li>· 특징 : 보통의 주택의 형태도 있고, 대규모 시설의 형태도 존재하며, 2~4인의 공동생활이 일반적인 형태</li> </ul>

- 그룹 홈(Group Home)은 일반적으로 중증의 환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 또는 재활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너싱 홈(Nursing Home)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주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룹 홈에서는 간호사, 영양사 등을 중심으로 하여 통원으로 불가능한 의료 및 간호가 이루어지며, 저소득층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최근에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용자 복지를 고려하여 지역에 밀착한 소형의 시설이나 주(州)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AL(Assisted Living)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한 형태의 그룹 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설에서는 민간 재단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외관



로비



집회·오락실



식당(카페테리아)



운동시설(실내수영장)



개인 생활공간(거실)

그림 1-1 필라델피아의 CCRC(샤논텔)

### 1.3.2 유럽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유럽지역의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인 1945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복지 및 고령자 시설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더욱 발달하고 있다.
- 유럽의 복지대국으로는 영국을 필두로 하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 대표적이고,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시설’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진화·정착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영국(United Kingdom)

-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 등도 뒤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당시 제정된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국민보험법은 수혜자의 각출을 근거로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회보험방식이었다.
- 그러나 당시에 실시되었던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타 제도와의 연계성의 결여, 제도 자체의 결함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여서 운영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 영국에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근대적 복지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로, 1946년에 국가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제정되면서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국가보조법

(National Assist Act)을 제정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1960년대까지는 주로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자들을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식은 셸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이다. 셸터드 하우스는 어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노인보호주택으로, 지역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적게는 10인, 많게는 20인 정도가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1-2 셸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

- 입주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세탁, 청소 등의 가사노동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노쇠현상이 심한 고령자들의 경우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가사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된다.



그림 1-3 케어 홈(Care Home)

- 한편,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의 대표적인 용어는 케어 홈(Care Home)으로 불린다. 케어 홈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NPO 또는 NGO 등의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표 1-11 영국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 분	시설명	개 요
주거시설	셸터드 하우스 (shelterd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정부가 주도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고령자 전용주택</li> <li>· 입주자격 :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li> <li>· 서비스 : 가사지원, 간호사 파견, 식사배달,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등</li> <li>· 특징 :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후반 동안 임대용 노인보호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으나, 영국의 경제위기 이후 점차로 미영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li> </ul>
요양시설	케어 홈 (Care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치매 및 노인병 환자의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치매 및 노인병 환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의료 및 간호 서비스</li> <li>· 특징 : 대부분이 중규모 이상의 큰 형태로, 개인거주공간과 공공거주공간으로 구분하여 구성되며, 가사, 조리, 세탁, 수선 등의 담당 스태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li> </ul>

## 2) 독일(Germany)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부는 경제부흥에 몰두하여 국가를 재건하는데 국력을 집중하였고,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늦은 1970년대부터이다.
- 이후, 독일 정부가 고령자 등을 위하여 요양보험을 도입한 것은 1994년으로, 2005년까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의 정비, 요양시설의 지원, 치매 및 노인병 대책강화, 고령자 연금지원, 각종 고령자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다.
- 노인요양 및 고령자 관련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은, ‘개인 생활의 존엄성 확보 및 자기의사 결정’, ‘가정에서의 요양’, ‘요양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 및



자각’, ‘보험 적용범위의 합리화’ 등으로 요약된다.

- 고령자 주거시설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양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12]와 같다.

표 1-12 독일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 분	시설명	개 요
주거시설	노인용 주거 (Altenwohnun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용 전용주거시설</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레스토랑, 매점, 은행 등 시설이 병설하여 입지</li> <li>· 특징 :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형 노인주거로서 일정한 월세와 관리비 등이 요구되며, 공동체 커뮤니티를 제공</li> </ul>
	세대복합형 주거 (Jung-Alt-Wohngemeinsch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고령자와 학생, 고령자와 젊은 층이 같이 거주하면서 상하간에 생활을 돕는 현대적 주거형태</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특별히 없음</li> <li>· 특징 : 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활동시간대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구성된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시설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li> </ul>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Station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치매 및 노인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24시간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미용원,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입지적으로 도심이나, 주요 간선도로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게 하였고, 건물 내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요양시설</li> </ul>
	단기체재요양시설 (Kurzeitpfle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노인병의 환자가 단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공공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미용원,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일시적으로 케어를 요구하는 노인병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경우 입거를 하는 경우나, 노인요양시설로 입거를 위하여 대체로 잠시 머무르는 요양시설</li> </ul>

- 독일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은 노인용 주거(Altenwohnungen)이다.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주거시설로, 입주하면 주택 내에 요양실, 레스토랑, 매점, 은행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병설하였다.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형 노인주거로서 일정한 임대료와 관



리비를 요구하며, 공동거주를 통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개념의 주거시설이다.

-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거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세대 복합형 주거(Jung-Alt-Wohngemeinschaft)가 있다. 고령자와 학생,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생활을 돕는 현대적 주거형태로, 입주자격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이다. 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활동시간대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구성된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시설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 요양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Stationar)과 단기체재요양시설(Kurzzeitpflege)로 구분된다.



노인요양시설(Stationar)



노인요양시설의 집회·오락실



단기체재요양시설(Kurzzeitpflege)



단기체재요양시설의 개인실

그림 1-4 독일의 요양시설

-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은 주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치매 및 노인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요양시설이며, 단기체재요양시설은 일시적으로 케어를 요구하는 노인병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경우 입거를 하는 경우나, 노인요양시설로 입거를 위하여 대체로 잠시 머무르는 요양시설이다.

### 3) 스웨덴(Sweden)

- 스웨덴은 유럽 여러 국가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 및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특히, 고령자 복지에 관한 출발은 195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50년대에 뮌헨에 있는 한 고령자 전용주택에 살던 고령자의 고독사를 계기로 하여 고령자의 요양과 복지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스웨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령자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정에서 요양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이 결과를 위원회 보고서(Åldringsvårdsutredningen föreslog i sitt betänkande, 1956)로 작성하였다.
- 이후, 1974년에는 노인 홈 등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고, 1992년 에텔의 개혁에 의해 노인요양 및 고령자 관련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비한 결과, 지역단위에서 의료치료 후 신체장애자 및 고령자 요양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 또한, 이와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대책은 재택요양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 스웨덴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으며, 주거시설로는 고령자 주택(Seniorboende), 고령자 주택+65(Seniorboende+65), 서비스하우스(Servicehys)가 있고, 요양시설로는 노인 홈(Ålderdomshem), 그룹홈(Gruppboende), 슈크헴(Sjukhem) 등이 있다.
- 고령자 주택은 근래에 시니어하우스라고 불리며,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표 1-13 스웨덴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 분	시설명	개 요
주거시설	고령자 주택 (Seniorboe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근래에 시니어하우스라고 불리며,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되, 개인생활이 확보되도록 하는 공동 주택</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 방문 서비스</li> <li>· 특징 : 주택의 경영은 공동주택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개인소유</li> </ul>
	고령자 주택+65 (Seniorboende+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퇴직 후, 고령의 독신자 및 부부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li> <li>· 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 방문 서비스</li> <li>· 특징 :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편의증대를 위하여 공용 홀을 크게 설정하고, 요양기능을 강화하여 홈 헬퍼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택임</li> </ul>
	서비스하우스 (Serviceh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일부의 휴게실이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 방문 서비스</li> <li>· 특징 : 서비스 하우스에서 케어를 받으려면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음</li> </ul>
요양시설	노인 홈 (Ålderdomsh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동생활 체제로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의 소유가 가능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24시간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케어센터, 회의실,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li> </ul>
	그룹 홈 (Gruppboe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서, 공동부엌, 식당, 그리고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li> <li>· 입주자격 : 치매환자</li> <li>· 서비스 : 공동부엌, 식당, 휴게실 등</li> <li>· 특징 : 주로, 6~9인의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직원이 상주하여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시설</li> </ul>
	슈크헴 (Sjukh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중증의 치매환자 전용 시설</li> <li>· 입주자격 : 중증 치매환자</li> <li>· 서비스 : 의료시설, 휴게공간 등</li> <li>· 특징 : 중증의 치매환자 보호시설</li> </ul>

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되, 개인생활이 확보되도록 하는 공동주택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주택의 경영은 공동주택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개인소유가 된다.



그림 1-5 스웨덴의 고령자주택

- 고령자 주택+65는 고령자 주택에서 발전한 형태로, 퇴직 후, 고령의 독신자 및 부부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이다. 입주자격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이고,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편의 증대를 위하여 공용 홀을 크게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요양기능을 강화하여 홈 헬퍼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택이다.



그림 1-6 고령자주택의 내부

- 서비스 하우스는 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공용으로 설치된 휴게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시설 내에 케어를 담당하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비스 하우스에서 케어를 받으려면 사전에 병증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각 실에는 본인의 신체장애를 고려한 각종 설비가 부착되어 있다.
- 노인 홈은 공동생활 체제로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의 소유가 가능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다.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일부의 휴게실이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그룹 홈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서, 공동부엌, 식당, 그리고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시설로서, 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부시설로는 공동부엌, 식당, 휴게실, 취미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6~9인의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며,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여 24시간 케어하고 있다.



그림 1-7 스웨덴의 그룹홈

- 슈크헴은 그룹 홈에서 거주하는 노인병 및 치매환자보다 그 증세가 심각한 중증의 치매환자 전용시설이고, 내부시설 및 운영형태는 그룹 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나 의료부문이 특히 강화된 시설이다.



그림 1-8 그룹홈의 객실 내부

#### 4) 핀란드(Finland)

- 핀란드의 고령자 복지는 이웃 국가인 스웨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북유럽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과 차별화된 내용으로는 NPO 등의 민간에 의한 고령자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이 대부분이고, 고령자 주택 및 그룹 홈 등의 내부공간의 면적이 비교적 넓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또한, 스웨덴의 경우 에텔의 개혁(1992년)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설」이라는 개념을 폐지<sup>28)</sup>하고, 고령자 관련시설을 전부 특별주택으로 일원화하는 시책으로 전환을 도모한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시설」과 「고령자주택(일명, 서비스 하우스<sup>29)</sup>)」의 이원체제로 정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8) 「시설」의 개념을 폐지한 것은, 국가정책 및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령자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시설에서 주거로 바꾸었다는 의미이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 홈 및 그룹 홈 등의 고령자 요양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9) 고령자 케어 및 서비스 관련 시설이 첨가된 개인주택으로, 스웨덴의 서비스 하우스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주거시설

- 핀란드에 있어서 고령자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1984년의 발타바(VALTAVA) 개혁과 1993년의 세제개혁을 들 수 있다.
- 발타바 개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역할분담의 재구축, 시설 케어로부터 탈 시설케어(오픈케어)로의 이행촉진을 도모한 것으로 북유럽형의 복지국가로서 기반을 만들게 된 개혁이다.
- 세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령자 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결정하게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재택 케어 및 서비스 등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한편, 핀란드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외에 민간사업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서 슬롯머신협회(RAY)<sup>30)</sup>가 있다. 슬롯머신협회는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특히 고령자 복자의 분야인 서비스하우스 및 그룹 홈 등의 건설·운영에 많은 지원을 행하고 있다.
- 핀란드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표 1-10]과 같으며, 주거시설로는 고령자 주택(일반주택), 서비스하우스가 있고, 요양시설로는 노인 홈 또는 케어형 서비스하우스, 장기요양시설 등이 있다.
-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거주하여 오랫동안 살아 온 터전과 마을커뮤니티를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대부분의 주택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어 고령자 생활환경을 보다 더 고려하고 있으며, 주로 방문 케어서비스가 운영된다.

이다.

30) 핀란드의 슬롯머신협회(RAY)는 국가의 관할 하에 독점사업을 운영하여 그 이익을 전부 의료 및 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조직에 분배하고 있으며, 1920년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지노 업체에 국가가 규제를 가하면서 자선활동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8개 기업을 육성·통합하면서 탄생한 조직이다.

- 서비스하우스는 주로 공동주택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개인주호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커뮤니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면적이 다른 유럽지역의 서비스하우스에 비해 매우 넓고, 시설 내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케어시설 등은 서비스 하우스 인근에 인접하여 위치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공공시설이 있는 입지에 주로 설치하는 점이 특징적이고, 이용자가 연금, 월세보조, 케어수당 등에 의한 개인수입으로 월세와 케어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며, 생활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다.

표 1-14 핀란드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시설	고령자 주택(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일반적인 개인주택으로,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각종 시설이 설치</li> <li>· 입주자격 : 해당사항 없음</li> <li>· 서비스 : 방문 케어서비스</li> <li>· 특징 : 오랫동안 살아 온 마을커뮤니티를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음</li> </ul>
	서비스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공동주택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인주호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일부의 편의시설이 설치</li> <li>· 입주자격 : 고령자로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 또는 부부</li> <li>· 서비스 : 케어 서비스 시설이 별도로 근처에 위치</li> <li>· 특징 : 이용자가 연금, 월세보조, 케어수당 등에 의한 개인수입으로 월세와 케어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며, 생활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이 다르게 책정</li> </ul>
요양시설	노인 홈(그룹 홈) 또는 케어형 서비스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기본적으로 공동생활 체제(단독주택의 형태도 있음)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이 확보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주택</li> <li>· 입주자격 : 24시간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로 주로 치매 및 노인병 환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케어센터, 회의실, 공동주방 및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li> </ul>
	장기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li> <li>· 입주자격 : 중증의 고령병자로서 거동이 자유롭게 않은 자</li> <li>· 서비스 : 의료케어, 복지케어 등</li> <li>· 특징 : 주로, 병실단위의 6~9인의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직원이 상주하여 장기간에 걸쳐 케어가 가능한 시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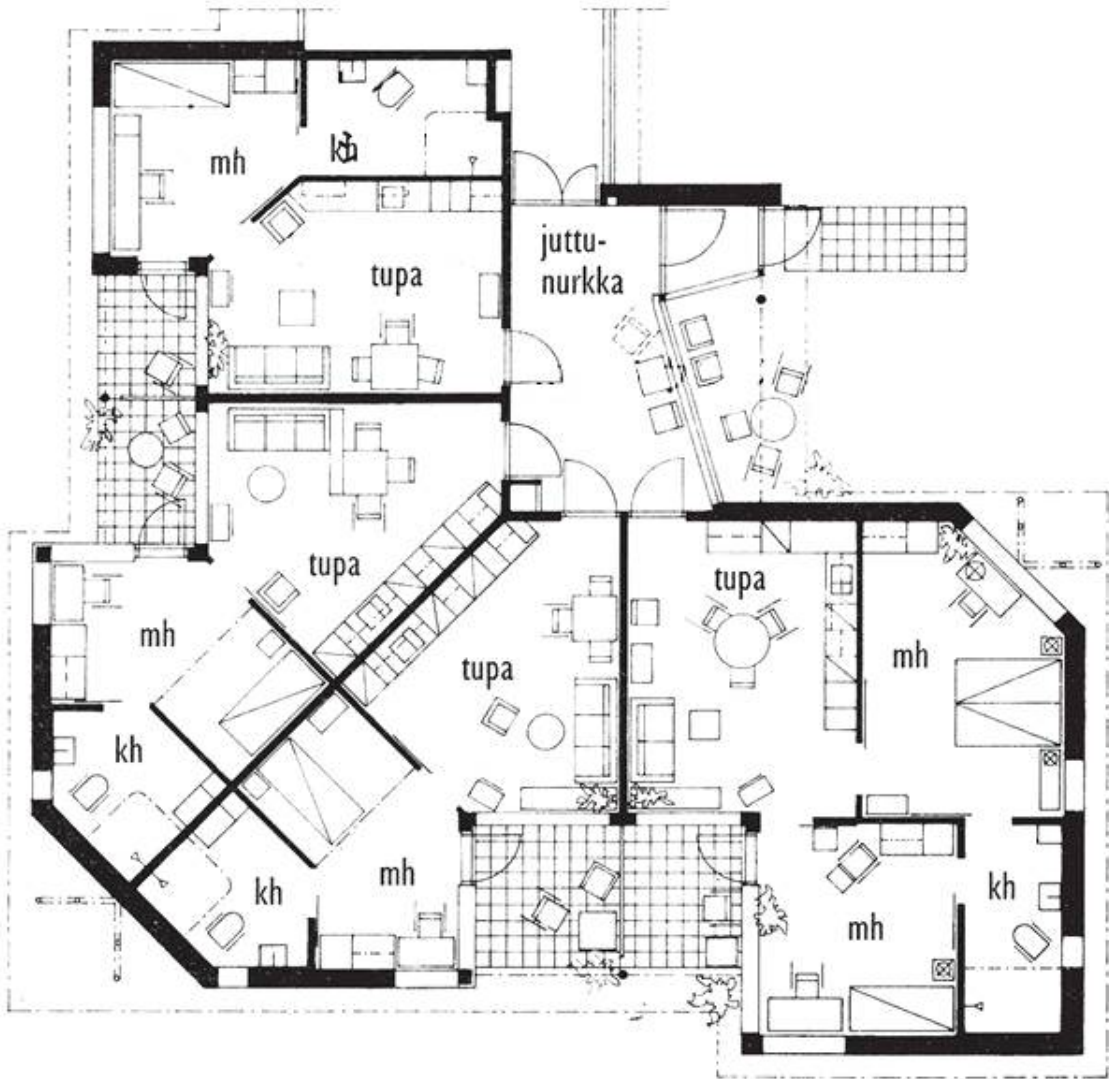


그림 1-9 핀란드 서비스하우스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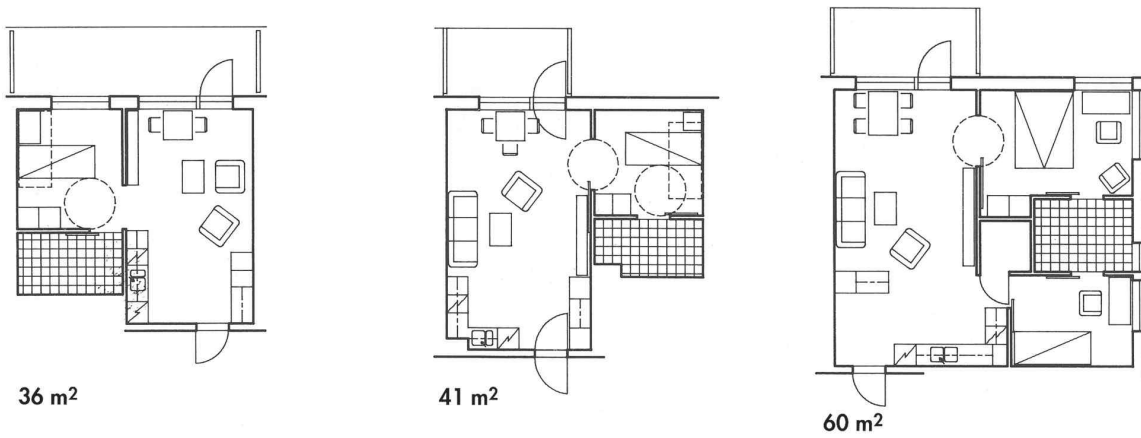


그림 1-10 핀란드 서비스하우스 개인실 단위평면



- 노인 홈 및 케어형 서비스하우스는 북유럽형 노인 홈과 동일한 개념의 시설 또는 주택으로,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노인 홈의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동생활 체제(단독주택의 형태도 있음)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이 확보되며, 공동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다. 시설운영은 입주자의 임대료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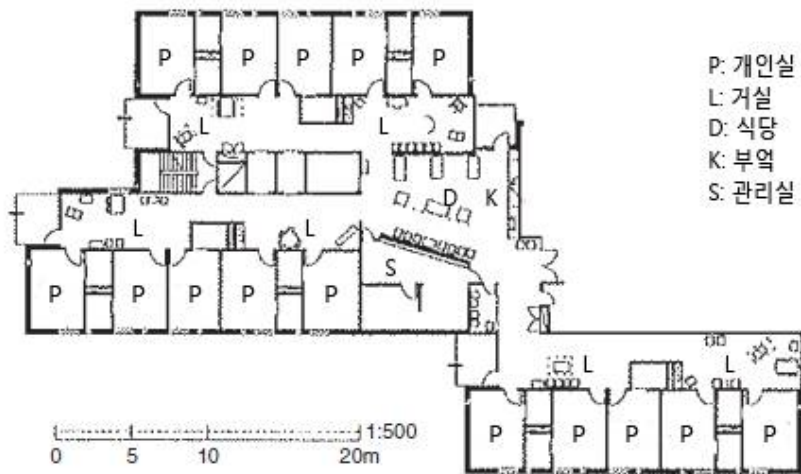


그림 1-11 핀란드 노인홈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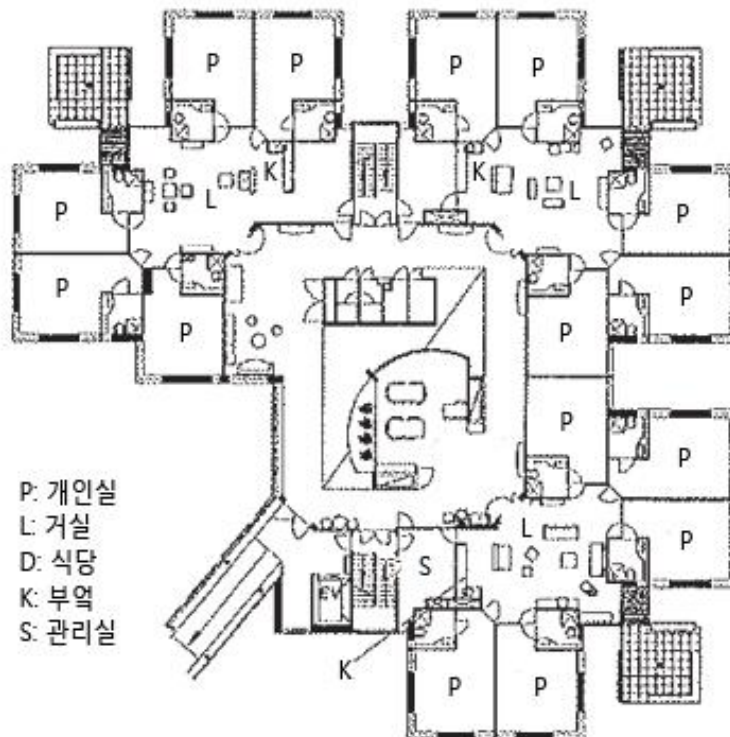


그림 1-12 핀란드 노인홈 사례-2

- 한편, 장기요양시설은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의료요양시설이다.

#### 5) 덴마크(Denmark)

- 덴마크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1978년에 이르면서 고령화율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의료시설 및 프라이엠(Plejehejm)<sup>31)</sup> 등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이 국가차원에서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시설에 의한 케어는 고령자의 고립화를 촉발하고, 자립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 1979년에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덴마크 정부에서는 「고령자 정책위원회(Aeldrekommissionen)」를 설치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화 해결과 자립화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정책을 발굴·모색하게 되었다.
- 제1회 고령자정책위원회 보고서(1979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 정책의 골자는,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을 분리하고, “과도한 케어는 고령자를 거꾸로 병들게 한다.”라는 개념을 정리하였다. 즉, “자립지원(Help to Self-Help)”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에는 「생활지원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프라이엠의 신규 건설이 금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자 거주시설을 「고령자주택」으로 일원화하여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시스템이 완비된 양질의 고령자 주택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이와 더불어, 기존 의료 및 요양시설을 의료 및 케어 스테이션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활용하는 데이 서비스(Day Service)를 확충하면서,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31) 재택 케어를 받아도 자택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특별노인요양원에 해당한다.

표 1-15 덴마크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 분	시설명	개 요
주거시설	고령자 주택(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일반적인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시스템을 적용한 주택</li> <li>· 입주자격 : 해당사항 없음</li> <li>· 서비스 : 주로, 방문 케어서비스</li> <li>· 특징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의 이념을 적용한 주거시설로서, 기존 마을커뮤니티를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음</li> </ul>
요양시설	보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단독주거단지 및 공동주택의 형태가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인 거주공간에 거주하면서, 일부의 편의시설이 설치</li> <li>· 입주자격 :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또는 환자</li> <li>· 서비스 : 케어 서비스 시설이 인접하여 위치</li> <li>· 특징 : 이용자가 연금, 월세보조, 케어수당 등에 의한 개인수입으로 월세와 케어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li> </ul>
	프라이엠(장기요양시설) 너싱 홈(Nursing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li> <li>· 입주자격 : 중증의 고령병자로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li> <li>· 서비스 : 의료케어, 복지케어 등</li> <li>· 특징 : 단독입원실에서 6~9인 단위의 공동입원실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직원이 상주하여 장기간에 걸쳐 케어가 가능한 시설</li> </ul>

○ 덴마크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관련 시설은 [표 1-15]에 정리한 바와 같이, 주거시설로서 고령자 주택, 그리고 요양시설로서 보호주택, 프라이엠(장기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령자 주택은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와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설정된 주택으로, 일반적인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료 및 복지케어는 주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데이케어 시설을 연계·활용하여 진행하고



그림 1-13 덴마크 고령자주택(호스홀름)

있다.

- 보호주택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고령자 단독주거단지 및 공동주택의 형태가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인 거주공간에 거주하면서 일부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다.



그림 1-14 고령자주택(호스홀름)의 내부

- 프라이엠(장기요양시설)은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다.



그림 1-15 프라이엠의 내부

### 1.3.3 일본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노인거주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즉, 종래의 양로원과 양로시설을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정비노인홈(A형, B형) 등으로 재편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요양시설 위주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노인 홈 등의 요양시설 위주의 정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편중된 정책으로 농촌지역 고령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소지역 또는 농어촌의 노인이 이용을 위하여 1990년부터 소규모 다기능 노인 복지시설인 ‘고령자생활복지센터’를 창설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거주기능, 케어 지원기능, 지역교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자의 생활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심지역에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교류기능 부분이 제외된 채 거주기능과 케어서비스 기능만을 복합한 형태로 많이 건립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데이 서비스 부분이 통상 요양보험 지급대상이 되어 사실상 거주기능과 케어지원기능이 분리되었다.
- 현재의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거주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생활지원하우스로 개칭되는 등 과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시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 일본에 고령자 주거관련 시설은 크게 주거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주거시설에는 실버하우징(또는 실버타운), 시니어 주택, 생활지원하우스가 있고, 요양시설에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그룹홈, 케어하우스(경비노인홈 A형, 경비노인홈 B형, 유료노인홈 등이 존재한다.
- 실버하우징(또는 실버타운)은 기존의 고령자끼리 모여 사는 방식이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틀린 방향임을 인지하고, 일반인과 같은 단지 또는 지역에 노인 전용의 주택을 건립한 주거시설로서, 30가구당 1명의 전문 요양사 등이 배치되어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 시설이며, 그 외에도 각종 고령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시니어주택은 일반적으로 고령자 주택 또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불리며, 고령자 개인이 소유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개념이다. 입주대상자는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이고, 식당, 라운지, 프런트,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지역커뮤니티 증진이 가능하게 하였다.
- 생활지원하우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한 고령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시설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및 건물 규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이 달리 설치되고, 시설의 이용은 장기거주와 단기거주로 나누어 운영되

표 1-16 일본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 분	시설명	개 요
주거시설	실버 하우스(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기존의 고령자끼리 모여 사는 방식이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틀린 방향임을 인지하고, 일반인과 같은 단지 또는 지역에 노인 전용의 주택을 건립한 주거시설</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 휴게실, 의무실, 방문 서비스</li> <li>· 특징 : 노인 전용주택에는 30가구당 1명의 전문 요양사 등이 배치되어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 시설이며, 그 외에도 각종 고령자 서비스가 존재</li> </ul>
	시니어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일반적으로 고령자 주택으로 불리며, 고령자 개인이 소유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주택</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li> <li>· 서비스 : 식당, 라운지, 프런트, 주차장 등 편의시설</li> <li>· 특징 :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지역커뮤니티 증진</li> </ul>
	생활지원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한 고령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시설</li> <li>· 입주자격 : 60세 이상의 고령자</li> <li>· 서비스 : 규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이 달리 설치됨</li> <li>· 특징 : 이용은 장기거주와 단기거주로 나누어 운영되며, 본인의 수입 또는 예금으로 각자 임대료, 식대, 관리비 등을 지불하여 생활하는 형태임</li> </ul>
요양시설	(특별)양호노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신체, 건강상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항상 의학적 케어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기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공동요양시설(건강 정도에 따라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li> <li>· 입주자격 :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케어센터, 회의실,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li> </ul>
	그룹 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한 시설에 치매환자가 약 5~9인이 공동으로 입실하여 생활하는 시설</li> <li>· 입주자격 : 치매환자</li> <li>· 서비스 : 공동부엌, 식당, 휴게실 등</li> <li>· 특징 : 시설 내에 개인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문 스태프가 항시 대기하여 케어를 함.</li> </ul>
	케어하우스 (경비 노인 홈 및 유료 노인 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고령자를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A형)하거나,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료를 부담하여 자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하는 시설(B형), 그리고, 급식과 일상생활 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유료노인홈)</li> <li>· 입주자격 : 60세 이상 고령자</li> <li>· 서비스 : 데이케어 서비스 등</li> <li>· 특징 : 양호 노인홈과 비교할 때 의료서비스 등은 미약하나,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li> </ul>

고 있으며, 본인의 수입 또는 예금으로 각자 임대료, 식대, 관리비 등을 지불하여 생활하는 형태이다.



그림 1-16 생활지원하우스(야마쿠니)

- 양호노인홈은 입주자의 건강 정도에 따라 일반 또는 특별 양호노인홈으로 구분되며, 신체, 건강상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항상 의학적 케어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기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공동요양시설이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로,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 그룹홈은 한 시설에 치매환자가 약 5~9인이 공동으로 입실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시설 내에 개인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문 스태프가 항시 대기하여 케어를 한다.
- 케어하우스는 경비노인홈 또는 유료노인홈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고령자를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공(A형)하거나,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료를 부담하여 자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하는 시설(B형), 그리고, 급식과 일상생활 상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유료노인홈)이다. 양호 노인홈과 비교할 때 의료서비스 등은 미약하나,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4 국내외 연구 및 사례에 나타난 시사점

### 1) 국내 선행연구 및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관련 연구’,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주제별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 관련연구에서는 주로 저소득층 독거가구 고령자의 주거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연구내용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독거가구 고령자의 주거실태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와 관련한 연구로는 주거복지 정책, 케어 시스템, 주택 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전개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사례 분석에 초점을 둔 고찰 내용 및 고령자 복지의 소프트웨어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적인 고령자 생활공간과 연계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관한 공간 및 기능 등의 건축 계획적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과 무관하게 독거 고령자에 관한 주거모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농촌지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 이상과 같이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농촌지역의 독거 고령자의 주거실태는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하나, 주거복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물리적인 생활공간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고령자 주거모델과 관련한 연구는 실제로 농촌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 2) 국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고령자 복지에 관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령자 거주시설 및 케어 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실현해 왔고, 현재는 ‘시설’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고령자 공동체 생활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도한 고령자 전용주택과 고령자 케어 기능이 부가된 통칭 서포티브 하우스िंग으로 구분되어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용자 복지를 고려하여 지역에 밀착한 소형의 시설이나 지방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AL(Assisted Living)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한 형태의 그룹 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설에서는 민간재단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와 시설이 복합된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유럽지역의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인 1945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복지 및 고령자 시설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더욱 발달하고 있다.
- 유럽의 복지대국으로는 영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 주로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정책이 주로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식은 셸터드 하우스링(shelterd housing)으로 지역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독일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은 노인용 주거이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거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세대복합형 주거가 있다. 특히, 세대복합형 주거는 고령자와 학생,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생활을 돕는 현대적 주거형태로, 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

고 있으며,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활동시간대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구성된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시설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주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웨덴은 유럽 여러 국가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 및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특히, 고령자 복지에 관한 출발은 195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령자 주택은 근래에 시니어하우스라고 불리며,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되, 개인생활이 확보되도록 하는 공동주택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주택의 경영은 공동주택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핀란드의 고령자 복지는 이웃 국가인 스웨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북유럽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시설」과 「고령자주택(일명, 서비스 하우스)」의 이원체제로 정비하였다. 특히,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거주하여 오랫동안 살아 온 터전과 마을커뮤니티를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어 고령자 생활환경을 보다 더 고려하고 있으며, 주로 방문 케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덴마크에서는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을 분리하고, “과도한 케어는 고령자를 거꾸로 병들게 한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자립지원”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88년에 「생활지원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고령자 거주시설을 「고령자주택」으로 일원화하여 베리어 프리 시스템이 완비된 양질의 고령자 주택 건설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 의료 및 요양시설을 의료 및 케어 스테이션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활용하는 데이 서비스(Day Service)를 확충하면서,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및 유럽의 고령자 정책 및 제도의 장점을 종합하여 반

아들여 발전시켜 오다가, 1990년부터 소규모 다기능 노인 복지시설인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를 창설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거주기능, 케어 지원기능, 지역교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자의 생활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며, 2000년부터는 생활지원하우스로 개칭되는 등 과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시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 이상과 같이, 국외의 관련 정책 및 체도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면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거(거주기능)’와 ‘시설(케어기능)’로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원체제로 정비·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 밀착한 공동체적 생활거주환경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 2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실태분석

---

2.1 공동생활홈

2.2 공동급식시설

2.3 목욕탕

2.4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과제



## 제2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실태분석

### 2.1 공동생활홈

-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에 의해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농촌 고령자들이 모여 지낼 수 있는 공동생활홈이 필요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공동생활홈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추후 확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분포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의 실태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실태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인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2014년 1월)』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에 대해 지역별 시설현황, 거주유형별, 운영주체 및 방식의 유형과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2.1.1 지역별 시설현황

- 먼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8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생활홈이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에 총 18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개소로는 전라북도에서는 463개소가 분포하여 전체 시설 중 68%를 차지하고, 전라남도 92개소(11%), 경상남도 81개소(12%), 충청북도 25개소(3%), 충남 23개소(3%), 경상북도 12개소(2%), 강원도 9개소(0.7%), 경기도 4개소(0.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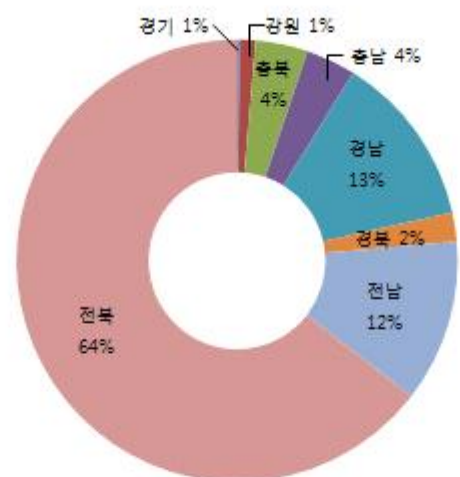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별 시설현황분석

-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진안군 209개소, 김제시 127개소, 임실군 209개소로, 특히, 진안군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3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이유로는, 진안군에서는 독거노인 1개소 5인 이내로 제한을 두고 기존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 등을 활용하여 동절기 3개월(12월~2월) 동안 공동생활 가정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생활홈의 시설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가 있어야 함
- 희망노인이 3명 이상인 지역
- “에그리나 행복방” 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
- 위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면장이 추천한 지역

표 2-1 지자체별 공동생활홈 현황

지자체	경기도(3)			강원도(7)		충북(22)		충남(22)		
	여주군	연천군	이천시	인제군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공주시	금산군	서산시
개소	1	1	1	1	6	2	20	3	5	3
지자체	충남(8)					경북(11)		경남(79)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천안시	예산군	의성군	청도군	예천군	통영시	의령군
개소	2	1	5	2	1	2	4	5	1	50
지자체	경남(79)				전북(463)			전남(77)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	하동군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완주군	신안군	순천시
개소	3	2	10	13	1	127	209	126	3	18
지자체	전남(77)									
	고흥군	해남군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개소	10	10	3	2	1	1	2	1	1	2
지자체	전남(77)						합계	비고		
	영광군	진도군	광양시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		* ( )는 공동생활홈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 개수 * 기재사항이 없는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음		
개소	6	4	2	1	9	1	684			

### 2.1.2 거주유형별 분류

○ 거주유형은 [표 2-2]와 같이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공동취사형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거주유형 중 공동거주형은 기재사항이 없는 144개소를 제외한 540개소로 전체 684개 중 97%를 분포하고 있으며, 독립침실형은 11개소로 2%, 독립거주형 5개소로 0.7%, 공동취사형 2개소로 0.3%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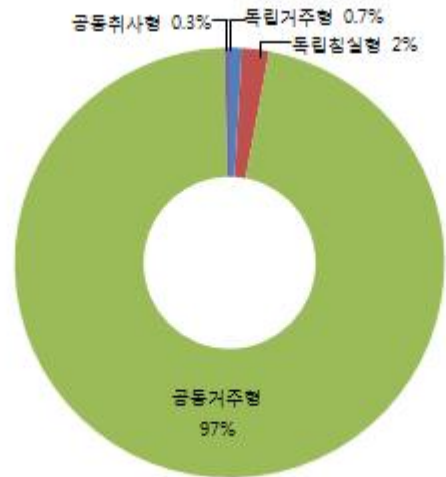


그림 2-2 거주유형별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거주유형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공동거주형으로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기본 난방시설의 보수, 도배, 화장실 보수 등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 공동생활홈의 개념

유형	내용	형태
독립거주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유형	
독립침실형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공동거주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공동취사형	취침은 마을 내 개인 소유주택에서 하고, 취사만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비고	□ 개인생활공간 ■ 공동생활공간 ■ 부엌	



- 이러한 공동거주형은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설로서 46개 시·군에서 52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독립침실형은 개별취침으로 하나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설로서 총 1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10개소, 전라북도 1개소로 분포하고 있고, 독립거주형은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시설로서 총 4개소가 있으며, 충청북도 2개소, 전라남도 3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독립침실형 중 가장 많은 개소가 설치된 전남 영암군은 총 11개소가 9개의 읍·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으로 1가구당 면적은 44㎡로 총 34가구가 입주하고 있다.
- 독립거주형 중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공동생활의 집은 3개소로 거주형은 원룸형, 1인1가구, 원룸 1실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음으로, 공동거주형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라북도는 336개소로 64%를 차지하였고, 경상남도 66개소(13%), 전라남도 62개소(12%), 충청북도 20개소(4%), 충청남도 19개소(4%), 경상북도 11개소(2%), 강원도 6개소(1%), 경기도 1개소(1%) 순으로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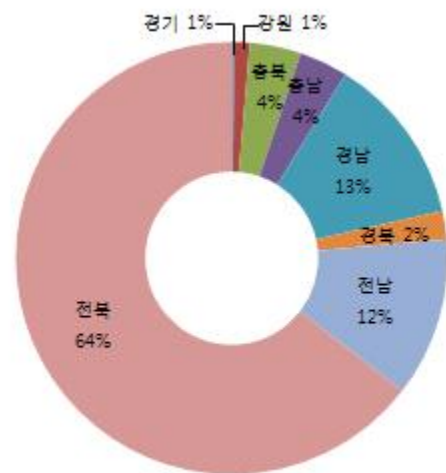


그림 2-3 지역별 공동거주형 현황분석

- 특히, 전라북도 내에서 진안군은 209개소로 가장 많이 건립되었고,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동절기 3개월 동안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며, 공동취사·공동거주형으로 1실 5인까지 제한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 대체로 전라북도에서 많은 공동생활홈이 설치되었지만,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유휴 공공시설이나 개인 공가를 리모델링한 방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설치하였고,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역할과 함께 사용하여

표 2-3 거주유형에 따른 공동생활홈

독립 거주형	충남	전남	합계	독립 침실형	전남(10)		전북(1)	합계		
	태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익산시			
	1	3			4	9	1			1
공동 거주형	경기	강원	충북	충남(19)						
	연천군	홍천군	영동군	공주시	금산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1	6	20	3	5	3	2	1	5	
	경북(11)			경남(66)						전북
	의성군	청도군	예천군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	김제시	
	2	4	5	1	50	3	2	10	127	
	전북(336)		전남(62)							
	진안군	순천시	고흥군	해남군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209	18	10	10	1	3	2	1	1	
	전남(62)						합계	공동 취사형	전남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522			광양시	
2	1	1	2	6	4			2		
기재사항 없음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총 합계	
	이천시	여주군	인제시	예산군	하동군	완주군	화순군			
1	1	1	1	13	126	1	144	684		

\* ( ) 지역도별 공동생활홈 개수

불편한 점과 이용자들의 생활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동취사형<sup>1)</sup>은 각자 집에서 지내되, 식사만 같이 하는 유형으로 전남 광양시에 2개소 분포한다.
- 거주유형 중 가장 적은 비율로 분포되는 것은 기존 공동급식시설과 구별이 어렵고, 시설 내에서 같이 공유하며 지내는 형식이 아니므로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2.1.3 운영방식의 유형과 특성

- 운영방식을 구분하면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로 구분된다. 사업주체는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마을회, 민간로 구분되고, 운영주체는 지자체, 지자체(민간위탁), 마을회, 거주자, 복합형, 기타로 구분되며, 운영비 조달은 지자체, 공동, 마을자체로 구분된다.

1) 공동취사형은 기존 공동 급식시설과 기준이 모호하므로 향 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추진방안에서 제외한다.

-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곳은 27개 시·군에 494개소로 전체 684개소 중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회는 180개소(26%), 민간 4개소(0.6%), 지자체+마을회 3개소(0.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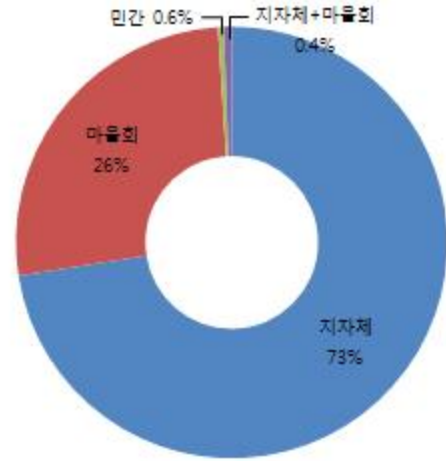


그림 2-4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충청북도를 제외한 8개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충청북도는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공동생활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 사업주체가 [지자체+마을회]인 공동생활홈은 충청남도 서산시로 부지는 마을회, 건축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총 3개소가 건립되었다.

표 2-4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1	6	-	17	11	77	335	47	494
마을회	1	-	20	2	-	2	127	28	180
지자체+마을회	-	-	-	3	-	-	-	-	3
민간	-	-	2	-	-	-	1	1	4
기재사항없음	1	1	-	-	-	-	-	1	3
총 합계	3	7	22	22	11	79	463	77	684

- [표2-5]와 같이 사업주체를 거주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독립거주형은 5개소, 독립침실형은 11개소, 공동거주형은 522개소, 공동취사형은 2개소로 분포하고 있다.

- 먼저, 독립거주형을 살펴보면, 지자체 3개소, 민간 2개소가 분포하고, 독립침실형은 지자체 9개소, 민간 2개소로 분포하고 있으며, 공동거주형은 지자체 340개소, 마을회 179개소, 공동취사형은 지자체 2개소를 분포하고 있다. 또한, 기재사항이 없는 유형 중에서는 지자체 140개소, 마을회 1개소, 기재사항이 없는 3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사업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주체하여 공동생활홈이 건립되

었고, 이 중 공동거주형이 340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마을회가 564개소로 전체 중 9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거주자 29개소(5%), 지자체 10개소(1%), 복합형 10개소(2%)순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된 경우가 수로 나타난 반면, 운영주체는 마을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침을 세워 거주자 스스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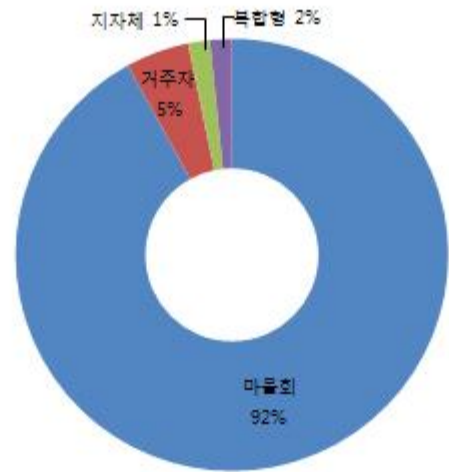


그림 2-5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표 2-5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생활홈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	-	-	-	-	-	10	10
마을회	2	7	22	22	7	6	463	35	564
거주자	1	-	-	-	-	-	-	28	29
복합형	-	-	-	-	-	10	-	-	10
기재사항없음	-	-	-	-	(4)	(63)	-	(4)	(71)
총 합계	3	7	22	22	11(4)	79(63)	463	77(4)	684(71)

- 지자체가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영암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약 45~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대규모의 공동생활홈은 지자체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진다.
- 사업주체에 따라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거주형은 5개소, 독립침실형은 11개소, 공동거주형은 522개소, 공동취사형은 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먼저, 독립거주형을 살펴볼 때, 지자체 3개소, 민간 2개소가 분포하고, 독립침실형은 지자체 9개소, 민간 2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공동거주형은 지자체 340개소, 마을회 179개소, [지자체+마을회]가 3개소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기재사항없는 유형에는 지자체 140개소, 마을회 1개소, 기재사항없는 유형 3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거주형과 공동취사형은 100%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고, 독립침실형은 81%(9개소)가 지자체에서 운영주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거주형은 93%(429개소)가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2-7]

표 2-6 거주유형에 따른 운영주체

구분	지자체	지자체 (민간위탁)	마을회	거주자	기타	복합형	기재사항없음	합계
독립거주형	-	-	2	-	-	-	3	5
독립침실형	9	-	2	-	-	-	-	11
공동거주형	1	-	429	28	-	10	54	458
공동취사형	-	-	2	-	-	-	-	2
기재사항없음	-	-	(129)	(1)	-	-	(14)	(130)
총 합계	10	0	564(129)	29(1)	0	10	71(14)	606(130)

-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공동생활홈은 다세대 주택 등 규모가 다른 거주유형보다 큰 곳으로 개별 공공요금 및 주거생활 유지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공동생활홈의 운영비조달은 지자체가 637개소로 전체 684개소 중 96%를 차지하였고, 마을자체는 21개소(3%), 공동이 3개소(1%) 순으로 분포한다.[그림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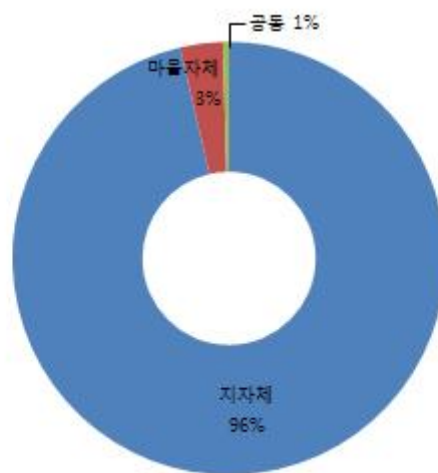


그림 2-6 운영비조달에 따른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운영하지만, 강원도는 마을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 운영비 조달을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거주형에서는 마을자체 3개소, 독립침실형은 지자체 9개소, 마을자체 2개소, 공동거주형은 지자체 498개소, 마을자체 17개소, 공동 1개소, 공동취사형은 지자체 2개소로 분포한다.

표 2-7 운영비 조달에 따른 공동생활홈

구분	지자체	공동	마을자체	기재사항없음	합계
독립거주형	-	-	2	3	5
독립침실형	9	-	2	-	11
공동거주형	498	1	17	6	522
공동취사형	2	-	-	-	2
기재사항없음	(128)	(2)	-	(14)	(144)
총 합계	637(128)	3(2)	21	23(14)	684(144)

- 운영비를 공동으로 조달하는 경기도 연천군은 경기도와 마을에서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강원도와 공동생활홈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일정 금액을 내 운영하고 있다.
- 공동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공동거주형인 경기도 연천군은 도와 마을자체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는 연 1천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 전기세, 전화료, 부식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지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공동으로 운영비를 조달하여 사용하는 곳으로 시·군과 마을이 공동으로 조달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경우보다 서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고, 문제가 있을 시 지자체에서 매우 협조하므로 대응을 해주므로 공동생활홈 운영이 매우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공동취사형은 대부분이 사업주체와 운영비조달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되, 운영주체는 마을회가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사업주체가 민간인 충청북도 괴산군(독립거주형),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북도 익산시(독립침실형)은 운영비를 마을자체에서 조달하고 있다.

표 2-8 지역에 따른 운영비조달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1	-	20	20	9	66	462	59	637
공동	2	1	-	-	-	-	-	-	3
마을자체	-	6	2	-	2	-	1	10	21
기재사항없음	-	-	-	(2)	-	(13)	-	(8)	(23)
총 합계	3	7	22	22(2)	11	79(13)	463	77(8)	684(23)

표 2-9 공동생활홈 현황

유형	해당 지자체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개소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마을회	민간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민간위탁	마을회	거주자	기타	복합형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공동		마을자체	기재사항없음		
독립거주형	충북 괴산군	-	-	-	2	-	-	-	2	-	-	-	-	-	-	2	-	-		
	전남 신안군	3	-	-	-	-	-	-	-	-	-	-	3	-	-	-	3	-		
	합계	3	-	-	2	-	-	-	2	-	-	-	3	-	-	2	3	5		
독립침실형	전남 영암군	9	-	-	-	-	9	-	-	-	-	-	9	-	-	-	-	-		
	전남 완도군	-	-	-	1	-	-	-	1	-	-	-	-	-	-	1	-	-		
	전북 익산시	-	-	-	1	-	-	-	1	-	-	-	-	-	-	1	-	-		
	합계	9	-	-	2	-	9	-	2	-	-	-	9	0	2	0	0	11		
공동거주형	경기 연천군	-	1	-	-	-	-	-	1	-	-	-	-	1	-	-	-	-		
	강원 홍천군	6	-	-	-	-	-	-	6	-	-	-	-	-	-	6	-	-		
	충북 영동군	-	20	-	-	-	-	-	20	-	-	-	-	20	-	-	-	-		
	충남	공주시	3	-	-	-	-	-	-	3	-	-	-	3	-	-	-	-	-	
		금산군	5	-	-	-	-	-	-	5	-	-	-	5	-	-	-	-	-	
		서산시	-	-	3	-	-	-	-	3	-	-	-	3	-	-	-	-	-	
		서천군	2	-	-	-	-	-	-	2	-	-	-	-	-	-	-	2	-	
		이산시	-	1	-	-	-	-	-	1	-	-	-	1	-	-	-	-	-	
		청양군	5	-	-	-	-	-	-	5	-	-	-	5	-	-	-	-	-	
	경남	통영시	2	-	-	-	-	-	-	2	-	-	-	2	-	-	-	-	-	
		의령군	1	-	-	-	-	-	-	1	-	-	-	1	-	-	-	-	-	
		창녕군	50	-	-	-	-	-	-	50	-	-	50	50	-	-	-	-	-	
		산청군	3	-	-	-	-	-	-	3	-	-	-	3	-	-	-	-	-	
	경북	산청군	-	2	-	-	-	-	-	2	-	-	-	2	-	-	-	-	-	
		거창군	10	-	-	-	-	-	-	10	-	-	10	-	-	-	-	-	-	
		의성군	2	-	-	-	-	-	-	2	-	-	-	-	-	2	-	-	-	
		청도군	4	-	-	-	-	-	-	4	-	-	4	4	-	-	-	-	-	
		예천군	5	-	-	-	-	-	-	5	-	-	5	5	-	-	-	-	-	
		전남	순천시	18	-	-	-	-	-	-	18	-	-	18	-	-	-	-	-	-
			고흥군	-	10	-	-	-	-	-	10	-	-	10	-	-	-	-	-	-
			해남군	-	10	-	-	-	-	-	10	-	-	10	-	-	-	-	-	-
			여수시	3	-	-	-	-	-	-	3	-	-	3	-	-	-	-	-	-
			나주시	2	-	-	-	-	-	-	2	-	-	2	-	-	-	-	-	-
	담양군		1	-	-	-	-	1	-	-	-	-	1	-	-	-	-	-	-	
	곡성군		1	-	-	-	-	-	1	-	-	-	-	-	-	1	-	-		
	보성군		-	2	-	-	-	-	-	2	-	-	-	-	-	2	-	-	-	
	장흥군		1	-	-	-	-	-	-	1	-	-	-	1	-	-	-	-	-	
	강진군		1	-	-	-	-	-	-	1	-	-	-	1	-	-	-	-	-	
	함평군		-	2	-	-	-	-	-	2	-	-	-	2	-	-	-	-	-	
	영광군		6	-	-	-	-	-	-	6	-	-	-	-	-	6	-	-	-	
	전북	진도군	-	4	-	-	-	-	-	4	-	-	-	-	-	-	4	-	-	
		김제시	-	127	-	-	-	-	-	127	-	-	-	127	-	-	-	-	-	
진안군		209	-	-	-	-	-	-	209	-	-	-	209	-	-	-	-	-		
	합계	340	179	3	-	-	1	-	429	28	-	10	54	498	1	17	6	522		
공동취사형	전남 광양시	2	-	-	-	-	-	-	2	-	-	-	2	-	-	-	-	-		
	합계	2	-	-	-	-	-	-	2	-	-	0	0	2	-	-	-	2		
기재사항없음	경기 이천시	-	-	-	-	1	-	-	-	1	-	-	-	1	-	-	-	-		
	여주군	1	-	-	-	-	-	-	1	-	-	-	1	-	-	-	-	-		
	강원 인제시	-	-	-	-	1	-	-	1	-	-	-	-	1	-	-	-	-		
	충남 예산군	-	1	-	-	-	-	-	1	-	-	-	1	-	-	-	-	-		
	경남 하동군	13	-	-	-	-	-	-	-	-	-	13	-	-	-	-	13	-		
	전남 화순군	-	-	-	-	1	-	-	-	-	-	-	1	-	-	-	1	-		
	전북 완주군	126	-	-	-	-	-	-	126	-	-	-	126	-	-	-	-	-		
	합계	140	1	-	-	3	-	-	129	1	-	14	128	2	0	14	144			
합계		494	180	3	4	3	10	-	564	29	-	10	71	637	3	21	23	684		
																			684	

## 2.2 공동급식시설

- 농촌 고령자들의 주거나 영양 위생 여건이 많이 취약함에 있어 독거노인의 불규칙하고 불균형적인 식사로 영양불균형<sup>2)</sup>을 겪고 있어 농촌지역에 공동급식시설와 같은 고령자 지원시설이 필요하다.
- 공동급식시설은 높은 운영비와 많은 인력이 요구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미흡하므로 추후 시설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 현재 분포하고 있는 공동급식시설의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 따라서, 조사대상은 9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326개소의 공동급식시설로 먼저, 지역별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 2.2.1 지역별 시설현황

- 공동급식시설은 총 9개의 시·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경상남도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경상북도 울진군에 분포하고 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226개소(69%)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61개소(19%), 충청남도 20개소(6%), 경상남도 19개소(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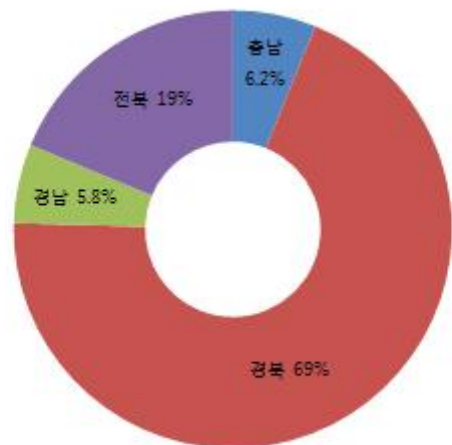


그림 2-7 지역별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표 2-10 지역별 공동급식시설

지자체	충남(20)			경북(226)		경남(19)			전북(61)	합계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울진군	의성군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완주군	
개소	4	10	6	222	4	4	11	4	61	326

2) 1인 1일당 총 식품 섭취량(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2008)은 농촌 1,245.4g, 도시 1,308.8g



- 가장 많은 공동급식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경상북도를 살펴보면 의성군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은 4개소, 울진군 ‘경로당 공동취사제’은 22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특히, 가장 많은 공동급식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은 10개 읍·면에 222개소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울진군 및 마을 공동부지에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13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이다.

### 2.2.2 운영실태

- 공동급식시설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면 신축(A), 기존건물+신축(A-1), 기존시설이용(B), 기존시설 일부이용(B-1), 기재사항없음(C)로 나눌 수 있다.
- [그림2-8]과 같이 기재사항없는 유형 261개소(80%)를 제외한 65개소(20%)는 기존시설이용(B)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시설이용(B)은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6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그림 2-8 시설유형별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기존시설이용(B)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상북도 의성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의성군은 4개소, 완주군 6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표2-11]

표 2-11 지역별 기존시설이용 분포현황

구분	지역		합계
기존시설이용(B)	경상북도	의성군	4
	전라북도	완주군	61
합계			65

- 경상북도 의성군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정비, 취사도구 구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1개소 당 30명 내외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이다.
-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시설 중 전라북도 완주군은 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참여인원이 20인 이상으로 식재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들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림2-9]와 같이 사업주체에 따라 공동급식시설은 지자체가 283개소로 87%를 차지하고, 기재사항 없음은 39개소로 12%, 마을회는 4개소로 1%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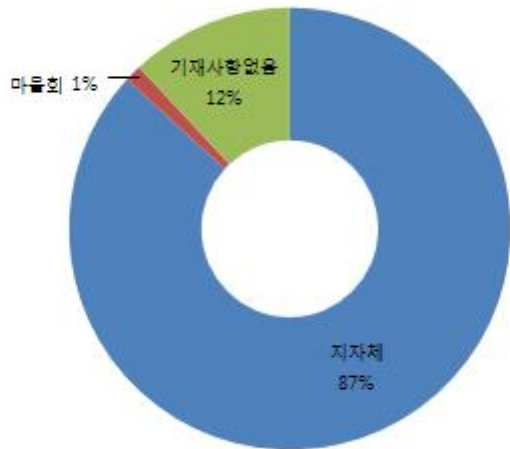


그림 2-9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표 2-12 사업주체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	-	-	222	-	61	-	283
마을회	-	-	-	-	4	-	-	-	4
지자체+마을회	-	-	-	-	-	-	-	-	-
기타	-	-	-	-	-	-	-	-	-
민간	-	-	-	-	-	-	-	-	-
기재사항없음	-	-	-	(20)	-	(19)	-	-	(39)
총 합계	-	-	-	(20)	226	(19)	61	-	326(39)

- 사업주체가 마을회인 경상북도 의성군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유휴 공공시설의 사업지원금으로 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설치·정비 및 취사도구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전라북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완주군 ‘농번기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반면, 부지나 건물은 마을에서 제공하여 지자체와 마을 간의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운영주체에 따라 공동급식시설을 보면, 마을회가 303개소로 93%, 기타가 19개소로 6%, 기재사항 없음이 4개소로 1%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그림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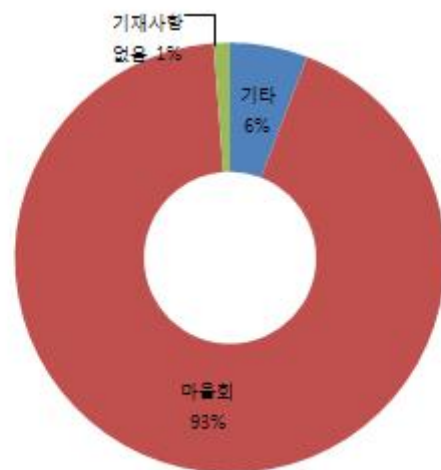


그림 2-10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표 2-13 운영주체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	-	-	-	-	-	-	-
지자체(민간위탁)	-	-	-	-	-	-	-	-	-
마을회	-	-	-	16	226	-	61	-	303
거주자	-	-	-	-	-	-	-	-	-
기타	-	-	-	-	-	19	-	-	19
복합형	-	-	-	-	-	-	-	-	-
기재사항없음	-	-	-	(4)	-	-	-	-	4
총 합계	-	-	-	20(4)	226	19	61	-	326(4)

○ 운영주체방식 중 기타로는 읍면 자원봉사회장, 읍면 노인회, 각종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포함하고 있다.

○ 운영주체가 기타에 속한 경상남도 지역 중 김해시와 같은 경우는 각종 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봉사자를 급식도우미로 적극 발굴·활용하여 이들을 주체로 하여 무료경로식당,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공동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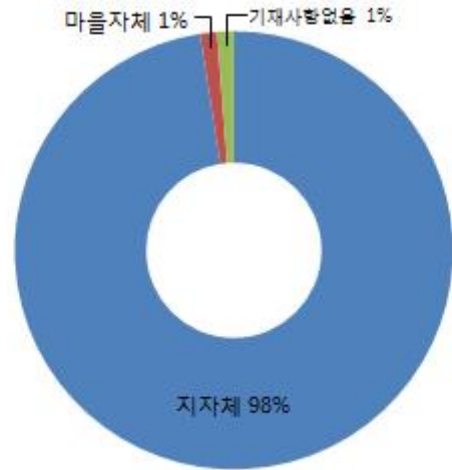


그림 2-11 운영비조달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 [그림 2-11]와 같이 운영비조달을 살펴보면, 318개소(98%)가 지자체에서 조달받고 있고, 4개소(1%)는 마을자체에서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다.

○ 마을자체에서 조달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마을공동경비로 운영하고 있다.

표 2-14 운영비조달에 따른 공동급식시설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	-	16	222	19	61	-	318
공동	-	-	-	-	-	-	-	-	-
마을자체	-	-	-	-	4	-	-	-	4
기재사항없음	-	-	-	(4)	-	-	-	-	(4)
총 합계	-	-	-	2016	226	19	61	-	326(4)

표 2-15 공동급식시설 실태분석

유형	해당 지자체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개소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마을회	기타	민간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지자체(민간위탁)	마을회	거주자	기타	복합형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공동		마을자체	기재사항없음
A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A-1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B	경북	의성군	-	4	-	-	-	-	-	4	-	-	-	-	-	-	4	-	-	
	전북	완주군	61	-	-	-	-	-	-	61	-	-	-	-	61	-	-	-	-	
	합계		61	4	-	1	1	-	5	1	29	-	62	-	93	-	4	-	-	
B-1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C	충남	공주시	-	-	-	-	-	4	-	-	-	-	-	4	-	-	-	-	4	
		부여군	-	-	-	-	-	10	-	-	10	-	-	-	10	-	-	-	-	
		홍성군	-	-	-	-	-	6	-	-	6	-	-	-	6	-	-	-	-	
	경남	밀양시	-	-	-	-	-	4	-	-	-	-	4	-	4	-	-	-	-	
		남해군	-	-	-	-	-	11	-	-	-	-	11	-	11	-	-	-	-	
		합천군	-	-	-	-	-	4	-	-	-	-	4	-	4	-	-	-	-	
	경북	울진군	222	-	-	-	-	-	-	222	-	-	-	-	222	-	-	-	-	
합계		222	-	-	-	-	39	0	0	238	0	19	-	4	257	-	-	4		
합계		283	4	-	-	-	39	0	0	303	0	19	-	4	318	-	4	4		
		326						326						326			326			

## 2.3. 작은 목욕탕

- 노인가구의 목욕시설 및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sup>3)</sup>이 매우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따라서, 조사대상은 36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145개소의 작은 목욕탕으로 먼저, 시설유형별로 살펴보고,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3.1 시설유형별 현황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122개소로 84%, 전라북도 11개소로 8%, 경상남도 5개소로 3%, 충청남도 4개소로 3%, 강원도 3개소로 2%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2-12]
- 지역별 목욕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A), 기존건물+신축(A-1), 기존시설이용(B), 기존시설 일부이용(B-1), 기재사항 없음(C)로 구분하고,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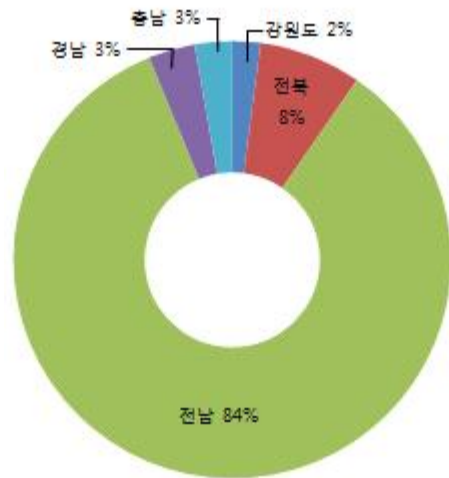


그림 2-12 지역별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표 2-16 지역별 작은목욕탕 시설현황

지자체	충남(4)			경남(5)		전북(11)			
	정선군	청양군	공주시	고성군	합천군	진안군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개소	3	1	3	2	3	1	1	1	1
지자체	전북(11)						전남(122)	합 계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임실군	무주군			
개소	1	1	1	1	1	2	122	145	

- 기재사항 없음(C)은 133개소로 85%를 차지하고, 신축(A)은 6개소(4%), 기존시설 일부이용(B-1)은 4개소(3%), 기존시설 일부이용(B)은 2개소(1%)

3) 군지역의 온수목욕시설 보급(‘10) : 노인가구 86.1%, 일반가구 91.6%

순이며, 다른 공공생활시설보다 신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신축(A)된 목욕탕은 강원도 3개소, 전라북도 3개소로 총 6개소가 분포한다.
- 기존시설을 이용한 목욕탕(B)은 기존 마을공동목욕탕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남 고성군에 2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2016년도까지 “농어촌 공동목욕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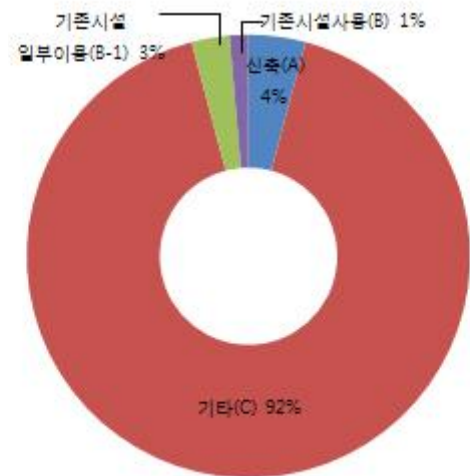


그림 2-13 시설유형에 따른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 기존시설을 일부이용(B-1)은 폐교 건축물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쓰거나 복지회관 내에 있는 소규모 목욕탕을 이용하여 쓰는 형식으로 경상남도 3개소, 충청남도에 1개소가 분포한다.
- 기타(C)로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마을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 2.3.2 운영실태

- 운영방식을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3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작은 목욕탕은 약 100㎡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1000원~2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남녀 격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 사업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135개소로 92%를 차지하고, 마을회가 9개소 1%, 그리고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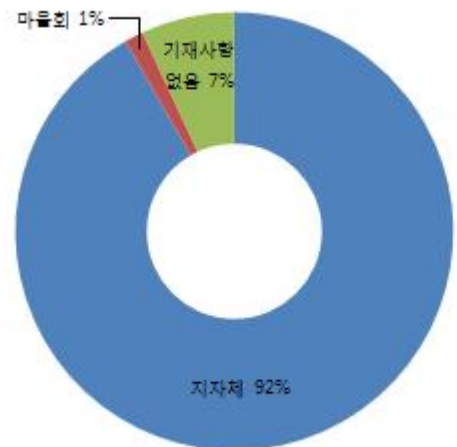


그림 2-14 사업주체에 따른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표 2-17 사업주체별 작은목욕탕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3	-	1	-	3	3	122	4
지자체+마을회	-	-	-	-	-	-	-	-	-
마을회	-	-	-	-	-	2	-	-	-
민간	-	-	-	-	-	-	-	-	-
기재사항 없음	-	-	-	3	-	-	7	-	3
총 합계	-	3	-	4(3)	-	5	10(7)	122	145(10)

재사항 없음이 123개소 분포한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는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여 운영한다.
- 설치유형에 따라 사업주체를 살펴보면, 신축(A)은 강원도 3개소와 전라북도 3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기존건물을 이용(B)한 것으로는 경상남도 2개소, 기존건물을 일부 이용한 것으로는 충청남도 1개소, 경상남도 3개소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2-18]
- 기존 건물을 이용한 경남 고성군은 농어촌 공동목욕탕 지원으로 마을이장이 주체가 되어 도, 군, 마을이 함께 운영비를 조달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인해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기존의 마을회관 또는 노인정과 연계하여 주변대지를 이용하여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분포하고 있지 않다.
- 이는 운영비나 건축비용이 신축과 다를 점이 없고, 기존건물 주변 필지매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나 마을에서 꺼리는 것

표 2-18 시설유형에 따른 사업주체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신축	-	3	-	-	-	-	3	-	6
기존건물+신축	-	-	-	-	-	-	-	-	-
기존건물이용	-	-	-	-	-	2	-	-	2
기존건물 일부이용	-	-	-	1	-	3	-	-	4
기타	-	-	-	-	-	-	1	122	123
기재사항 없음	-	-	-	-	-	-	-	-	-
합계	-	3	-	1	-	5	4	122	135

으로 보인다.

- 운영주체를 지자체, 민간위탁, 마을회, 거주자, 기타, 복합형으로 나누어 볼 때, 마을회 127개소로 88%, 지자체 18개소로 12%로 주로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의 개소에 기준을 두고 [표 2-19]를 살펴보면, 강원도, 전라북도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마을이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는 작은 목욕탕과 관련된 지원근거가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요금을 1,000원~3,000원의 범위에서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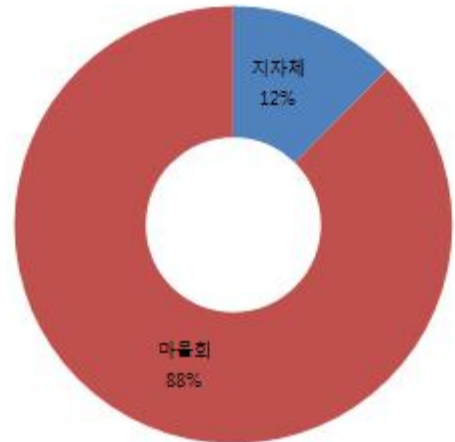


그림 2-15 운영주체에 따른 작은 목욕탕 현황분석

표 2-19 운영주체에 따른 작은 목욕탕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3	-	1	-	3	11	-	18
공동	-	-	-	-	-	-	-	-	-
마을자체	-	-	-	3	-	2	-	122	127
기재사항없음	-	-	-	-	-	-	-	-	-
합계	-	3	-	4	0	5	11	122	145

-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 중 기존 노인정 또는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사용한 곳은 시설만 바뀌었을 뿐, 마을회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반면, 기존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리모델링 또는 지자체 소유의 의료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여 운영한다.
- 운영비 조달은 지자체, 공동, 마을자체로 나누어 봤을 때, [그림2-16]과 같이 공동운영이 124개소로 86%,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18개소로 12%, 마을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2%의 순으로 나타난다.
-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에서 군비 35%와 자부담 65%를 부담하여



표 2-3 작은 목욕탕 시설현황

유형	해당 지자체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개소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 + 마을회	민간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지자체	마을회	거주자	기타	복합형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공동		마을회	기재사항없음
A	강원	정선군	3	-	-	-	-	3	-	-	-	-	-	-	3	-	-	-	6
	전북	임실군	1	-	-	-	-	1	-	-	-	-	-	-	1	-	-	-	
		무주군	2	-	-	-	-	2	-	-	-	-	-	-	2	-	-	-	
	합계		6	-	-	-	-	6	-	-	-	-	-	-	6	-	-	-	
A-1.	-	-	-	-	-	-	-	-	-	-	-	-	-	-	-	-	-	0	
	합계		-	-	-	-	-	-	-	-	-	-	-	-	-	-	-		
B	경남	고성군	-	2	-	-	-	-	-	2	-	-	-	-	2	-	-	2	
	합계		-	2	-	-	-	-	-	2	-	-	-	-	2	-	-		
B-1.	경남	합천군	3	-	-	-	-	3	-	-	-	-	-	3	-	-	-	4	
	충남	청양군	1	-	-	-	-	1	-	-	-	-	-	1	-	-	-		
	합계		4	-	-	-	-	4	-	-	-	-	-	4	-	-	-		
C.	충남	공주시	-	-	-	-	3	-	-	3	-	-	-	-	-	3	-	133	
		서산시	122	-	-	-	-	-	-	122	-	-	-	-	122	-	-		
	전남	-	1	-	-	-	1	-	-	-	-	-	1	-	-	-			
	전북	진안군	-	-	-	-	1	1	-	-	-	-	-	1	-	-	-		
		익산시	-	-	-	-	1	1	-	-	-	-	-	1	-	-	-		
		정읍시	-	-	-	-	1	1	-	-	-	-	-	1	-	-	-		
		남원시	-	-	-	-	1	1	-	-	-	-	-	1	-	-	-		
		김제시	-	-	-	-	1	1	-	-	-	-	-	1	-	-	-		
		장수군	-	-	-	-	1	1	-	-	-	-	-	1	-	-	-		
		순창군	-	-	-	-	1	1	-	-	-	-	-	1	-	-	-		
고창군	123	-	-	-	10	8	-	125	-	-	-	8	122	3	-				
합계		133	2	-	-	10	18	-	127	-	-	-	18	124	3	-			
합계		133	2	-	-	10	18	-	127	-	-	-	18	124	3	-	145		
145						145						145							

운영하고 있다.

- 운영비조달 중 공동은 군비나 자부담비로 운영하거나 2,000~3,000원으로 마을별 실정에 따라 상이하게 이용요금을 받아 운영한다.
- 충청남도는 운영비 조달을 마을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 중 일부를 조달하여 사용하여 연 3,800천원의 지원액으로 냉·난방비, 유류비, 전기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로당 운영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개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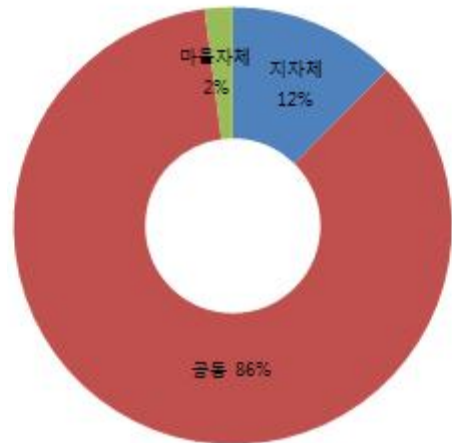


그림 2-16 운영비조달에 따른 작은 목욕탕 현황분석

표 2-21 운영비조달에 따른 사업주체 현황분석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	3	-	1	-	3	11	-	18
공동	-	-	-	-	-	2	-	122	124
마을자체	-	-	-	3	-	-	-	-	3
기재사항없음	-	-	-	-	-	-	-	-	-
합계	-	3	-	4	-	5	11	122	145

## 2.4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과제

### 2.4.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현황

#### 1) 공동생활홈

○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자체+지자체+지자체(유형①), 지자체+마을회+지자체(유형②), 지자체+마을회+마을회(유형③), 마을회+마을회+지자체(유형④), 민간+마을회+마을회(유형⑤)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타(유형⑥)에는 지자체+복합+지자체, 지자체+거주자+지자체, 마을회+거주자+지자체, 마을회+마을회+마을회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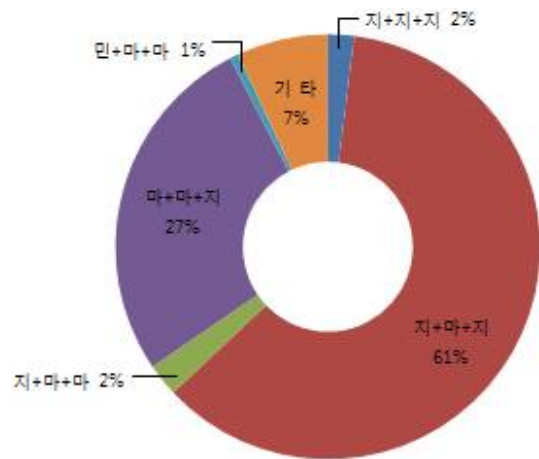


그림 2-17 공동생활홈 현황분석

- 유형 ②가 61%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유형④가 27%, 유형⑥이 7%, 유형 ①, 유형 ③가 2%, 유형 ⑤가 1%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모두 공동으로 하는 공동거주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표 2-22 공동생활홈의 유형분류

구분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공동취사형	기재사항없음	합 계
①지+지+지	-	9	3	-	-	12
②지+마+지	-	-	240	2	127	369
③지+마+마	-	-	15	-	-	15
④마+마+지	-	-	162	-	1	163
⑤민+마+마	2	2	-	-	-	4
⑥기 타	-	-	42	-	-	42
합 계	2	11	462	2	128	605
기재사항없음	(3)	-	(60)	-	(16)	(79)
합 계	5(3)	11	522(60)	2	129(16)	684(79)

\* 지 : 지자체, 마 : 마을회, 민 : 민간, 기타 : 지자체+복합+지자체, 지자체+거주자+지자체, 마을회+거주자+지자체, 마을회+마을회+마을회

로 나타났으며, 유형 ②(지자체+마을회+지자체)로 운영되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립거주형과 공동취사형은 사업 및 운영, 운영비조달이 뚜렷하게 보여진다.[표 2-23] 독립거주형인 경우 현재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에서 운영주체 및 운영비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동취사형은 지자체가 사업주체 및 운영비 조달을 하여 마을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공동취사형은 사업주체와 운영비 조달을 지자체에서 하되,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2) 공동급식시설

- 공동급식시설은 지자체+마을회+지자체(유형 ②), 마+마+마(유형 ⑥)이 나타났고, 사업주체에 따라 운영비조달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운영주체는 대부분이 마을회로 보여진다.
- 유형②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공동생활홈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완주군의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 및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보인다.
- 현재 공동급식시설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기존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으나, 이는 보통 가정용 부엌수준으로 많은 인원을 포용하기에는 공간 및 조리설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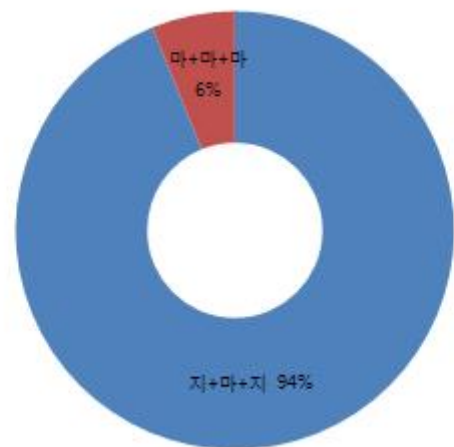


그림 2-18 공동급식시설 현황분석

표 2-23 공동급식시설의 유형분류

구분	합계
지자체+마을회+지자체	61
마을회+마을회+마을회	4
합계	65

## 3) 작은 목욕탕

-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들은 탕 1개, 약 3개월의 운영기

간, 남/녀 요일별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 작은 목욕탕은 36개의 시·군에서 145개소를 운영 중이고, [그림2-19]와 같이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지자체+지자체+지자체(유형 ①)과 마을회+마을회+공동(유형 ⑥), 지자체+마을회+공동(유형 ⑦)<sup>4)</sup>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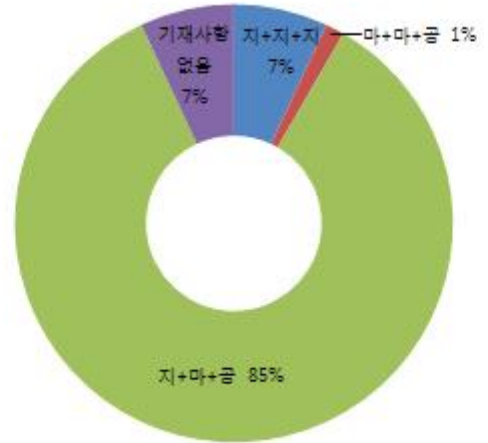


그림 2-19 작은목욕탕 현황분석  
표 2-24 작은목욕탕의 유형분류

구분	합계
지자체+지자체+지자체	10
마을회+마을회+공동	2
지자체+마을회+공동	122
합계	65

- 유형①은 신축에서 나타났고, 유형②는 기존 시설이용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유형⑨는 전라남도에서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작은 목욕탕은 높은 운영비로 인해 운영비조달을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지자체+마을회 또는 지자체+시설사용료 등 공동으로 하는 것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 2.4.2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과제

### 1) 공동생활홈

-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에 나타난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거주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동거주형은 주로 마을회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주자의 생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면,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되어 기존 마을회관의 평면구성에서 큰 변화가 없고, 낮 시간대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시설 내 수납공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실의 출입구에 단차가 형성되어 있는 등 고령자 생활에 편의성이 다소 부족

4) 유형⑦은 공동생활홈 유형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으로 사업주체는 지자체, 운영주체는 마을회, 운영비 조달은 공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 특히, 경상북도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방 2개에 남자 1인, 여자 5인의 총 6인이 생활하고 있는데, 1인당 사용면적의 편차가 매우 크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생시설의 이용 등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부엌은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방의 일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시설이 많고, 다수의 인원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식사 준비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정해진 식단으로 운영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치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 독립침실형과 같은 경우, 취침을 개별적으로 하고, 취사는 공동으로 하는 유형으로 개인 취침공간의 기본 점유면적을 무시한 채 공간의 구획·설정하여 취침 시 불편을 주고 있으며, 내부공간에서 문턱 등이 형성되어 고령자를 배려하는 배리어 프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독립거주형은, 시설 내 취침과 취사 모두 개인적인 공간에서 영위하는 유형으로 가장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한편, 구성원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거주형은 데크 및 공동거실과 같은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한다면 공동생활홈으로서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보인다.
- 특히, 각 실의 기본 거주면적을 제시하여 활동하기에 불편함 없는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성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sup>5)</sup>을 필수사항으로 제시해야 한다.

5) 무장애 디자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건물에서의 장애를 제거하는 디자인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 2) 공동급식시설

- 시설 중 95.8%의 공동급식시설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존 시설은 수용인원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조리설비가 빈약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공동급식시설이 위치한 마을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식재료 조달, 조리, 식사준비 등에 대한 인력을 해당 거주자 및 마을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신체적·체력적 한계가 있어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 공동급식시설은 설치하기 전에 예상 급식 소요 인원을 파악하여 시설 규모, 설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해야 하고, 조리구역과 식사구역, 식자재 보관시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급식수요가 다를 것을 대비해 공간계획 시 다양한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유동적인 공간계획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운영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의 이용방안 및 운영규칙을 수립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새마을 부녀회, 복지관과 같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작은 목욕탕

- 작은 목욕탕은 시설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징수하여 운영비 일부로 충당하지만, 높은 운영비로 인해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시설들이 다수이다. 또한, 찜질방의 경우에도 연료비 부담 및 고령자 안전성 문제로 운영 중단 사례가 있다.
- 따라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적정규모로 설치하고, 남녀를 교대 운영, 운영기간 조정 및 공공근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기열원히트펌프,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에너지절감 설비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이용료 부과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 작은 목욕탕의 경우, 66.7%가 시설물을 신축하는데 운영비 등의 문제로 중단되어 유휴시설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에 증축 또는 별동으로 설치하여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 또한, 시설계획에 있어 기능에 충실한 적정 규모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찜질방의 설치 및 운영은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계획 시 가장 기본적인 욕탕, 샤워시설, 탈의실,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분석

---

- 3.1 조사개요
- 3.2 공동생활 홈
- 3.3 공동급식시설
- 3.4 작은목욕탕
- 3.5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소결



## 제3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분석

### 3.1 조사개요

#### 3.1.1 조사목적 및 내용

##### 1) 조사의 목적 및 시점

- 본 연구에서는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사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모델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 및 민간 지원사업에 의해 조성하고 있는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세 가지 종류의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의 주요시점으로는, 선정된 시설의 건축유형, 조성방식, 운영방식 등을 조사하고, 그동안 다양하게 조성되어왔던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분류·분석하여 장단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내용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다.

##### 2) 조사의 일정 및 진행과정

- 본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의 과정은 사전 예비조사, 현장조사(본조사), 보완조사 및 조사내용 정리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전 예비조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는 과정과 지자체의 현황자료를 정리·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는데, 예비조사의 과정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공동생활 홈 684개소(46개 시·군), 공동급식시설 326개소(9개 시·군), 작은목욕탕 145개소(36개 시·군)의 총 1,155개소의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시설의 조성과정 및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취지에 맞는 대상으로 공동생활 홈 12개소, 공동급식시설 6개소, 목욕탕 6개소로 현장조사 대상을 확정하였다.

- 다음으로 현장조사(본조사)는 2013년 11월 1일(금)부터 11월 10일(일)까지 10일간 진행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시설의 물리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평면실측과 사진촬영으로 진행되었고, 각 시설별 조성방식 및 주체, 운영 등 사업추진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관리자 및 거주자 히어링 조사로 진행되었다.
- 또한, 본 조사의 정리는 2013년 11월 1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총 7일에 걸쳐 각 시설별로 운영실태, 시설현황, 관리자·거주자 히어링 조사 및 현장사진을 분류·정리하고 시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의 보완조사는 2013년 12월 18일(수)과 2013년 12월 20일(금)에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재차 방문 확인하여 진행하였는데, 보완조사의 주된 진행내용은 현장조사 당시 누락된 시설의 사진과 이용자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특별히 고려된 사항은 실제 이용자들이 말하는 장·단점 및 필요시설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시설이 조성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 조사 일정과 구체적인 조사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표3-1]과 같다.

표 3-1 조사의 일정 및 진행내용

구분	일정	조사 진행과정	비고
예비조사	10월 21일(월)~ 10월 31일(목)	· 국내외 선행연구자료 수집 및 검토 · 지자체 현황자료 정리 및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내용의 설정
현장조사 (본조사)	11월 1일(금)~ 11월 10일(일)	· 사업주체 및 운영관련 관리자 인터뷰 · 거주자 인터뷰 · 사진촬영, 실측 등 시설물 파악	현장조사를 통한 실증적 검토
조사내용 정리	11월 11일(월)~ 11월 18일(월)	· 시설물 및 프로그램 · 시설별 사진 정리	조사내용의 정리 및 검토
보완조사	12월 18(수), 12월 20일(금)	· 현장조사시 누락된 사항 추가 조사	-
조사대상지 분석	12월 23(월)~ 12월 13일(화)	· 시설별 사업 추진, 물리적 현황, 운영에 관한 분석	특성 분석

### 3)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와 관련한 조사의 내용은 크게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세 가지 종류의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및 관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히어링 조사와 현장 실측 및 사진촬영 조사로 나누어 행하였다.
- 먼저, 이용자 및 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히어링 조사는 사업주체, 부지소유, 건물소유, 사업지원비,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 등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시설 조성 후 운영되고 있는 현황 또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 다음으로 실측조사에서는 현지 사진촬영 및 건축물 실측을 통하여 각 시설별 면적과 각 실의 공간구성, 동선 등을 파악하고, 고령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 하였다. 또한 환경보호 및 시설 유지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시설의 설치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하였다.



그림 3-1 조사대상지 사례조사 진행 사진

### 3.1.2 조사대상지의 선정

- 조사대상지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현황자료<sup>1)</sup>(공동생활 홈 684개소, 공동급식시설 326개소, 작은목욕탕 145개소)와 관련 논문<sup>2)</sup> 등에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대상 후보로 선정하였다.
- 이후, 우리나라 각 지역을 8개 도(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55개 시군으로 구분·검토하여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세 가지 종류의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사업주체, 사업비 조달, 시설의 건축방식,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비 조달, 지원근거 등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였다.
- 그리고 각 시설이 조성·운영됨에 있어 지자체와 마을, 민간, 개인의 역할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여러 유형을 도출하고 각 지역별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생활홈 12개소(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공동급식시설 6개소(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김해시), 작은목욕탕 6개소(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총 24개소가 선정되었다.
- 이상과 같이 연구의 목적과 취합되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조사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그 선정기준과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면 [표3-2, 3-3]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2014. 1

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 12

표 3-2 고령자 공동시설의 선정기준

구분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현황자료 및 관련 논문 등에서 취합한 정보		
권역구분	강원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유형분류	사업주체 / 부지소유 / 건물소유 / 사업지원비 / 운영주체 / 거주유형 - 공동생활 홈, 설치유형-공동급식시설, 목욕탕 / 운영비조달 / 지원근거		
유형고찰	사업주체 / 부지소유 / 건물소유 / 사업지원비 / 운영주체 / 운영비조달 - 1.지자체 2.마을 3.지자체+마을회 4.민간 5.개인 6.기타 7.기재사항없음		
	지원근거 - 1.노인복지법 2.지자체 시책사업 3.조례 4.자체규정 5.기재사항없음		
	거주유형 - 1. 공동거주형 2.공동취사형 3.독립침실형 4.독립거주형	설치유형 - 내부형, 별도형	

표 3-3 고령자 공동시설의 선정과정

DATA 취합	»	지자체 현황			+	논문 등 관련자료			=	총괄		
		공홈	급식	목욕		공홈	급식	목욕		공홈	급식	목욕
		684	326	145		13	0	1		697	326	146



분류 1	»	지역별 분류(공동생활 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0/0	8/0/3	26/0/0	26/20/4	464/61/12	77/0/122	12/226/07	9/19/5



구분	공동생활 홈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 + 마을회	민간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민간	마을회	거주자	복합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공동	자체조달	기재사항없음
강원	6				1			6		1			6	1	
경기		2			1	1		1		1	1	1		1	
충북		20		2				22				20	2		
충남	17	2	3					22				20		2	
전북	335	127		1				463				462	1		
전남	45	30		1	1	9		36	28	4	59		10	8	
경북	11							7		4	4	5	2		
경남	77	2						6	10	63	66			13	
합계	491	183	3	4	3	10	0	563	28	10	73	632	6	21	25
	684					684					684				

공동급식시설															
구분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 + 마을회	민간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민간	마을회	거주자	복합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공동	자체조달	기재사항없음
충남					19						19	19			
전북	61					61						61			
경북	222	4					226					222		4	
경남					20			16			4	16			4
합계	283	4	0	0	39	61	226	16	0	0	23	318	0	4	4
	326					326						326			

»

작은목욕탕															
구분	사업주체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 + 마을회	민간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민간	마을회	거주자	복합	기재사항없음	지자체	공동	자체조달	기재사항없음
강원	3					3						3			
충남	1				3	1		3				1		3	
경남	3	2				3		2				3	2		
전남	122							122					122		
전북	1				10	11						11			
합계	130	2	0	0	13	18	0	127	0	0	0	18	124	3	0
	145					145						145			



유형	해당 지자체	분류 (사업주체/운영주체/운영비조달)	개소	
공동생활홈				
독립거주형	경기도	강화군	민간 / 지자체 / 공동	2
	충청북도	괴산군	민간 / 기타(지자체 조례, 규정 마련) / 마을자체	
	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독립취침형	전라북도	익산시	민간 / 기타(지자체 조례, 규정 마련) / 마을자체	2
공동거주형	경기도	연천군	마을회 / 마을회 / 공동	6
	충청북도	영동군	마을회 / 마을회 / 지자체	
	경상북도	의성군	지자체 / 마을회 / 마을자체	
	경상북도	예천군	지자체+마을 / 마을회 /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 기재사항없음 / 지자체	
	전라북도	김제시	마을회 / 마을회 / 지자체	



분류 3	»	유형	해당 지자체		분류 (사업주체/운영주체/운영비조달)	개소	
		공동취사협	강원도	강릉시	지자체 / 마을회 / 지자체	1	
			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 마을회 / 공동	1	
		공동생활 홈 조사대상지 개소 수				12	
		공동급식시설					
		기존시설 이용	강원도	평창군	지자체 / 기타(종교시설) / 지자체		3
			경상북도	의성군	마을회 / 마을회 / 마을자체		
		기존시설 일부 이용	전라북도	완주군	지자체 / 마을회 / 지자체		2
			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 마을회 /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 기타(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 지자체		
				김해시	지자체 / 기타(자원봉사자) / 지자체		1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개소 수				6	
		작은목욕탕					
		신축	전라북도	무주군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1
			전라남도	순천시	지자체 / 지자체 / 공동		1
		별동 신축	충청북도	단양군	지자체 / 마을회 / 마을자체		1
			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 지자체 / 공동		1
		기존시설 이용	경상남도	고성군	마을회 / 마을회 / 공동		1
		기존시설 일부 이용	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1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개소 수				6	
고령자 공동이용 시설 조사대상지 총 개소 수						24	

○ 위와 같은 과정으로 선정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조사대상지 24개소를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고령자 공동시설 조사대상지 최종선정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1	강원도	강릉시	7	전라북도	김제시	1	강원도	평창군	1	충청북도	단양군
2	경기도	강화군	8	전라남도	영암군	2	전라북도	완주군	2	전라북도	무주군
3		연천군	9		광양시	3	경상북도	의성군	3	전라남도	순천시
4	충청북도	괴산군	10	경상북도	의성군	4	울진군	4	경상남도		광양시
5		영동군	11		예천군	5		경상남도		의령군	5
6	전라북도	익산시	12	경상남도	의령군	6	김해시	6	경상남도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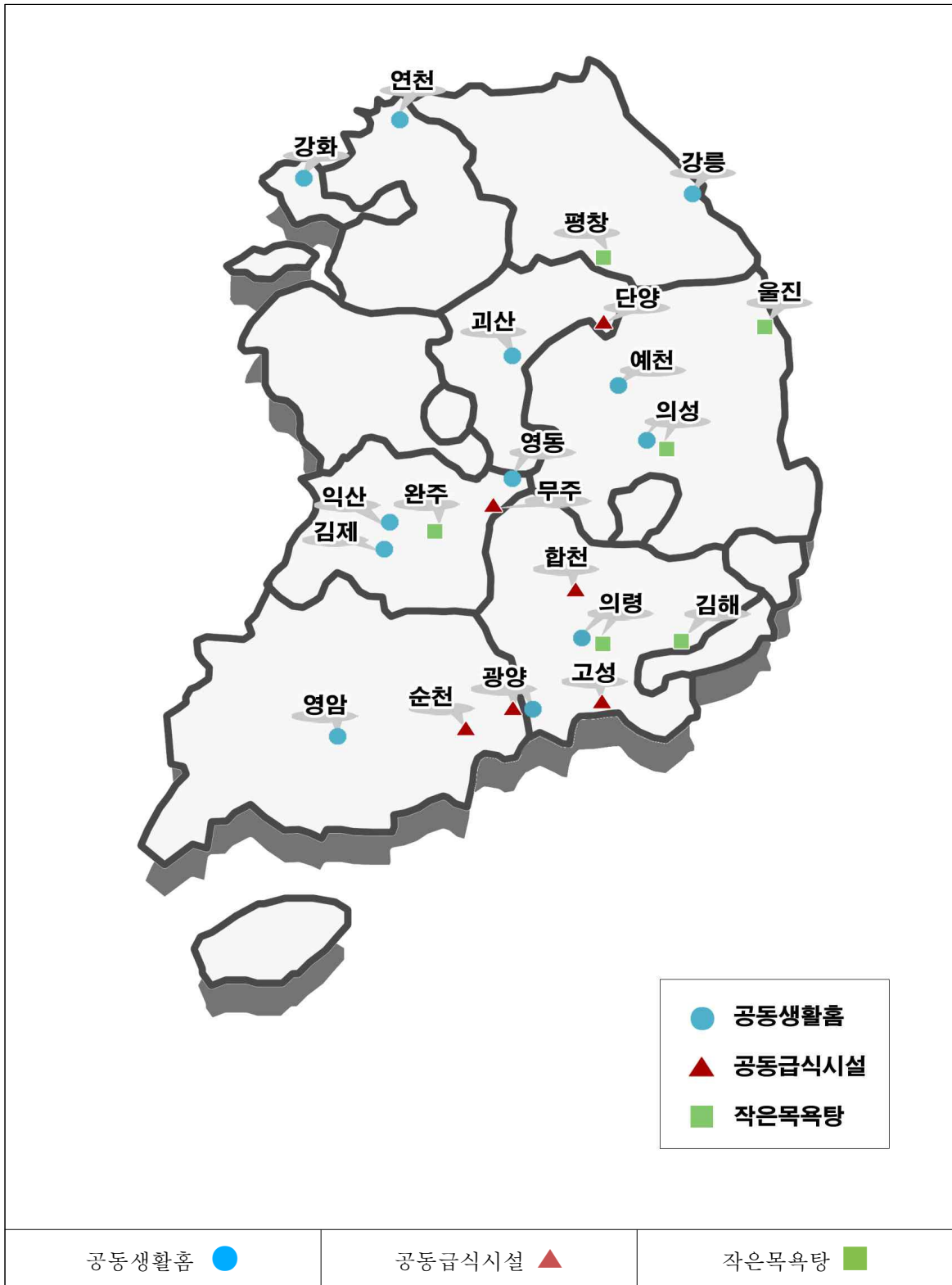


그림 3-2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사례조사 대상지 분포 현황

- 최종 선정한 조사대상지 공동생활 홈 12개소, 공동급식시설 6개소, 작은목욕탕 6개소의 전국 분포현황을 지도로 정리하면 [그림 3-2]과 같다.

### 3.1.3 조사대상지의 개요

#### 1) 공동생활홈

- 전술한 바와 같이 3.1.2절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조사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은 2개소(강화군, 연천군), 강원도 지역 1개소(강릉시), 충청북도 지역 2개소(괴산군, 영동군), 경상남도 지역 1개소(의령군), 경상북도 지역 2개소(의성군, 예천군), 전라남도 지역 2개소(영암군, 광양시), 전라북도 지역(익산시, 김제시)로 12개 지역의 총 12개소이다.
- 이상과 같이 선정된 공동생활 홈 조사대상지의 개요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공동생활 홈 조사대상지 개요

지방자치단체	시설명칭	위치	조성시기
강원 강릉	제비1리 노인정	강릉시 구정면 제비1리 225-1	2013년
경기 강화	사랑의집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40	2009년
경기 연천	카네이션하우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22-2	2013년
충북 괴산	괴산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 홈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05	2011년
충북 영동	심청면 공동생활 홈	영동군 심청면 장동리 27-1	2013년
전북 익산	갈산마을 공동홈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64-5	2012년
전북 김제	월성 여자 경로당	김제시 월성동 월성2길 39-21	2009년
전남 영암	영암군 달뜨는집 2호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5	2008년
전남 광양	옥곡면 옥곡 경로당	옥곡면 신금리 큰 골2길 24	2005년
경북 의성	운곡리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의성군 금성면 운곡리 266번지	2009년
경북 예천	미호1리 노인회관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9	2012년
경남 의령	평촌마을 공동거주지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143-1	2007년

- 위와 같이 선정된 공동생활 홈의 조사대상지 건축물 현황은 다음 [그림 3-3]의 건축물 외관사진과 [그림 3-4]의 건축물 내부사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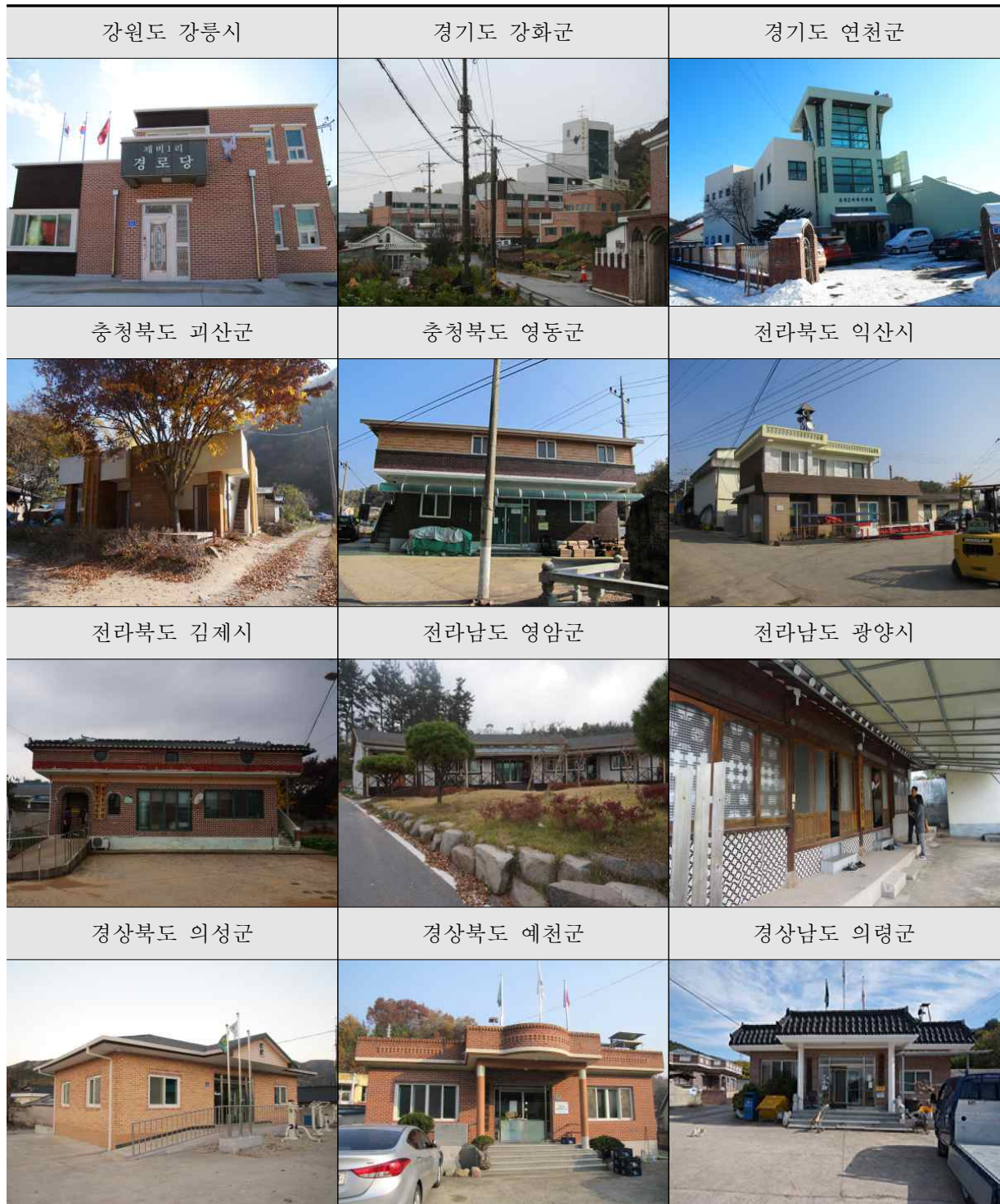





그림 3-3 공동생활홈 조사대상지 건축물 외관 사진



그림 3-4 공동생활홈 조사대상지 건축물 내부 사진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 2) 공동급식시설

- 공동급식시설의 선정된 조사대상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 1개소(평창군), 경상남도 지역 2개소(의령군, 김해시), 경상북도 지역 2개소(의성군, 울진군), 전라북도 지역 1개소(완주군)로 총 6개소를 선정했다.

표 3-6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개요

지방자치단체	시설명칭	위치	조성시기
강원 평창	대관령 성결교회 나눔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24	2012년
전북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71-24	2011년
경북 의성	신평면 공동급식시설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579	2012년
경북 울진	읍내3리 서부경로당	울진읍 읍내리 321	2011년
경남 의령	의령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의령군 공류면 청정로 1224	2010년
경남 김해	김해시 종합복지관	김해시 외동 1261-3	2013년

- 이상과 같이 선정된 공동급식시설의 조사대상지를 정리하면 [표 3-6]와 같고 건축물 현황은 알기 위한 외관과 내부사진은 [그림3-5, 3-6]와 같다.



그림 3-5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건축물 외관 사진



그림 3-6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건축물 내부 사진

### 3) 작은목욕탕

- 작은목욕탕의 조사대상지를 권역별로 분류하면 충청북도 지역 1개소(단양군), 경상남도 지역 2개소(고성군, 합천군), 전라남도 지역 2개소(순천시, 광양시), 전라북도 지역에 1개소(무주군)으로 총 6개소이다.
- 위와 같이 선정된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3-8]과 같다.

표 3-7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개요

지방자치단체	시설명칭	위치	조성시기
충북 단양	평동5리 다목적회관	단양군 매도읍 평동5리 141	2009년
전북 무주	무주군 안성면사무소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56	2012년
전남 순천	해룡면 목욕탕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2010년
전남 광양	옥곡 공중목욕장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75-3	2013년
경남 고성	임포 새마을회관	고성군 하일면 학림5길 20-19	2011년
경남 합천	평구리 작은목욕탕	합천군 쌍백면 평구3길 12	2001년



- [표 3-7]의 작은목욕탕의 조사대상지의 건축물 현황을 알기 위한 시설별 외관 및 내부 사진을 보면 [그림3-7]과 같다.

충청북도 단양군(외관)	전라북도 무주군(외관)	전라남도 순천시(외관)
		
충청북도 단양군(내부)	전라북도 무주군(내부)	전라남도 순천시(내부)
		
전라남도 광양시(외관)	경상남도 고성군(외관)	경상남도 합천군(외관)
		
전라남도 광양시(내부)	경상남도 고성군(내부)	경상남도 합천군(내부)
		

그림 3-7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건축물 사진



## 3.2 공동생활 홈

### 3.2.1 사업추진 방식

#### 1) 사업추진 방식

- 공동생활 홈 12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본 사업의 추진 방식을 정리하면 [표3-8]과 같다.

표 3-8 공동생활 홈 사업추진 방식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사업주체	부지 / 건물 제공	조성방식
강원 강릉	경로당 신축사업	시장	마을 / 마을	신축
경기 강화	사랑의 집	사랑의 집	군 / 대한건설단체 총연합 후원	신축
경기 연천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마을	마을 / 마을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충북 괴산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공동생활 홈	(사)한국농촌 건축학회 (재)다솜동지 복지재단	개인 소유 토지 승낙서, 마을 / 마을, 군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충북 영동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운영사업	이장	마을 / 마을	경로당 개보수
전북 익산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공동생활 홈	(사)한국농촌 건축학회	시 / 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전북 김제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홈) 운영사업	마을	마을 / 마을	노인 여가시설
전남 영암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사업	군수	군 / 군	신축
전남 광양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	시장	마을 / 마을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경북 의성	독거노인어울림 생활가정조성사업	군수	마을 / 군	신축
경북 예천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 운영사업	군수	마을 / 마을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경남 의령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제	군수	마을 / 마을	유휴 공공시설, 개인 공가 리모델링

- 이상과 같이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중 공동생활 홈의 조사대상지를 사업추진 방식으로 정리한 [표3-8]를 보면 그 기준을 사업주체, 부지와 건물 제공, 조성방식 등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사업추진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분류 중 조성방식을 보면 건물을 신축한 곳은 강화군, 강릉시, 의성군, 영암군 4개소이고, 기존의 시설들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곳이 연천군, 괴산군, 영동군, 의령군, 예천군, 광양시, 익산시, 김제시의 8개소로 나타난다. 이처럼 기존시설을 이용한 사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설의 초기 조성비용을 절감하여 좀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들을 조사대상지의 사업추진의 과정을 통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첫 번째로 강원도 강릉시의 제비1리 노인정은, 강릉시에서 2012년~2016년까지 시행 중인 경로당 신축사업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00천원(도비 25%, 시비 75%)을 지원받아 2013년 마을 소유의 부지에 신축하고 취사도구를 들여놓아 공동취사형으로 조성되었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 강화군에 위치한 사랑의 집은, 2008년~2009년에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강화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지에 독거노인을 위해 건립한 노인전용 주거시설(공동주택)이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단체와 건설업체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재원을 조성 하였으며, 2009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경기도 연천군의 카네이션하우스는, 2013년에 경기도의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초성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도비 30,000천원과 농협중앙회의 농촌지역 지원금 30,000천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청산면 초성 2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현재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충청북도 괴산군의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 홈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85,000천원을 지원 받아 조성되었다. 이는 (재)다솜동지복지재단에서 첫 번째로 지원하여 건립된 시설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마을 소유의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 등 자부담 능력이 약한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하는데, 현재 3명의 독거노인이 독립거주형으로 생활 중이다.
- 충청북도 영동군의 심청면 공동생활 홈은, 영동군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사업으로 2013년에 건립되었다. 이 시설은 마을 이장이 주체가 되어 군비 11,352천원을 지원받아, 기존 마을회관에 작은 방을 화장실로 개조하고 취사 도구, 이불 등을 들여놓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입주 대상은 독거노인으로 생활 능력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전라북도 익산시의 갈산마을 공동홈은 괴산의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 홈과 같이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100,000천원을 지원 받아 조성되었는데, 건물과 부지 모두 시 소유로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층은 기존 용도인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며 1층을 공동생활 홈으로 이용 중이다.
- 전라북도 김제시의 월성여자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공동생활 홈은, 김제시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홈)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되었다. 사업의 대상은 노유자시설 설치가능지역(건물면적 100㎡ 이상, 동지역은 80㎡)중에 독거노인 수가 많고 입주희망노인이 10명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의 노인여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지인 월성여자경로당의 경우 공동시설 홈에 경우, 2009년에 김제시로부터 13,000천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마을회관을 용도 변경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물품을 들여 놓으며 시작 되었으며, 현재 여성 16인이 생활 중이다.

- 전라남도 영암군의 달뜨는 집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고 1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조사대상지인 달뜨는 집 2호는 2008년에 군비 265,000천원을 지원과 지역 내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아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 되었으며, 건물의 시공을 지역 내 자활기업에 맡기고, 2주에 1회씩 시설에 방문하여 보수해주는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영암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 경로당은 2005년, 2007년에 진행된 광양시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이 시설은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기존 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시설 홈을 조성 하였는데, 취침은 마을 내 개인 소유주택에서 하고 취사만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취사형으로 운영 중이다.
- 경상북도 의성군의 운곡리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2011년~2012년까지 시행된 의성군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조성사업으로, 의성군의 지원을 받아 2009년에 마을 소유의 부지에 공동거주형으로 신축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 경상북도 예천군의 미호1리 노인회관에서 운영 중인 공동생활 홈은 예천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군비 1,400천원을 지원받아 조성 되었다. 이 시설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노인회관시설로 이용하고 밤에만 공동시설 홈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경상남도 의령군의 평촌마을 공동거주지는 2007년부터 시행중인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으로 의령군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된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군비 3,600천원을 지원받아 기존 마을회관의 개보수 및 시설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시설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 3.2.2 시설의 물리적 현황

- 공동생활 홈 12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본 물리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3-9]과 같다

표 3-9 공동생활 홈 물리적 현황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법적용도	규모(지상/지하)	구조	건축면적(m <sup>2</sup> )	다른시설연계	주요설비	무장애디자인 적용여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여부
강원 강릉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	RC조	87.8	없음	가스보일러	○	X
경기 강화	공동주택	4층 / 1층	RC조	942.4	경로당	기름보일러	○	X
경기 연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	RC조	323.3	마을회관	도시가스	○	X
충북 괴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	RC조	69.0	없음	기름보일러	○	X
충북 영동	노유자시설	2층 /	벽돌조	92.1	없음	가스보일러	○	X
전북 익산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	벽돌조	69.0	마을회관	석유보일러	○	X
전북 김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	벽돌조	96.0	없음	기름보일러+전기온수기	○	X
전남 영암	노유자시설	1층 /	경량철골조	237.2	없음	기름보일러	○	X
전남 광양	노유자시설	1층 /	RC조	600.0	없음	기름보일러	X	X
경북 의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	경량철골조	101.5	없음	기름보일러	○	X
경북 예천	노유자시설	1층 /	벽돌조	110.5	없음	기름보일러	○	X
경남 의령	노유자시설	1층 /	벽돌조	112.6	없음	가스보일러	○	X

- 강원도 강릉시의 공동생활 홈은, 지상 2층의 RC조 건물인 체비 1리 노인정의 1층에 조성되어 공동취사형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건물면적 87.76m<sup>2</sup>중 1층의 면적은 59.82m<sup>2</sup>, 2층이 27.94m<sup>2</sup>으로, 1층의 내부는 거실 겸 주방(37.44m<sup>2</sup>), 방(9m<sup>2</sup>), 화장실 2개소(6.48m<sup>2</sup>)과 기타공간으로 이뤄져 있고, 2층은 31.84%로 거실(24.04m<sup>2</sup>)과 주방(1.8m<sup>2</sup>), 화장실(1.8m<sup>2</sup>), 기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입주 전이었기 때문에 1인당 이용면적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경기도 강화군의 사랑의 집은, 독립거주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RC조 건물에서 운영 중이다. 내부는 방과 화장실 그리고 기타공간으로 구성되어진 1인실 38개소와 기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인실의 개별 면적은 82.85㎡로, 방 겸 거실 겸 침실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이 21.6㎡이고 화장실이 5.2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건물전체 면적(942.44㎡)에 대한 1인당 점유면적으로 살펴보면, 24.8㎡/인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경기도 연천군의 카네이션하우스는, 지상 2층의 RC조의 초성 2리 복지회관 건물 내에서 공동거주형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내부는 공동시설 홀으로 이용되는 공간뿐 아니라 관리실, 회의실, 운동시설 등 기타시설들과 함께 조성되어 있으며, 건물 전체면적(323.33㎡)중 공동시설 홀으로 이용되는 면적은 60.17㎡으로 약 18.6%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시설 홀은 거실(36㎡)과 방 2개소(11.21㎡), 화장실(7.2㎡), 보일러실(5.7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거주 중인 6인의 1인당 점유면적은 10.03㎡/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제 취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거실의 실 면적을 합산하면 47.42㎡로 취침공간은 1인당 7.87㎡/인 정도 나타나고 있다. 주방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내에 있는 주방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주 이용자가 고령자 임에도 불구하고 샤워시설의 이용시 2층에 위치한 헬스장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화장실의 경우에는 내부에 1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거주인원이 6인이다 보니 사용시 불편함이 커 추후 보일러실을 화장실로 개조계획이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충청북도 괴산군의 공동생활 홀은, 지상 1층의 RC조 건물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독립거주형으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총 3인의 거주인이 이용 중이었고, 건물은 취침 및 주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방(18.87㎡) 화장실(2.73㎡)과 기타공간으로 구성된 원룸형 실 3개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체면적(69㎡)에 대한 1인당 점유면적 23㎡/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충청북도 영동의 공동생활 홀은,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인 기존의 마을회관의 화장실을 개조하고 이불과 취사도구들을 들여놓으며 시작 되었으며, 낮에는 마을회관 밤에는 공동생활 홀으로 이용 중이었다. 6명이 거주 중인 이곳은

거실(48㎡)과 주방(12.6㎡), 방(24.3㎡), 화장실(11.7㎡)과 기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전체면적(92.14㎡)에 대한 1인당 점유면적은 15.36㎡/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거주자의 주생활공간인 방의 1인당 점유면적은 4.05㎡/인으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방의 경우에는 2.1㎡/인, 화장실의 경우 1.95㎡/인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 익산시의 갈산마을 공동홈은, 지상 2층의 벽돌조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공동생활 홈으로 이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독립거주형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남성 3인이 거주중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14.2㎡)과 주방(7㎡), 화장실(3.4㎡) 및 기타공간과 개인실 3개소(29.2㎡)와 기타 공간(8.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생활홈 전체 면적(62.6㎡)에 대한 1인당 점유비율은 20.9㎡/인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 전라북도 김제시의 월성여자경로당은, 1층의 벽돌조 건물인 기존 마을회관 건물을 공동생활 홈으로 운영 중이다. 방 1개소 및 거실로 나누어 16인이 공동으로 취침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면적(96㎡)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6.0㎡/이다. 또한, 실제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방과 거실의 실면적을 합산하면 44.9㎡에 이르고 있는데, 취침공간은 1인당 약 2.81㎡/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방의 실 면적은 14.3㎡로 1인당 0.89㎡/인이다. 한편, 화장실의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 각 1개소의 총 2개소가 있으나, 실제로 겨울철에는 내부 화장실만 이용되고 있어, 16인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라남도 영암군의 달뜨는 집 2호는,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건물로 6실의 독립거주형 방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1개실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거주형의 방은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거실 겸 주방, 방 그리고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다. 두 타입의 각 실별 면적을 알아보면, 첫 번째 타입의 경우 거실 겸 주방은 19.17㎡, 방의 면적은 27.54㎡ 그리고 화장실이 5.67㎡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 타입의 경우 거실 겸 주방이 13.82㎡ 와 방 26.64㎡, 화장실이 4.13㎡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의 면적은 31.32㎡로 거주인들의 침묵도모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이 건물의 전체면적은 237.24㎡로 1인당 점유면적은 39.54㎡/인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경로당은, 지상 1층의 RC조 건물로, 거실(75.6㎡)과 주방(18.9), 방 2개소(83.34㎡)와 화장실(5.04㎡) 그리고 기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설은 공동취사형으로 남성 19명이 이용 중이었는데, 건물 전체면적(600㎡)에 대한 1인당 점유면적은 31.57㎡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건물 전체 중 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방 1개소(63.18㎡)로 이곳의 1인당 점유면적을 보면 3.33㎡/인 정도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는 0.27㎡/인의 점유면적을 나타내며 협소한 것은 물론,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여 다수의 계단으로 오르내려야하는 지리적 요건과 외부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주 이용자인 고령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경북 의성군의 운곡리 독거노인 생활가정은,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건물에서 공동거주형으로 남성 5인이 거주 중이다. 건물은 거실(25.2㎡), 주방(21.6㎡), 방(21.6㎡), 화장실 및 욕실 2개소(8.1㎡)과 기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면적(101.47㎡)에 대한 1인당 점유면적은 20.29㎡/인으로 주 생활공간인 거실과 방의 경우 9.36㎡/인의 점유면적을 화장실의 경우 1.62㎡/인의 점유면적이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공동거주형의 특성상 미흡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인한 거주인들의 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경상북도 예천의 미호 1리 노인회관은, 낮에는 노인회관으로 이용되고 밤에는 공동생활 홈으로 이용되는 형태로, 남성 1인, 여성 5인 총 6인이 거주 중이다. 건물은 거실(21.6㎡), 주방(12.87㎡), 방 2개소(39.77㎡), 화장실(7.38㎡) 그리고 기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면적(110.47㎡)의 1인당 점유면적 18.41㎡/인이지만, 이는 노인회관 전체로 산정한 점유면적으로 각 실별로 나누어 보면, 거실의 경우 3.6㎡, 주방은 2.15㎡, 방 6.63㎡, 화장실은 0.63㎡로 나타난다. 또한 이 시설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밤에는 쉬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반사회, 노인회 등의 마을회의로 편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마을주민과 거주인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경남 의령군의 평촌마을 공동거주지는, 지상 1층의 벽돌조 건물인 기존의 마을회관을 공동생활 홈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낮에는 마을회관 밤에는 여성 6인이 공동거주형으로 이용 중에 있다. 건물은 거실(42.51㎡), 주방(12.15㎡), 방 2개소(34.56㎡), 화장실 2개소(12.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전체면적(112.62㎡)중 1인당 점유면적은 18.77㎡/인이지만, 거주자의 주 이용공간인 방의 경우 5.76㎡/인, 화장실의 경우 2.09㎡/으로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뿐 아니라, 방까지 낮 시간대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거주자의 사생활보호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3-10 공동생활 홈 1인당 사용면적(면적/거주인원으로 산정시) 집계표

지방자치단체	면적(㎡)	거주인원	1인 사용면적(㎡)	비고
강원 강릉	87.8	-	-	입주자 없음
경기 강화	942.4	38세대	24.00	독립거주형
경기 연천	64.4	6명	10.72	공동거주형
충북 괴산	69.0	3명	23.00	독립거주형
충북 영동	92.1	6명	15.35	마을회관과 함께 사용
전북 익산	69.0	3명	23.00	독립침실형
전북 김제	96.0	16명	6.00	공동거주형
전남 영암	237.2	6세대	39.54(세대당)	독립거주형
전남 광양	208.1	19명	10.95	공동취사형
경북 의성	160.0	5명	32.00	공동거주형
경북 예천	110.5	6명	18.41	마을회관과 함께 사용
경남 의령	112.6	6명	18.77	마을회관과 함께 사용

\* 공동거주형 및 마을회관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동면적을 포함

- 시설별 물리적 특징으로 알아본 사실을 바탕으로,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사생활 보호 및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 해주기 위한 필요면적을 알아보기 위한 1인당 사용 면적을 산정해 보면 [표 3-10]과 같으며, 독립거주형·독립침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27.38㎡, 공동거주형·공동취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14.94㎡의 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거주형이면서 마을회관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17.51㎡, 아직 입주자가 없어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봤을 때 독립거주형·독립침실형, 마을회관과의 공유형, 공동거주형·공동취사형의 순으로 1인당 평균 사용 면적이 넓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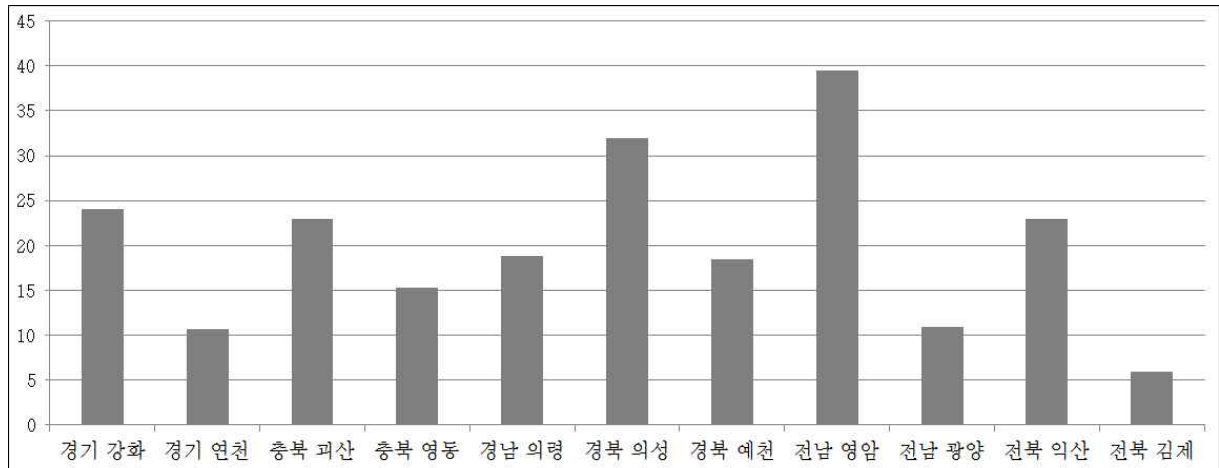


그림 3-8 공동생활 홈 1인당 사용면적



그림 3-9 거주 유형별 현황 사진

- 그리고 각 시설별 1인당 사용면적(m<sup>2</sup>)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화하면 위의 [그림 3-8]과 같으며, 전라남도 영암군의 공동생활 홈이 1인당 사용 면적이 가장 크고, 전라북도 김제시의 공동생활 홈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사례조사 당시 입주 전이었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거주유형별 생활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현황 사진은 위의 [그림 3-9]을 보면 알 수 있다.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분류 : ■ 방, ■ 거실, ■ 주방, ■ 화장실

그림 3-10 공동생활홈 조사대상지 도면

### 3.2.3 운영주체 및 방식

- 공동생활 홈 조사대상지 12개소에 대하여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정리하면 [표3-11]와 같다.

표 3-11 공동생활 홈 운영주체 및 방식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대상자	거주 유형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	연간 운영비 (천원)	입주자 부담액
강원 강릉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취사형	마을	시+거주자	3,165	없음
경기 강화	65세이상 취약계층	독립거주형	군	군+거주자	자체조달	생활유지비
경기 연천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거주형	마을	도+마을	10,000	월 10~20만원
충북 괴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독립거주형	자체운영	거주자	3,600	월3만원 (시설유지 관리), 생활유지비
충북 영동	독거노인	공동거주형	마을	군	군 보조 100%	없음
전북 익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독립침실형	거주자	시+거주자	자체조달	생활유지비
전북 김제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거주형	마을	시	3,000	없음
전남 영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독립거주형	군	군+거주자	2,500	공공요금, 생활유지비
전남 광양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취사형	마을	국비+분권+도비+시비	2,664	없음
경북 의성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거주형	면	마을	자체조달	없음
경북 예천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거주형	마을	군+마을	8,600	없음
경남 의령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거주형	거주자	군	1,080	없음

- 이상과 같이 정리된 [표3-11]를 보면 입주 대상자,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처, 연간 운영비, 입주자 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사대상지 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강원도 강릉시의 제비 1리 노인정의 공동생활 홈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제비 1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공동취사형으로 운영 중이다. 아직 시설의 입주가 되지 않아 정확한 연간 운영비를 알 수는 없었으나, 별도의 입주자 부담금 없이 시에서 조달되는 1,500천원과 마을자체에서 조달하는 1,665천원을 합한 3,165천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경기도 강화군의 사랑의 집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총 38가구가 거주중이며, 강화군에서 주체가 되어 군 직영으로 파견한 관리자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유지 및 관리비용은 군과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각 실의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대별 유지비용은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 4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 8조(노인전용주거시설)에 근거하고 있다.
- 경기도 연천군의 카네이션하우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여성 6인이 생활 중이다. 시설의 운영은 초성리 마을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천군에서 지원받는 연 10,000천원과 입주자 부담액 월 10~20만원으로 연 약 2,080천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복지법 및 경기도 시범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충청북도 괴산군의 괴산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 홈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립거주형으로 운영 중이다. 시설은 별도의 운영·관리자 없이 거주자들이 자체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군이나 면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없이 거주자들이 월 1만원의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세대별 계량기 및 보일러 가스렌지도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세대별 개별 공공요금 및 주거생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충청북도 영동군의 심청면 공동생활 홈은, 기존의 마을회관 시설을 개보수하여 낮에는 마을회관으로 밤에는 공동생활 홈으로 사용 중이며, 장동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독거노인으로서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 가족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여성 6인이 거주 중으로, 별도의 입주자 부담액 없이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및 비품구입 등의 비용을 모두 군에서 지원받고 있고, 부족한 비용은 마을에서 자체조달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노인복지법 제 2조의 2에 근거하고 있다.

- 전라북도 익산시의 갈산마을 공동홈은,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국민생활기초대상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남성 3인의 거주자들이 스스로 운영 중이고, 별도의 부담액은 없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냉·난방비용을 제외한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며,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이다.
- 전라북도 김제시의 월성 여자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월성동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6인의 여성이 거주 중인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의령군에서 난방비, 전기세, 부식비 등으로 연간 1.080천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족한 비용을 마을회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한울타리행복의집 조성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전라남도 영암군의 달뜨는 집 2호는 영암군이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인 시설로,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른 시설보다 폭 넓은 대상을 상대로 운영 중이다. 현재 6세대(남성 3인, 여성 6인)가 거주 중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연 2,500천원으로 운영되고 세대별 개별 공공요금 및 주거생활 유지비용은 각 세대별로 거주자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공가 발생 시 요금을 군에서 직접 납부해 주고, 건물의 보수 및 세대별 도배·장판을 해주는 등의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한다.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금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공동취

사형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현재 남성 19인이 이용 중이며, 별도의 부담금 없이 국비 18%, 분권 12%, 도비 35%, 시비 35%의 비율로 연간 2,664천원의 지원비를 받아, 노인복지법 제 45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 경상북도 의성군의 은곡리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성면이 주체가 되어 공동거주형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남성 5인이 거주 중이며, 소요되는 운영비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마을자체에 조달하며 시설내의 전기세만 입주자들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성군 자체 특수 시책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다.
- 경상북도 예천군의 미호 1리 노인회관에서 운영 중인 공동생활 홈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남성 1인, 여성 5인이 거주 중이다. 시설은 미호 1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입주자 부담액 없이 예천군에서 지원하는 8,600천원과 부족한 운영비를 마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평촌마을 공동거주지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쌍리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공동거주형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낮에는 마을회관으로 밤에는 공동생활 홈으로 이용 중이며 여성 6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설의 운영비는 군에서 나오는 3,600천원의 지원비와 부족한 금액은 경로당으로 나오는 지원비 및 마을 자체 조달 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한다.
- 위와 같이 공동생활 홈의 조사대상의 사례조사로 알아본 운영방식에 대해 분류해 보면 조사대상지 12개소 중, 생활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는 곳은 경기도 연천군, 단 1개소로 대부분의 곳에서 지자체 등에서 운영비를 조달 받아 운영되며 입주자에게 생활 및 시설유지비 외의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공동급식시설

#### 3.3.1 사업추진 방식

##### 1) 사업추진 방식

- 공동급식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 본 공동급식시설의 사업추진 방식은 [표 3-12] 같다.

표 3-12 공동급식시설 사업추진 방식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사업주체	부지 / 건물 제공	구성방식
강원 평창	장수식당	군수	마을 / 종교단체	기존 종교시설 활용
전북 완주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군수	마을 / 마을	신축
경북 의성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마을	군 / 마을	기존 마을회관시설 활용
경북 울진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군수	군 / 마을	기존 마을회관 증축
경남 의령	무료 경로식당 운영	군수	기존 복지관시설	기존 복지관시설 활용
경남 김해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시장	기존 복지관시설	기존 복지관시설 활용

- 사업추진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분류 중 사업의 주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지 총 6개소 중 평창군, 의령군, 김해시, 울진군, 완주군 5개소가 지자체의 주체로 시설이 조성 되었고 단 1개소 의성군만이 마을 주체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지자체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례조사지 6개소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강원도 평창군의 성결교회 나눔채의 경우, 평창군에서 2012년~2016년까지 시행한 장수식당 사업으로 조성되었다. 이 사업은 마을이나 종교단체의 부지 및 건물을 이용하고 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나눔채의 경우 2012년 성결교회에 급식장소를 마련하고, 이용자 수에 따른 급식비 지원(1식 3,000원) 및 2,000천원의 부대시설 지원 등으로 총 18,400천원을 군에서 지원받아 교인들의 자원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 전라북도 완주군의 학동마을 공동급식소의 경우, 완주군에서 11년부터 완주군민(마을별 농번기철 마을 공동급식을 원하고 참여인원이 많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번기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공동급식 참가자 20인 이상으로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공동급식 가능한 취사시설을 갖춘 마을 등으로, 급식조리자의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학동마을 공동급소의 경우 군 지원금 35,000천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의 기부금, 그리고 마을자체 조달 기금으로 조성 되었으며, 봄·가을에 각 40회씩 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의 공동급식시설은, 일정규모(30가구) 이상의 마을회,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2010년~2013년까지 시행된 의성군의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마을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었다. 이 시설은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의 비율로 20,000천원의 지원금을 받아 기존의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고 취사도구를 구입한 후, 식사시간에만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읍내3리 서부경로당의 공동급식시설은, 의성군과 같이 경로당 내에서 급식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울진군의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의 일환으로 군에서 29,290천원을 지원받아 기존 마을회관을 증축하여 조성되었으며,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 경상남도 의령군 노인복지관에서 조성된 공동급식시설은, 의령군이 주체가 된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으로 2010년에 분권교부세 60,000천원, 도비 39,000천원, 군비 18,000천원으로 총 81,000천원의 지원금을 받아 기존 복지관 건물에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 김해시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급식시설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기존 김해시복지관 건물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3.3.2 시설의 물리적 현황

-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6개소에 대하여 물리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3-13]와 같다.

표 3-13 공동급식시설 물리적 현황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법적용도	규모 (지상/ 지하)	구조	건축면적 (㎡)	다른 시설과의 연계	무장애 디자인 적용여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여부
강원 평창	종교시설	2층 /	RC조	124.62	종교시설	X	X
경북 울진	노유자시설	2층 /	RC조	129.2	마을회관	X	X
전북 완주	노유자시설	1층 /	목조	60.33	경로당	X	X
경북 의성	노유자시설	1층 /	경량 철골조	178.74	마을회관	X	X
경남 의령	노유자시설	3층 /	RC조	435.9	복지관	○	○
경남 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 1층	RC조	2187.71	복지관	X	X

- 우선, 강원도 평창군의 장수식당은, 종교시설 부지 내에 있는 다수의 건물들 중 하나의 동으로, RC조로 된 2층의 건물 중 1층에서 운영 중이다. 건물의 전체면적은 124.62㎡로, 내부는 96인 동시식사 가능한 식당(78.21㎡)과 조리실(13.2㎡), 화장실 3개소(11.52㎡)와 보일러실 계단실 등의 기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전라북도 완주군의 학동마을 공동급식소는, 지상 2층의 경로당 건물을 증축한 1층의 목조건물에서 운영 중이다. 전체 면적 173.87㎡중 급식시설(60.3㎡)의 비율은 34.7%로, 15인이 동시에 식사 가능한 식당(27.6㎡)과 주방(10.9㎡),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4.9㎡)과 기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루 평균 약 20명이 이용 중이며, 주요 실별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식당은 1.4㎡/인, 주방은 0.5㎡/으로 큰 불편한 없이 이용 가능한데 비해, 화장실의 경우 급식시설만으로 산정할 경우 0.3㎡/인의 점유율이 나타나는데, 경로당과 공동 사용을 하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시설은, 별도의 시설 없이 마을회관

내에서 농한기의 점심, 저녁시간에만 운영 중이다. 건물 전체의 면적(178.7 m<sup>2</sup>) 중 조리 및 식사공간으로 사용되는 거실 겸 주방의 면적이 15.6m<sup>2</sup>으로 8.72%의 공간이 공동급식시설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시설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30명으로 1인당 점유면적이 0.52m<sup>2</sup>/인으로 조리 및 식사를 모두 수행하기엔 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동급식시설은, 심평면 서부경로당 내에서 식사시간에만 운영 중이다. 경로당은 RC조의 2층 건물로 급식시설은 1층의 일부에서 운영 중이고, 건물 전체 면적(129.2m<sup>2</sup>)중 조리과 식사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거실의 면적은 33.75m<sup>2</sup>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테이블 없이 식사시간에만 상을 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경상남도 의령군의 공동급식시설은, 지상 3층의 RC조인 노인복지관 건물 1층에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1층의 전체면적(435.9m<sup>2</sup>) 중 급식시설(162m<sup>2</sup>)의 비율은 37.02%정도이고, 식당(126m<sup>2</sup>)과 조리실(36m<sup>2</sup>)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 등 필요한 기타시설은 노인복지관 내 다른 시설들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시설은, 김해시복지관 내에서 조성되어 있다. 이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2,0873.7m<sup>2</sup>의 면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로, 이중 급식시설(145.59m<sup>2</sup>)의 비율은 7.02%로 나타난다. 내부는 72명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식당(98m<sup>2</sup>)과 조리실(47.6m<sup>2</sup>)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필요시설은 김해시복지관 내부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와 같이 조사대상지의 사례조사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공동급식시설이 독립된 형태로 조성되지 않고 다른 시설과 연계되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급식시설의 경우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는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인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초기 조성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파악된다.
- 공동급식시설의 조사대상지 도면은 [그림 3-11]과 같다.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김해시
		
분류 : ■ 식당, ■ 주방, ■ 화장실		

그림 3-11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도면

### 3.3.3 운영주체 및 방식

- 공동급식시설 조사대상지 6개소에 대하여 운영주체 및 방식으로 정리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공동급식시설 운영주체 및 방식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이용현황(1일)	운영횟수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운영비결감방안	연간운영비(천원)	이용요금
강원 평창	약 470명	주 1~2회	종교단체	군	봉사자 지원	92,000	3,000원
경북 울진	약 20명	개별운영	마을	군	조별 취사	901	없음
전북 완주	약 20명	봄,가을 각40회	마을, 급식 조리자	군	자매결연 업체기부	1,411	없음
경남 김해	약 20명	주 6일	시	분권+ 시비	봉사자 지원	15,010	없음
경북 의성	약 30명	농한기 점심,저녁	마을	마을	없음	자체 조달	없음
경남 의령	약 90명	주 5회	민간	분권+도비 +군비	봉사자 지원	81,000	없음

- 강원도 평창군의 대관령 성결교회 나눔채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관령 성결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약 470명이 1회 3,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는 평창군에서 연간 9,200천원을 지원 받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 전라북도 완주군의 학동마을 공동급식소는 완주군 내 농번기철 마을 공동급식을 원하고 참여인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운영 주체는 마을, 급식조리자로 봄, 가을에 각 40회씩 1회 평균 약 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운영비는 완주군에서 조리자 인건비와 부식부로 연간 1,411천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족한 비용은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의 기부금과 마을자체 조달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
- 경상북도 의성군의 신평면 공동급식시설은, 일정규모(30가구) 이상의 마을회,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부녀회장을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농한기의 점심, 저녁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초기 조성 시 비용을 조달할 뿐, 별도의 운영비 조달 없이 마을 자체 비용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 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 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근거로 한다.
- 경상북도 울진군의 읍내 3리 서부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공동급식시설은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서부 경로당 노인회장을 주체로 하여 운영 중이다. 정해진 운영 시기나 횟수 제한 없이 마을에서 개별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약 2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운영비는 울진군에서 연 901천원과 주·부식(쌀, 김치)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부족한 비용은 마을회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평균연령 75~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주방 인력이 없어 조별 취사로 운영 중이며, 이용인원은 읍내리에서 가장 많으나 사용공간

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사 되었으며,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 경상남도 의령군의 의령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운영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80~95명 정도인데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무상급식 중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부식구입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연간 81,000천원(분권교부세 60,000천원, 도비 39,000천원, 군비 18,000천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자의 자원을 받고 있다.
- 경상남도 김해시의 김해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공동급식시설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해시 종합복지관에서 주체가 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일요일만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급식인원은 약 20명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1년에 급식비 15,650천원, 김장비 200천원, 총 15,850천원의 운영비를 분권 20%, 도비 1%, 시비 79%의 비율로 지원받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봉사단체와 봉사자 등을 급식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건복지 사업안내(4-3.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위의 각 시설별 운영주체 및 방식을 보면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우선 운영시기를 정해두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창군의 경우는 주 1~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의령군은 주 5회 운영 중이었다. 또한 김해시는 주 6회 운영하고 있었고, 의성군은 농한기에만 급식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완주군은 봄·가을 각 4회로 그 횟수를 정해두고 운영 중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용자의 수요와 운영비에 맞춰 운영날짜를 조절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시설초기 조성비용과 운영비를 자매결연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건립한 방법과 강원도 평창과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자원으로 인건비 절감이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

## 3.4 작은목욕탕

### 3.4.1 사업추진 방식

#### 1) 사업추진 방식

- 작은목욕탕 6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방식을 보면 경상남도 고성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합천군 5개소의 사업주체가 지자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작은목욕탕 특성상 시설의 건립시 필요한 기본 자본금이 필수로 필요하고, 개인이나 마을이 시설을 조성하고 적은 비용을 받으며 운영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시설의 조성방식 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고성군 5개소는 시설을 신축했고, 경상남도 고성군은 기존의 마을회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고령자공동이용시설인 공동생활 홈이나, 공동급식시설과는 달리 필요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 초기 조성비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내용을 비교·정리하면 [표3-15]과 같다.

표 3-15 작은목욕탕 사업추진 방식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사업주체	부지 / 건물 제공	조성방식
충북 단양	웰빙경로당 지원사업	군수	마을 / 마을	신축
전북 무주	안성면사무소 신축공사	군수	군 / 군	신축
전남 순천	농어촌형종합복지센터	시장	시 / 시	신축
전남 광양	옥곡 공중목욕장 신축공사	시장	마을 / 시	신축
경남 고성	농어촌 공동목욕탕 지원사업	마을	마을 / 마을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남 합천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군수	군 / 군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 충청북도 단양군의 평동 5리 다목적회관 내에서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은, 2008년에 단양군의 웰빙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군비 100,000천원을 지원받아, 경로당 인근의 마을 소유의 부지에 신축 하였으며, 매표읍 평동 5리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공동 찜질방 및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라북도 무주시의 안성면 작은목욕탕은, 건축가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성면사무소 신축사업으로 891,290천원을 지원받아 신축되어 안성면사무소의 관리 하에 안성면민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 전라남도 순천시의 해룡면 목욕탕은, 해룡 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에 순천시에서 부지 매입비 2,560,000천원, 건축비 388,000천원 등 총 2,172,000천원을 지원 받아 조성되었으며, 복지센터의 헬스클럽,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등과 연계하여 해룡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 공중목욕장은, 2013년에 광양시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옥곡면사무소 우측에 도비 150,000천원과, 시비 250,000천원을 지원받아 신축 되었으며, 옥곡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경상남도 고성군의 임포 새마을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일면 작은목욕탕은, 2012년~2016년까지 진행 중인 농어촌 공동목욕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군비 20,000천원을 지원받아 마을회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학림리 마을이장이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구리 작은목욕탕은, 합천군이 진행한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사업으로 2001년에 합천군에서 20,000천원을 지원받아, 쌍백 중앙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지회관 내에 조성 되어 운영 중이다.
- 위의 사례조사지 사업추진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 고성군을 제외한 5개소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지원비는 6개소 모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설의 특성상 초기 조성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 3.4.2 시설의 물리적 현황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중 작은목욕탕의 조사대상지 6개소의 물리적 현황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작은목욕탕 물리적 현황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법적용도	규모 (지상/ 지하)	구조	건축면적 (㎡)	탕 구비 현황	주요 설비	무장애 디자인 적용여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여부
충북 단양	단독주택	1층 /	블록조	99.0	찜질방1, 샤워실2, 탈의실2	전기 보일러	X	X
전남 광양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층 /	RC조	121.4	탕1 (남·녀 격일제)	태양광 온수 시스템	X	X
전북 무주	제1종 근린생활 시설	2층 / 1층	RC조	864 (목욕탕만 168.3)	탕1 (남·녀 격일제)	태양열 에너지	X	X
전남 순천	제1종 근린생활 시설	2층 /	RC조	708.7 (목욕탕만 약100)	탕1 (남·녀 격일제)	기름 보일러	○	X
경남 고성	제1종 근린생활 시설	2층 /	벽돌조	484.0	탕1 (남·녀 격일제)	기름 보일러	X	X
경남 함천	근린공공 시설	2층 /	벽돌조	484.0	남·녀 탕 분리	기름, 전기 보일러	○	X

- 충북 단양의 작은목욕탕은 블록조의 1층 건물인, 평동 5리의 다목적회관 건물 내에서 운영 중이다. 전체의 면적 99㎡중 목욕탕 시설은 24.9㎡로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탕 없이, 찜질방(801㎡)과 탈의실 2개소(8.4㎡) 그리고 샤워실 2개소(8.5㎡)로 구성되어 목욕탕보다는 찜질방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전라북도 무주시의 작은목욕탕은, RC조의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 인 안성면 사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면적 864㎡중 19.5%인 168.3㎡를 차지하고 있었다. 목욕탕 내부는 탕 1개소(40.2㎡), 탈의 및 휴게실(39.6㎡), 화장실(9㎡), 기타시설(11.2㎡)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탕을 남·녀 격일제로 주 5일 운영 중이었다. 또한 운영비 절감을 위한 설비시설로 태양열 에너지판을 이용한 설비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었다.

- 전라남도 순천시의 해룡면 목욕탕은 RC조의 2층 건물인 해룡 복지센터 내에 조성되어 있다. 복지센터 내에는 목욕탕 시설뿐 아니라 회의실, 운동실,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708.7㎡) 중 목욕탕은 107.8㎡로 15.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욕탕 내부는 탕 1개소(39.42㎡), 탈의실 2개소(47.7㎡), 샤워실 1개소(6.3㎡) 그리고 찜질방 2개소(14.4㎡)로 이루어져 있으나, 찜질방은 주 이용자가 고령의 노약자인 이유로 안전문제 등을 우려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탕과 샤워실은 남·녀로 번갈아 주 5일 운영되고 있었다.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 공중목욕장은, 옥곡면사무소 부지 내에 RC조의 1층 건물로 신축되어 운영 중이다. 시설의 전체면적은 121.4㎡로 내부는 탕 1개소(41.5㎡), 탈의실(18㎡), 화장실(8.8㎡)과 기타시설(53.1㎡)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녀 격일제로 주 3일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주요 설비 시스템으로 태양광 온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비 절감을 하고 있었다.
- 경상남도 고성군은 벽돌조로 된 2층 건물인 임포새마을회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되었으며 목욕탕시설이 있는 1층과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2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탕 1개소(12.8㎡), 탈의실(10.1㎡), 화장실(3.2㎡) 그리고 찜질방(6.4㎡)과 기타시설(14.4㎡)로 이루어져 있으며, 46.9㎡로 전체면적(60.5㎡)의 77.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루 약 30명의 사람들이 이용 중이며, 하나의 탕을 남·녀 교대로 이용 중이다.
-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구리 작은목욕탕은, 벽돌조의 2층 건물인 쌍백 중앙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지회관 내에서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중 목욕탕시설은 60.5㎡로 건물의 전체 면적(484㎡)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내부는 탕 2개소(40.8㎡), 찜질방 2개소(7.2㎡), 탈의실 2개소(26.1㎡) 그리고 화장실 2개소(2.7㎡)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개소씩 남·녀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6개소의 물리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실측도면은 [그림 3-1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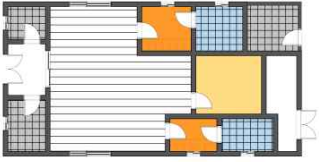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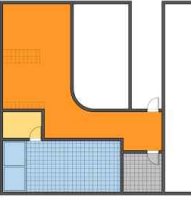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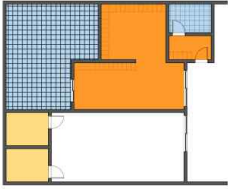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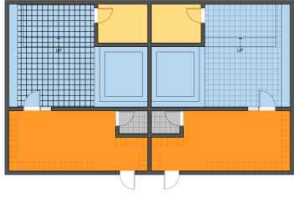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함천군
		
분류 : ■ 목욕탕, ■ 탈의실, ■ 찜질방, ■ 화장실		

그림 3-12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도면

### 3.4.3 운영주체 및 방식

-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에 대해 6개소의 운영주체 및 방식에 대해 정리하면 [표 3-17]과 같다.

표 3-17 작은목욕탕 운영주체 및 방식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이용현황 (1일)	운영기간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	운영비 절감방안	이용요금
충북 단양	-	11월~ 3월	부녀회	마을	부녀회운영 (인건비)	월 1만원
전북 무주	-	주 5일	면	면	태양열 에너지판	1,000원~ 1,500원
전남 순천	약 65명	주 5일	시	시+기부금	공익 근무요원 등 인력 사용	무료~ 2,000원
전남 광양	약 70명	주3일 9시~16시	시	시	태양광 온수시스템	무료~ 1,500원
경남 고성	약 30명	토요일 13시~18시	마을	군비+자체	부녀회운영 (인건비)	3,000원
경남 함천	약 60명	10월~4월 수,목요일 7시~18시	면	군	없음	1,000원~ 2,000원

- 충청북도 단양군의 작은목욕탕은, 평동5리 다목적회관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부녀회를 주체로 11월부터 3월까지 별도의 운영비 조달 없이 마을자체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이용요금은 월 1만원의 회원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녀회에서 직접 운영 중이다.
- 전라북도 무주군의 안성면은, 안성면사무소 내부에 위치하여 면이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5일동안 홀수날은 여자, 짝수날은 남자가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65세 이상은 1,000원, 일반은 1,500원이다. 운영비는 안성면에서 지원하는데 작년 한해 보험료 5,000천원, 유틸비 662,780천원, 인건비 223,510천원으로, 총 891,290천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다. 또한 안성면에서는 태양열 에너지판을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전라남도 순천시의 해룡면목욕탕은, 해룡복지센터 내에 위치하여 해룡면이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인데,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남·녀가 번갈아가며 목욕탕과 샤워실을 이용 하고 있었다. 또한 하루 평균 약 6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65세 이상 노인은 1,000원, 기초수급자·장애인은 무료, 일반은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비 60,842천원 중 순천시에서 약 50%정도(약2,5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비용은 목욕탕 이용비와 청년회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해룡면 목욕탕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과 자활근로자 등의 인력을 배치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었다.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 공중목욕장의 경우, 옥곡 보건지소가 주체가 되어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남자는 약 20명, 여자는 약 50~60명 정도이며, 일반인은 1,500원, 65세 이상은 1,000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의 이용요금은 받고 있다. 시설의 이용 가능한 시간은 화, 수요일(여자), 목요일(남자) 9시부터 16시까지이며, 1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목욕탕 운영을 위한 비용은 광양시의 지원과 보건소 예산, 그리고 이용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온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다.

- 경상남도 고성군의 작은목욕탕은, 하일면민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13시~18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0명이 이용 중이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1회 3,000원의 이용요금과 군비 연 1,000천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부녀회에서 자체방침을 근거로 운영 중이다.
-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구리 작은목욕탕은, 쌍백면민을 대상으로 면장이 주체가 되어 면에서 지정한 운영자가 운영 중이다. 시설은 10~4월까지 수, 목요일 7시~18시까지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약 60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2,000원, 소아 1,000원을 받고 있다. 운영비는 합천군에서 연 40,000천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를 면에서 지원하고 수익금이 생길 경우 면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 위의 작은목욕탕 조사대상지 6개소의 운영에 대해보면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보면 세가지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첫 번째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는 시설의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단양군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간 내에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와 비슷한 곳으로 합천군은 10월~4월 수·목요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매주 토요일에 오후에만 운영하였다. 또한 순천시와 무주군은 주 5일, 광양시는 주 3일만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수요와 운영비 등에 맞추어 운영기간을 조절하고 있었다.
- 운영비 절감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인건비의 절감이 있었는데, 단양군과 고성군에서는 마을 부녀회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순천시는 공익근무요원과 자활근로자를 두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었다.
- 그리고 목욕탕의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시설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양시와 무주군에서 태양광 온수시스템과, 태양열 에너지판을 설치하여 이용 중이었다.

## 3.5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소결

### 3.5.1 시설의 건축방식

- 사례조사를 실시한 공동시설 홈 12개소, 공동급식시설 6개소, 작은목욕탕 6개소의 조사대상지를 구분하여 고찰해보면 건축방식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알 수 있는데, 이중 각 시설별 건축방식으로 분류·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공동시설 홈의 조사대상지를 건축 유형별로 보면, 독립적으로 건립된 곳이 9개소, 다른 시설과 연계되어 조성된 곳은 3개소로, 다른시설과 연계되어 조성된 곳은 경로당과 연계되어 조성된 경기도 강화군의 사랑의 집, 마을회관과 연계되어 조성된 경기도 연천군의 카네이션 하우스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갈산마을 공동홈의 3개소로 나타나며, 다른시설과 연계되어 건립된 곳보다 독립적으로 건립된 곳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이를 건축방식으로 분류해 보면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뉘는데, 신축의 경우 경기도 강화군의 사랑의 집, 강원도 강릉시의 제비 1리 노인정, 경상북도 의성군의 운곡리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전라남도 영암군의 달뜨는 집 2호로 총 4개소 나타나며, 리모델링의 경우, 나머지 8개소로 66.7%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조사대상지 6개소의 건축유형은 다른시설의 내부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3개소와, 마을회관을 증축하여 운영하는 곳이 2개소,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1개소로 나타났다.
- 우선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곳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평창의 나눔채와 노인복지관 내부에서 운영 중인 경상남도 의령의 경로식당, 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 중인 경상남도 김해시의 무료급식으로, 전체 조사지의 5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하여 조성된 곳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서부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과, 전라북도 완주군의

학동마을 공동급식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성군의 심평면 공동급식시설은 기존의 마을회관에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시설을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 작은목욕탕을 건축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조사대상지 6개소 모두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충청북도 단양군의 작은목욕탕은 평동5리 다목적회관 내에 조성되었으며,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임포 새마을회관에서 운영 중이며,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구리 작은목욕탕의 경우, 복지회관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시의 해룡면 목욕탕은 면사무소와 인접하여 있는 복지회관 내부에서 운영 중이고,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공중목욕장의 경우 면사무소 부지에 신축 하였고, 전라북도 무주군의 안성면 작은목욕탕은 면사무소 내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시설들과 연계하며 건립될 경우 관리 및 운영이 수월하며 운영비(인건비, 관리비)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 이 시설들을 건축방식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신축의 경우 충청북도 단양군의 평동 5리 다목적회관, 전라남도 순천시의 해룡면 목욕탕,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곡 공중목욕장,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사무소의 4개소로 나타났고, 기존 마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인 곳은 경상남도 고성군의 임포 새마을회관,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구리 작은목욕탕으로 총 2개소이다. 위의 내용으로 공동생활 홈이나 공동급식시설처럼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목욕탕이라는 시설이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기능에 특수성을 갖는 시설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초기 조성비용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사례조사 대상지 24개소를 통해 위와 같이 시설의 건축방식에 대해 도출할 수 있었고, 각 시설의 세부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 3.5.2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세부유형별 장단점 분석

#### 1)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을 거주유형별로 구분하면 독립거주형, 독립취침형, 공동거주형, 공동취사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유형별 정의를 내리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동생활홈을 거주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독립거주형의 경우 가장 확실한 개인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유형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하고 서로 다른 기존의 생활습관에 대응 가능하며 성별 생활공간을 구분·분리하기 쉽기 때문에 한 시설 내에 남녀의 공동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주거비 및 난방비에 부담이 다소 크며, 개인 실의 개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초기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 독립침실형은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으로, 개인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느 정도 용이하고,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의 수요에 따른 밸런스를 확보가 가능했다. 또 관리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독립거주형 다음으로 주거비 및 난방비에 부담이 다소 있었고, 개인 실의 개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일뿐 아니라, 초기 건축비가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거주형의 경우 기존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과 유사한 유형으로 기존생활방식에 대한 친근하고,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이 밸런스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기존의 생활습관에 대응 가능하며, 초기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 공간에 4~5인이 공동으로 생활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취사 및 청소 등의 가사노동에 분배가 어려워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구성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따랐다.



표 3-18 공동생활홈 거주유형별 장단점

유형	장점	단점
독립 거주형	① 가장 확실한 개인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 ② 서로 다른 기존의 생활습관에 대응가능 ③ 성별 생활공간을 구분·분리하기 쉬움	① 주거비 및 난방비에 부담이 다소 큼 ② 개인 실의 개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임 ③ 초기 건축비가 많이 소요됨
독립 취침형	① 개인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느 정도 용이 ②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의 밸런스를 확보 ③ 관리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① 주거비 및 난방비에 부담이 다소 있음 ② 개인 실의 개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임 ③ 초기 건축비가 다소 소요됨
공동 거주형	① 기존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과 유사한 유형으로 기존생활방식에 대한 친근함이 있음 ②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이 밸런스를 확보함 서로 다른 기존의 생활습관에 대응가능 ③ 초기 건축비가 저렴	① 4~5인이 공동으로 생활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어려움 ② 취사 및 청소 등의 가사노동에 분배가 어려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③ 구성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하기가 다소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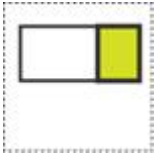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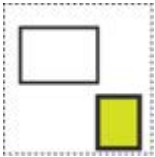
## 2)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목욕탕을 설치유형별로 내부형과 별동형으로 구분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의 설치 유형으로 볼 때, 공공시설 내에 급식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를 내부형이라 정의하였는데, 건축단가가 비교적 낮고 관리 동선이 짧아 이동이 편리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반면, 기존에 활용되던 공공시설 용도의 해당면적이 감소되고, 공공시설과 함께 이용하며 기존의 기능과 동선이 교차될 우려가 있고,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공공시설의 부지 내에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목욕탕이 별동으로 설치되 것을 별동형이라 정의하였는데, 기존 공공시설 용도의 해당면적 그대로 유지되고, 공공시설과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 가능하다. 또한 시설의 독립성 확보가 용이하고 시설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의 건축 단가 다소

높고, 관리 동선이 비교적 길어지며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상승된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 위와 같이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중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거주유형과 설치유형으로 비교하여 본 결과, 하나의 유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이용편의와 주거·영향·여건개선 등에 초점을 둔 계획을 기본으로 각 지역의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9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설치유형별 장단점

유형	형태	장점	단점
내부형 공공시설 내에 급식시설 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축단가가 비교적 낮음</li> <li>② 관리동선이 짧고 편리</li> <li>③ 유지관리비가 저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공공시설 용도의 해당면적이 감소</li> <li>② 공공시설의 동선과 교차될 우려</li> <li>③ 시설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움</li> </ul>
별동형 공공시설 부지내에 별동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공공시설 용도의 해당면적 그대로 유지</li> <li>② 공공시설과 동선이 명확히 분리</li> <li>③ 시설의 독립성 확보에 용이</li> <li>④ 시설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축단가가 다소 높음</li> <li>② 관리동선이 비교적 길</li> <li>③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상승</li> </ul>
비고	□ 기존 공공시설 ■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목욕탕		

## 제4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유형 및 모델제안

---

4.1 공동생활홈

4.2 공동급식시설

4.3 작은 목욕탕

4.4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적 복합화와 그 가능성



## 제4장\_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유형 및 모델제안

- 주거, 영양, 위생 등의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고령자 복지모델의 창출을 위하여 농촌 고령자의 정주여건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도입 및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밀착한 자조(自助), 협력(協力), 상생(相生)의 계획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여건 및 현황에 맞는 건축규모, 공간, 형태 등의 하드적인 건축계획과 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운영·관리계획의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각 농촌지역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인구감소 및 과소화의 의해 생겨난 빈 집, 빈 창고, 폐교, 빈 건물 등의 기존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농촌 경관을 관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이점(利點)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사례 중에서 건축계획 내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대상과 조사대상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적정 시설규모 및 기준과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1 공동생활홈

#### 4.1.1 기존 모범사례의 검토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개

념1)의 공동생활홈을 공동체적 거주방식2)에 초점을 두고 유형을 고찰해 보면 공동거주형, 독립침실형, 독립거주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각 유형은 향후 마을에서 공동생활홈으로서 활용 가능한 유형이라 판단되며, 현재 도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공동거주형, 독립침실형, 독립거주형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모범사례를 대상으로 분석·고찰함으로써 공동생활홈의 적정 시설규모 및 기준과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편, 분석대상의 선정기준은, 첫째, 현재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매우 활발히 운영·유지되고 있는 모범 사례, 둘째, 기존 마을 내의 공공시설 또는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 사례, 셋째, 고령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었거나, 환경보호 및 시설 유지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사례 등의 세 가지이다.
-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기존 사례의 선정개요를 정리하면 [표 4-1] 및 [그림 4-1]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사례는, 공동거주형의 월성 여자 경로당(전북 김제),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경남 의령),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경북 예천), 독립침실형의 갈산리 공동생활홈(전북 익산), 독립거주형의 월문리 공동생활홈(충북 괴산)의 총 5개소이다.
- 조사대상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축계획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포함시킨 것은, 독립침실형의 덕암리 공동생활홈(전남 완도), 장승리 공동생활홈(충남 청양), 독립거주형의 부흥리 공동생활홈(충북 괴산), 송면리 공동생활홈(충북 괴산) 총 4개소이다.

1) 본 연구에서는 “거주”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주거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침, 식사, 집회, 여가(또는 오락), 휴식 등의 거주기능을 의미하며, 공동생활홈은 이들 기능을 모두 포함한 주거시설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법 상의 용도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등이 해당된다.

2) 거주방식은 주로 취침공간, 취사공간, 위생공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표 4-1 공동생활 홈 사례검토 대상의 선정

유형	시설명	지역	운영시스템		건축방식	유지관리 및 고령자 배려		
			조례	규약		주요설비	무장애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공동 거주형	월성여자 경로당	전북 김제	○	○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전기온수기	△	X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경남 의령	○	○	리모델링	가스보일러	△	X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경북 예천	○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X
독립 침실형	갈산리 공동생활홈	전북 익산			리모델링	석유보일러	△	X
	덕암리 공동생활홈	전남 완도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
	장승리 공동생활홈	충남 청양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
독립 거주형	월문리 공동생활홈	충북 괴산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X
	부흥리 공동생활홈	충북 괴산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X
	송면리 공동생활홈	충북 괴산			리모델링	기름보일러	○	X



그림 4-1 공동생활 홈 사례검토 대상 외관사진

- 이상과 같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적정 시설 규모 및 기준과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종 선정한 곳은 공동거주형 3개소, 독립침실형 3개소, 독립거주형 3개소의 총 9개소이며, 상세한 건축 개요는 [표 4-2]와 같다.

표 4-2 공동생활 홈 사례개요

유형	지역	명칭 (주소)	거주 인원 (인)	건축개요				내부공간면적				
				대지 (㎡)	규모 (층)	건축면적 (㎡)	연면적 (㎡)	방 (㎡)	거실 (㎡)	주방 (㎡)	화장실 (㎡)	기타 (㎡)
공동 거주형	전북	월성 여자경로당 (김제시 월성동 230-1)	16 (여)	448	1	96.0	92.0	26.0	18.9	14.3	10.3	26.5
	경남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143-1)	6 (여)	193	1	112.6	101.3	34.5	42.5	12.2	12.2	11.2
	경북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162-3)	6 (남1여5)	390	1	110.5	99.7	39.8	21.6	12.8	7.4	28.9
독립 침실형	전북	갈산리 공동생활홈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64-5)	3 (남)	606	2	69.0	137.8	29.2	14.2	7.0	3.4	15.2
	전남	덕암리 공동생활홈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22)	5 (여)	762	2	155.5	218.9	57.0	20.1	14.2	13.9	50.3
	충남	장승리 공동생활홈 (청양군 청양읍 장승2리 280-1)	3 (여)	375	2	94.5	149.9	31.4	11.8	16.4	6.2	28.7
독립 거주형	충북	송면리 공동생활홈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27-5)	3 (남1여2)	424	1	101.7	96.9	69.7	-	-	10.3	21.7
	충북	월문리 공동생활홈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05)	3 (남1여2)	2,073	1	68.2	68.2	56.6	-	-	8.2	3.4
	충북	부흥리 공동생활홈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0-21)	3 (남1여2)	164	1	84.6	84.6	62.0	-	-	12.7	8.9

### 1) 월성여자경로당(공동거주형)

- 월성여자경로당은 김제시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2009년에 주민합의를 통하여 기존의 월성2리 마을회관을 여성전용의 공동생활 홈으로 개보수(리모델링)하여 활용한 사례로써, 현재 여성 고령자 16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 먼저,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월성2리 마을회가 담당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김제시에서 연간 경로당 지원비 3,500천원 및 공동생



활홈 운영지원비 3,000천원의 총 6,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는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친인척과 마을부녀회에서 충당하여 연간 총 6,500~1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성여자경로당의 입주자격은 월성2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여성의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의 부담금은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공동거주형으로, 방 1개소 및 거실로 나누어 16인이 공동으로 취침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면적(96㎡)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6.0㎡/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월성여자경로당 공동생활홈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월성 여자경로당		
	주 소	전북 김제시 월성동 230-1		
	거주인원	16인(여성)		
	거주유형	공동거주형		
	건축방식	기존 마을회관 개보수(리모델링)		
운영 형태	사업주체	월성2리 마을회		
	운영주체	월성2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경로당운영지원) 3,500천원/년 (공동생활홈지원) 3,000천원/년 (부녀회 및 기타) +a 총 6,500~10,000천원/년		김제시 + 마을회
	입주자부담	없음		
	입주자격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건축 개요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48.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96.0㎡		
	건폐율	21.4%(법정 40%)		
	연면적	92.0㎡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26.0	1.63	1
	거실	18.9	1.18	1
	주방	14.3	0.89	1
	화장실	10.3	0.64	2
	기타	26.5	1.65	
	계	96.0	6.0	

- 또한, 실제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방과 거실의 실 면적을 합산하면 44.9㎡에 이르고 있는데, 취침공간은 1인당 약 2.81㎡/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방의 경우 또한 실 면적이 14.3㎡로 1인당 0.89㎡/인을 점하고 있어 16인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하기에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창고, 외부 화장실, 계단 등의 총 면적은 26.5㎡로 1인당 1.65㎡/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화장실의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 각 1개소의 총 2개소가 있으나, 실제로 겨울철에는 내부 화장실만 이용되고 있어, 16인이 공동으로 1개소의 욕실 및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음으로,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마을회관의 평면구성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고, 건물 후면으로 화장실 및 창고, 그리고 보일러실 일부를 증축하였으며, 내부공간의 경우에는 도배 및 장판을 새롭게 설치한 정도로 보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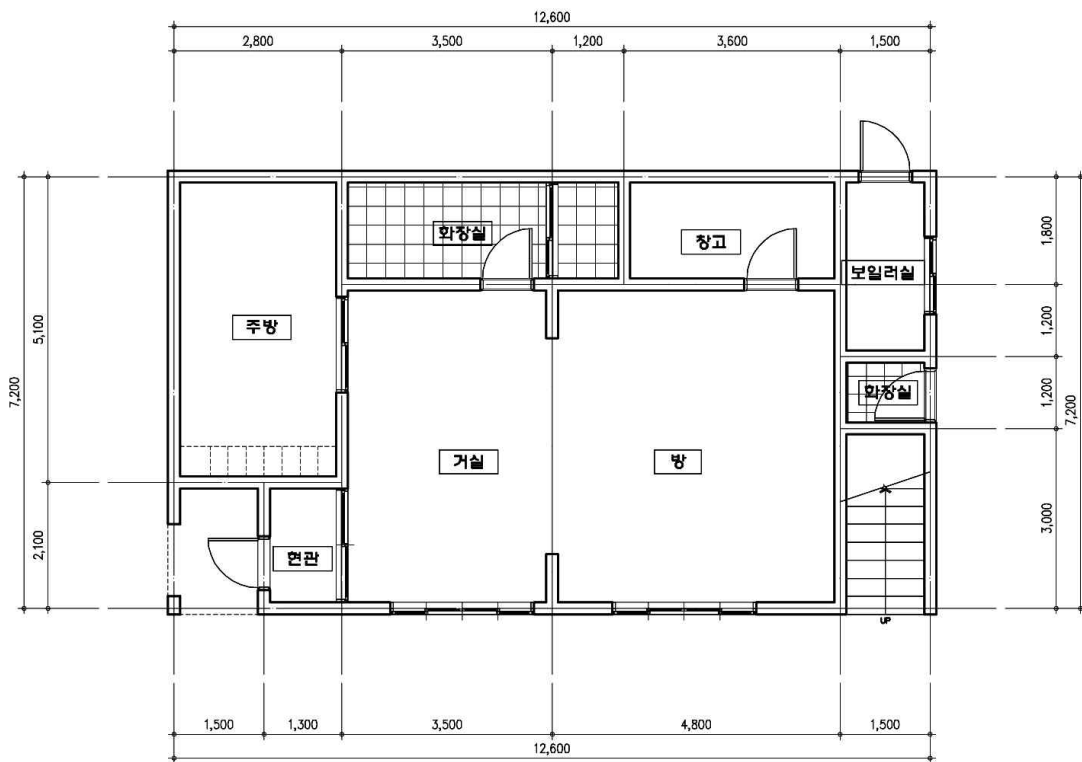


그림 4-2 월성여자경로당 평면구성

- 주로 침실로 이용되고 있는 방에는 [그림 4-2]와 같이 평소에 약 10~12명이 공동으로 취침을 하고 있고, 나머지 4~6명은 거실에서 취침을 하고 있다. 각자의 취침자리는 개인별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이 연령순서로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방에는 주방용품, 식료품 등을 위한 수납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바닥 한쪽에 각종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으며, 한 쪽 벽면에 개인수납장만 설치되었다.



그림 4-3 월성여자경로당의 내부 공간

- 화장실은 샤워장과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샤워장과 화장실 사이에는 문틀에 의한 단차가 형성되어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과 같이, 월성여자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독거가구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촌 독거노인의 공동체적 생활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매우 크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공동생활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16인이 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프라이버시 확보에 어려움
- 방과 거실의 취침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잠자리가 불편
- 거실에 TV가 한 대밖에 없어 채널 선택권에 제한이 있음
- 내부 화장실이 1개소로, 욕실 및 화장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 주방에 식료품 및 주방용품 등을 수납할 수납공간이 부족
- 구성원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 해결이 다소 어려움
- 공동생활함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과 다소 이질감을 형성

## 2)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공동거주형)

-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는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전북 김제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현재 여성 고령자 6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마쌍리 마을회가 담당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의령군에서 연간 공동생활홈 운영지원비 1,08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는 마을회 및 기타 수입에서 충당하여 연간 총 1,080~8,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령군 독

표 4-4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공동생활홈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주 소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143-1		
	거주인원	6인(여성)		
	거주유형	공동거주형		
	건축방식	기존 건물 이용(마을회관)		
운영 형태	사업주체	의령군		
	운영주체	마쌍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공동생활홈지원) 1,080천원/년 (마을회 및 기타) +a 총 1,080~8,000천원/년		의령군 + 마을회
건축 개요	입주자부담	없음		
	입주자격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89.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112.6㎡		
	건폐율	39%(법정 40%)		
	연면적	112.6㎡		
	용적율	39%(법정 100%)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34.5㎡	5.8㎡	2
	거실	42.5㎡	7.1㎡	1
	주방	12.2㎡	2.0㎡	1
	화장실	12.2㎡	2.0㎡	2
	기타	11.2㎡	1.9㎡	-
	계	112.6㎡	18.8㎡	

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에 있다.

-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공동거주형으로, 방 2개소에 3인씩 구분하여 총 6인이 공동으로 취침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면적(112.6㎡)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18.8㎡/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방의 면적을 합산하면 34.5㎡에 이르고 있는데, 취침공간은 1인당 약 5.8㎡/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규모로 파악된다.
- 주방의 실 면적은 12.2㎡로 1인당 2.0㎡/인을 점하고 있어 공동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창고, 외부 화장실, 계단 등의 총 면적은 23.4㎡로 1인당 3.9㎡/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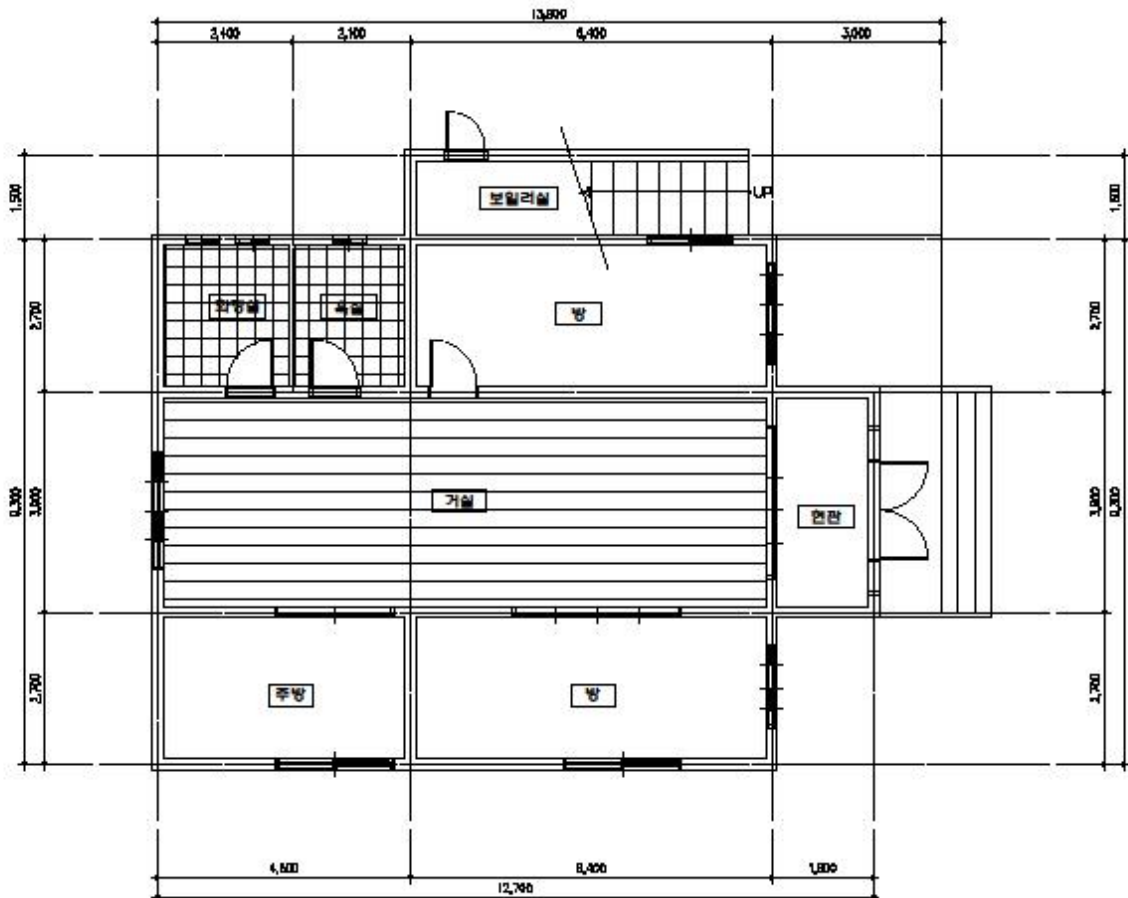


그림 4-4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평면구성



- 특히, 욕실 및 화장실의 경우에는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로 각 개소 당 6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거주자 인원의 화장실의 사용빈도를 고려하면 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현관에 들어서면 중앙에 거실이 위치하고 이 거실을 중심으로 양편에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마을회관의 평면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방 및 화장실 또한 예전 그대로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계획적 변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5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의 내부공간

- 생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낮 시간대에는 거실에서 담화를 나누거나, TV시청 등 각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녁 시간대에는 각자의 방에서 취침을 하고 있으며, 식사는 거실에서 상을 펴고 다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상기 외에 고령자의 생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각 실의 문틀 등에 의해 배리어프리가 이루어지고 전혀 있지 않음
  - 침실 내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물품 등을 한쪽 벽면에 쌓아두고 있음
  - 공동생활홈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과 다소 이질감을 형성
  - 욕실 및 화장실의 위생시설 등이 낙후

### 3)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공동거주형)

-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예천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사업이다. 이 시설은 낮에는 노인회관시설로 이용하고 밤에만 공동시설 홈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미호1리 마을회가 담당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로 예천군에서 경로당지원비 3,600천원/연 및 공동생활홈 운영지원비 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는 마을회 및 기타 수입에서 충당하여 연간 총 8,600~10,00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써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에 있다.
-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공동거주형으로, 방 2개소에 남자 1인, 여자 5인으로 구분하여 총 6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면적(110.5㎡)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18.4㎡/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방의 면적을 합산하면 39.8㎡에 이르고 있는데, 취침공간은 1인당 약 6.6㎡/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규모로 파악되나, 할아버지 방의 경우에는 1인이 거주하면서 16.4㎡이고, 할머니 방의 경우에는 5인이 거주하면서 23.4㎡(약 4.7㎡/인)를 사용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 간 1인당 사용면적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주방면적은 12.8㎡로 1인당 2.1㎡/인을 점하고 있어 공동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창고, 내부화장실, 외부화장실, 계단 등의 총 면적은 46.3㎡로 1인당 6.0㎡/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공동생활홈 개요

구분	항목	내용		비고
일반사항	명칭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주소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162-3		
	거주인원	6인(남성 1인, 여성 5인)		
	거주유형	공동거주형		
	건축방식	기존 건물 이용(노인회관)		
운영형태	사업주체	예천군		
	운영주체	미호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경로당지원) 3,600천원/연 (공동생활홈지원) 5,000천원/연 (마을회) +a 약 8,600~10,000천원/연		예천군 + 마을회
	입주자부담	없음		
	입주자격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건축개요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90.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110.5㎡		
	건폐율	28.3%(법정 40%)		
	연면적	99.7㎡		
실별면적	용적율	25.6(법정 100%)		
	실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소
	방	39.8㎡	6.6㎡	2
	거실	21.6㎡	3.7㎡	1
	주방	12.8㎡	2.1㎡	1
	화장실	7.4㎡	1.2㎡	2
	기타	28.9㎡	4.8㎡	-
계	110.5㎡	18.4㎡		

-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 각 1개소의 총 2개소가 있으나, 여자화장실은 내부에서 이용하고, 남자화장실은 외부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다.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욕실 및 화장실 겸용으로 5인이 약 4㎡ 크기의 1개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자화장실은 3.2㎡정도 크기의 화장실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음으로,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평면 형태의 마을회관으로, 주방과 거실을 따로 구획하지 않아 단차가 형성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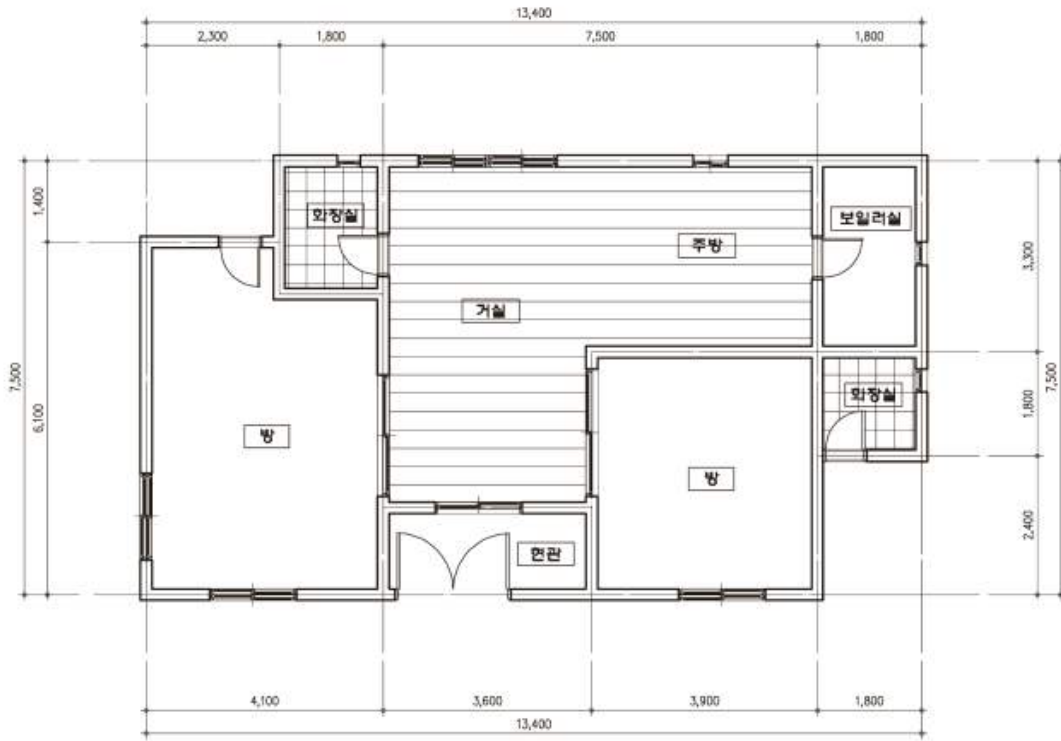


그림 4-6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평면구성



그림 4-7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의 내부공간

- 생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낮 시간대에는 마을의 고령자가 모여 노인회관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독거노인의 취침장소로 활용하는 복합적 기능을 도모하였다.
- 마을회관과 공동생활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거주자의 생활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되어 낮 시간대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음
  - 외부에 설치된 램프 외 내부공간에서 배리어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시설 내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방의 일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음
  - 욕실 및 화장실의 위생시설 등이 낙후

#### 4) 갈산리 공동생활홈(독립침실형)

- 갈산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조성되었는데,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활용하여 조성한 사례로, 1층의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고, 2층은 기존 용도인 경로당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익산시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없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주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회의 추천에 의해 익산시에서 선정하여 공동생활홈에 입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독립침실형으로, 방 3개소에 남자 3인이 각각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및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생활홈으로 사용되

고 있는 건축물 전체면적(62.6㎡)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20.9㎡/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3개 방의 면적은 총 29.2㎡로, 각 실의 취침공간은 1인당 약 9.7㎡/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매우 비좁은 규모로 파악되며, 더욱이 각 실에 불박이장(깊이: 800mm)이 설치되어 더욱 협소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실 및 주방은 각각 14.2㎡(4.7㎡/인)과 7㎡(2.3㎡/인)를 점하고 있어 총 21.2㎡(7㎡/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실은 좁고 긴 평면형태로 구성되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다수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 기타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총면적은 12.2㎡로 1인당 4.1㎡/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욕실 포함)의 경우에는 1개소를 3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빈도를 고려할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마을회관의 큰 방을 두 개의 작은 방으로 구획하고, 기존 작은 방과 더불어 총 3개의 독립된 개인침실로 리모델링하였다.

표 4-6 갈산리 공동생활 홈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갈산리 공동생활홈		
	주 소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64-5		
	거주인원	3인(남성)		
	거주유형	독립침실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운영 형태	사업주체	익산시		
	운영주체	익산시+실제 거주자		
	연간 운영비	(시지원) 냉난방비 일부 지원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익산시 + 거주자
	입주자부담	임대료는 없음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축 개요	법적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06㎡		
	지역·지구	계원관리지역		
	건물규모	2층		
	건축면적	62.6㎡		
	건폐율	15.6%(법정 40%)		
	연면적	137.8㎡		
	용적율	22.5%(법정 100%)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29.2㎡	9.7㎡	3
	거실	14.2㎡	4.7㎡	1
	주방	7㎡	2.3㎡	1
	화장실	3.4㎡	1.2㎡	1
	기타	8.8㎡	2.9㎡	-
	계	62.6㎡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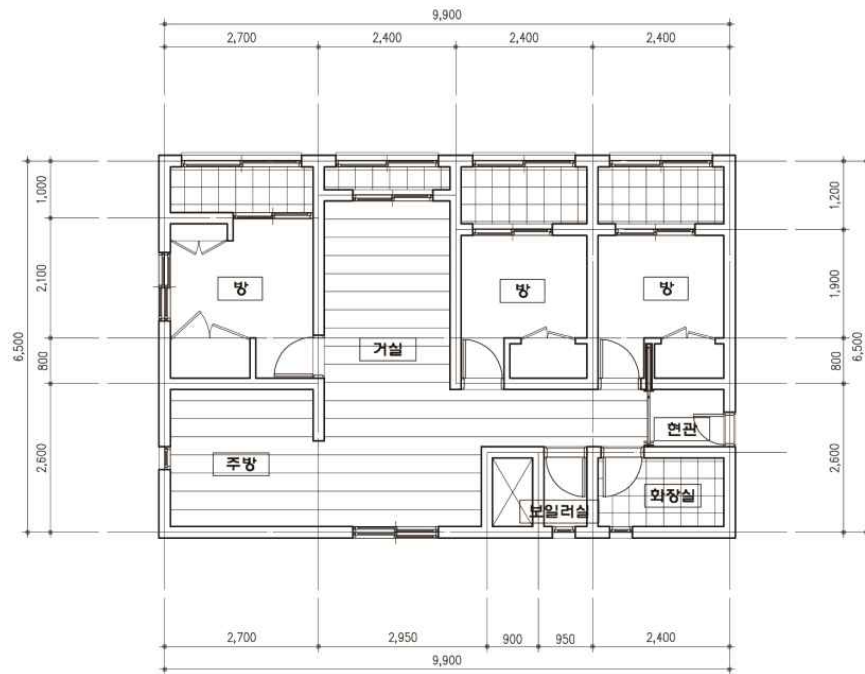


그림 4-8 갈산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거실  
및  
주방

방

그림 4-9 갈산리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

- 생활적 측면에서는, 개인 취침공간 외에 거실, 부엌, 화장실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지관리상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소수의 거주자 커뮤니티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독거노인의 공동체적 생활에 매우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기능설정이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보완할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개인 취침공간의 한쪽변이 1,900~2,100mm로 매우 짧아 취침 시 불편
  - 실제 취침공간의 면적이 4.6~5.7㎡으로 폐쇄감이 강함
  - 내부공간에서 문턱 등에 의해 배리어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5) 덕암리 공동생활홈(독립침실형)

- 덕암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등지복지재단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희망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2월에 구 고금면 보건지소를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로, 『공동체형 주거생활 홈』의 조성을 통한 고독감 해소로 건강한 삶의 영위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되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완도군은 시설관리를 위한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없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독립침실형으로 방 5개소에 여자 5인이 각각의 독립된 침실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침실에 개인전용의 개수대를 별도로 설치한 점이 특징적이다.
- 건축물 규모는 2층으로 1층 부분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155.5㎡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31.1㎡/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5개 방의 면적은 총 57.0㎡로, 각 실의 취침공간은 1인당 약 11.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다소 적절한 규모로 파악되며, 더욱이 각 실에 넓은 폭의 발코니 공간(폭원: 1,500mm)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로 열린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실 및 주방은 각각 34.3㎡(6.8㎡/인)를 점하고 있어 비교적 여유있는 크기이나, 거실이 약 20㎡로 다소 협소하게 구성되었다.

- 기타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총면적은 64.2㎡로 1인당 12.9㎡/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욕실 포함)의 경우에는 2개소를 5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빈도를 고려할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물 중앙부는 기존 보건의소의 실 구획을 크게 바꾸지 않고 약 3,000mm 모듈의 구획을 기본으로 개별 침실을 구획하였고, 좌우 양측의 돌출부는 화장실(욕실 포함)을 배치하여 내부 동선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표 4-7 덕암리 공동생활 홈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덕암리 공동생활홈		
	주 소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22		
	거주인원	5인(여성)		
	거주유형	독립침실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보건의소)		
운영 형태	사업주체	완도군+(재)다솜동지복지재단		
	운영주체	완도군+실제 거주자		
	연간 운영비	(군지원) 시설관리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거주자
	입주자부담	임대료 없음		
건축 개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762.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2층		
	건축면적	155.5㎡		
	건폐율	20.4%(법정 40%)		
	연면적	218.88㎡		
실별 면적	용적율	28.7%(법정 100%)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57.0㎡	11.4㎡	5
	거실	20.1㎡	4.0㎡	1
	주방	14.2㎡	2.8㎡	1
	화장실	13.9㎡	2.8㎡	2
	기타	50.3㎡	10.1㎡	-
계	155.5㎡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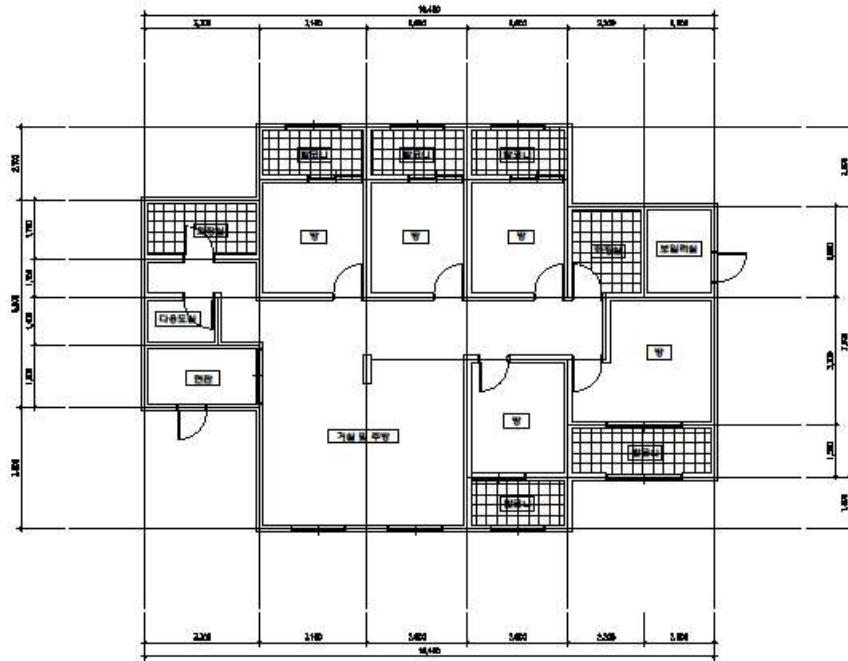


그림 4-10 덕암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그림 4-11 덕암리 공동생활홈 전경 및 내부공간

6) 장승리 공동생활홈(독립침실형)

- 장승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복지재단의 ‘2013년 에너지 효율형 농어촌 공동생활홈 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에 구 장승2리 마을회관의 1층 부분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로,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제공과 마을공동체 기능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여원의 예산으로 실시되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마을회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3만원 정도이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여 생활하고 있어, 공동생활홈의 운영비는 연간 총 1,08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장승리 공동생활 홈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장승리 공동생활홈		
	주 소	청양군 청양읍 장승2리 280-1		
	거주인원	3인(여성)		
	거주유형	독립침실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운영 형태	사업주체	(재)다솜복지재단		
	운영주체	장승2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마을지원) 시설 유지관리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1,080천원/년		마을회 + 거주자
	입주자부담	360천원/년(30천원/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축 개요	법적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75.0㎡		
	지역·지구	계원관리지역		
	건물규모	2층		
	건축면적	95.7㎡		
	건폐율	25.5%(법정 40%)		
	연면적	149.9㎡		
실별 면적	용적율	40%(법정 100%)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31.4㎡	10.5㎡	3
	거실	11.8㎡	3.9㎡	1
	주방	16.4㎡	5.4㎡	1
	화장실	6.2㎡	2.1㎡	1
	기타	28.7㎡	9.6㎡	-
계	94.5㎡	31.5㎡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여성전용의 독립침실형으로 방 3개소에 각각의 독립된 침실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 건축물 규모는 2층으로 1층 부분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149.9㎡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10.5㎡/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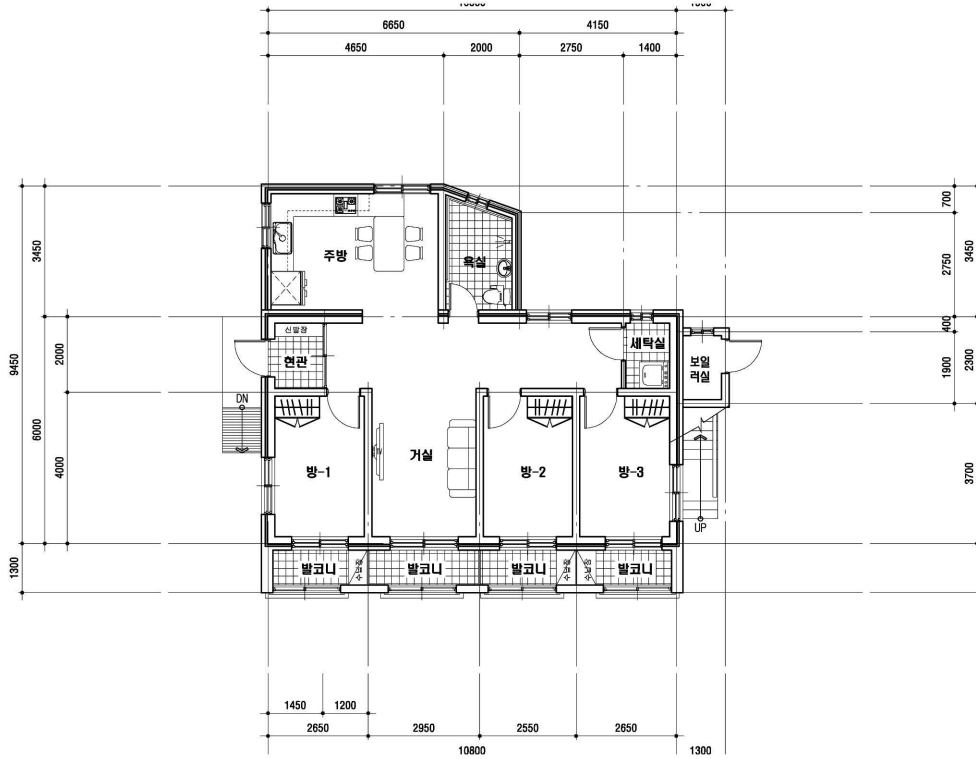


그림 4-11 장승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주방  
및  
거실

개실  
및  
복도

그림 4-13 장승리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

- 기타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총면적은 34.9㎡로 1인당 11.7㎡/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욕실 포함)의 경우에는 1개소를 3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상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물 중앙부의 동서방향으로 난 복도를 중심으로 남쪽에 방과 거실이 위치하고, 북쪽에 부엌과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개인 침실은 약 2,600mm 모듈을 기본으로 구획하였고, 거실은 비교적 넓은 3,000mm의 폭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실내공간에는 단차를 줄이거나 없애서 베리어 프리를 실현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

### 7) 월문리 공동생활홈(독립거주형)

표 4-9 월문리 공동생활 홈 개요

- 월문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조성되었다. 이 시설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에서 첫 번째로 시행한 시설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마을 소유의 구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총 3인의 독거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괴산군에서 연간 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120천원/연이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여 연간 총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월문리 공동생활홈		
	주 소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05		
	거주인원	3인(남성 1인, 여성 2인)		
	거주유형	독립거주형		
운영 형태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사업주체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운영주체	월문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마을지원) 시설관리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360천원/년	마을회 + 거주자
	입주자부담	120천원/년(10천원/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축 개요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24㎡		
	지역·지구	계환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68.2㎡		
	건폐율	16.1%(법정 40%)		
	연면적	68.2㎡		
실별 면적	용적율	16.1%(법정 100%)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56.6㎡	18.9㎡	3
	거실	-	-	-
	주방	-	-	-
	화장실	8.2㎡	2.7㎡	2
	기타	3.4㎡	1.1㎡	-
계	68.2	22.7㎡		

36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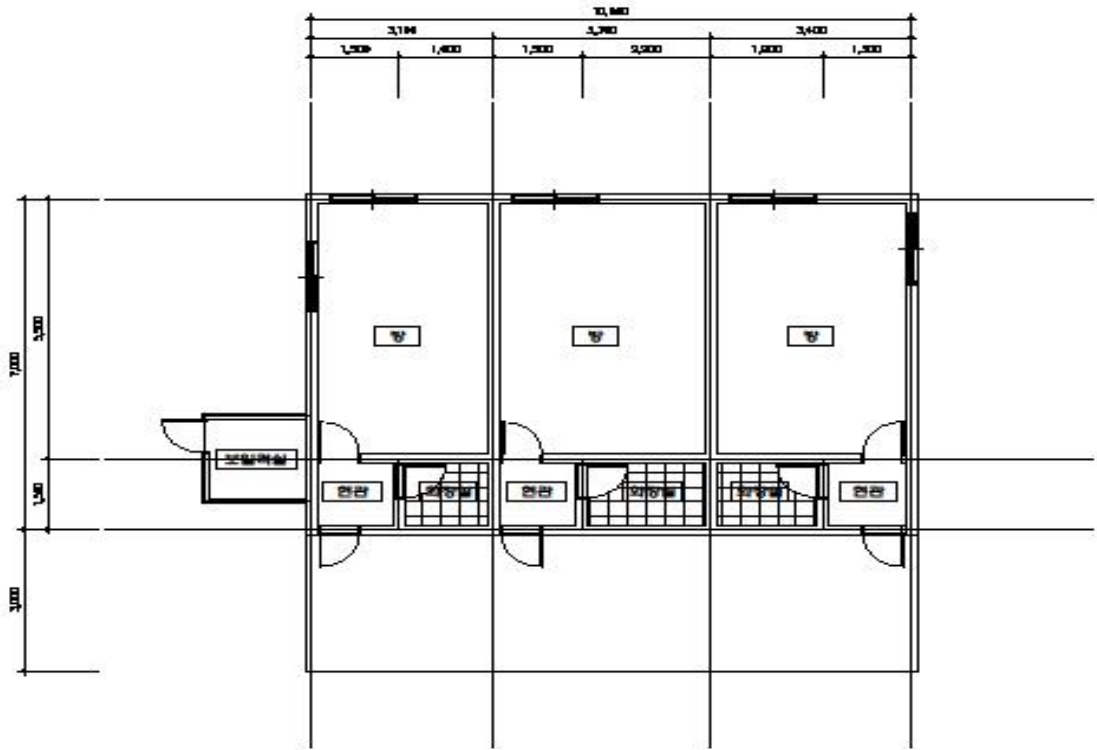


그림 4-14 월문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그림 4-15 월문리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여성전용의 독립거주형으로 방 3개소에 각각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남녀 각각 1인과 2인이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있다.
- 기존 1층 규모의 월문리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68.2㎡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22.7㎡/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0 부흥리 공동생활 홈 개요

-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등분하여 각각의 개별 주거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주거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개별주거공간의 폭원은 약 3,400mm 모듈을 기본으로 구획하였고, 주거공간의 전면에 폭원 약 2,700mm의 목재데크가 설치되었다.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부흥리 공동생활홈		
	주 소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0-21		
	거주인원	3인(남성 1인, 여성2인)		
	거주유형	독립거주형		
운영 형태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사업주체	괴산군+(재)다솜동지복지재단		
	운영주체	부흥5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시지원) 시설 유지관리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1,080천원/년	마을회 + 거주자
건축 개요	입주자부담	360천원/년(30천원/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164㎡		
실별 면적	지역·지구	계원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84.6㎡		
	건폐율	51.6(법정 40%)		
	연면적	84.6㎡		
	용적율	51.6%(법정 100%)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62㎡	20.7㎡	3
	거실	-	-	-
	주방	-	-	-
	화장실	12.7㎡	4.2㎡	3
	기타	8.9㎡	3㎡	-
	계	83.6㎡	27.9㎡	

8) 부흥리 공동생활홈(독립거주형)

- 부흥리 공동생활홈 역시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 11월에 조성되었다. 구 부흥5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현재 남자 1인 및 여자 2인의 총 3인이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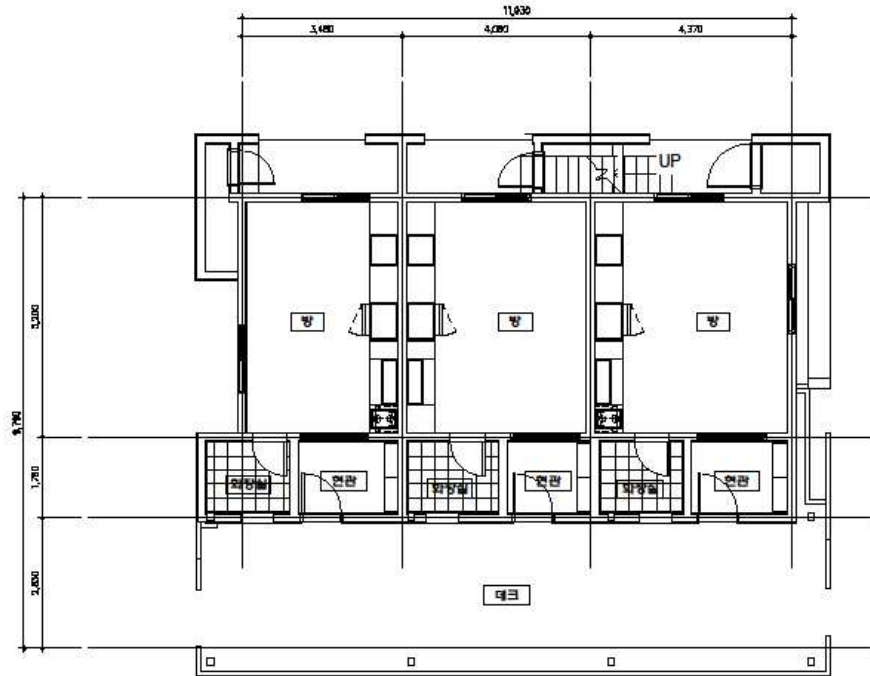


그림 4-16 부흥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그림 4-17 부흥리 공동생활홈의 내외부 공간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부흥리 마을회이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스스로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360천원/연으로, 연간 총 1,08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여성전용의 독립거주형으로 방 3개소에 각각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남녀 각각 1인과 2인이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있다.
- 기존 1층 규모의 부흥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62.0m<sup>2</sup>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20.7m<sup>2</sup>/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개의 개별 거주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주거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개별 거주공간의 폭원은 약 4,000mm 모듈을 기본으로 구획하였고, 주거공간의 전면에 폭원 약 3,500mm의 목재 데크가 설치된 점과 상부에 아크릴로 된 지붕을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 데크 공간의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이유로는 반 내부공간을 설치하여 각 개별 거주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때로는 곡식 또는 빨래 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 9) 송면리 공동생활홈(독립거주형)

- 송면리 공동생활홈 또한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조성되었다. 구 송면리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현재 3인(남자 1인, 여자 2인)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괴산군에서 보조난방으로 땀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240천원/연이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공동생활홈의 운영비는 연간 총 72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송면리 공동생활 홈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사항	명 칭	송면리 공동생활홈		
	주 소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27-5		
	거주인원	3인(남성 1인, 여성 2인)		
	거주유형	독립거주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운영형태	사업주체	괴산군+(재)다솜동지복지재단		
	운영주체	송면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군지원) 땀감(보조난방)지원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720천원/연	마을회 + 거주자
	입주자부담	240천원/연(20천원/월)		
건축개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24.0㎡		
	지역·지구	계원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101.7㎡		
	연면적	96.9㎡		
실별면적	용적율	22.9%(법정 100%)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69.7㎡	23.2㎡	3
	거실	-	-	-
	주방	-	-	-
	화장실	10.3㎡	3.4㎡	3
	기타	21.7㎡	7.3㎡	3
계	101.7㎡	33.9㎡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독립거주형으로 방 3개소에 각각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남녀 각각 1인과 2인이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있다.

- 기존 1층 규모의 송면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107.7㎡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33.9㎡/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분할하여 각각의 개별 주거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거주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욕실 포함)을 설치하였다. 개별 거주공간의 폭원은 기존 마을회관의 구조체에 맞추어 구획하였고, 건축물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폭원 약 2,700mm와 1,200mm의 목재데크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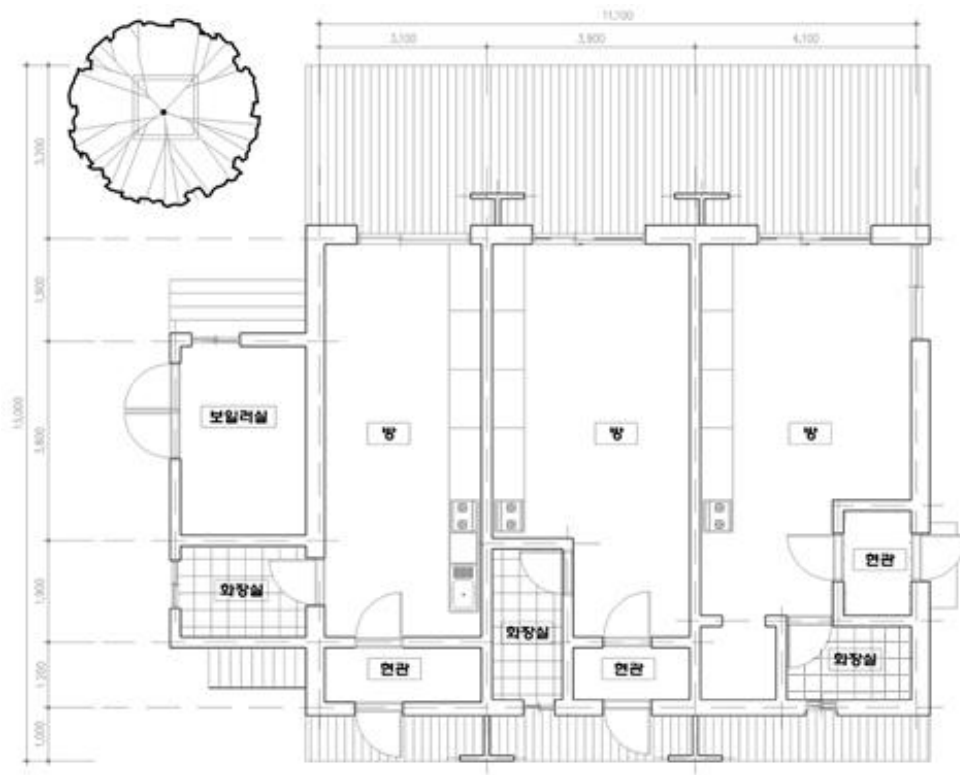


그림 4-18 송면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그림 4-19 송면리 공동생활홈의 내외부 공간



### 4.1.2 거주유형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및 기준

#### 1) 주생활 수준의 검토

- 주거시설의 1인당 거주면적은 적어도 10㎡/인은 되어야 하며, 표준으로는 16.5㎡/인이 요구되고 있다<sup>3)</sup>.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최저한도의 소요면적을 타다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sup>4)</sup>하고 있으며, 1인당 최저한도를 9~10.5㎡/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세계가족단체협회의 콜로뉴 기준을 살펴보면, 실의 수, 거주인원 수, 주거면적 당으로 구분하여 그 주생활 수준 및 건축면적의 기준을 제시[표4-12]하고 있으며, 1인당 거주면적에 대하여 평균 16㎡를 권장하고 있다.

표 4-12 세계가족단체협회의 콜로뉴 기준

실의 수	거주인원수	콜로뉴 기준(㎡)	
		주거 당	거주 1인당
3	3	56	18.7
	4	62	15.5
4	4	65	16.2
	5	75	15.0
	6	82	13.7
5	6	87	14.5
	7	94	13.4
	8	110	13.7
6	8	114	14.2

\* 건축계획(1988)의 26쪽 [표2-1] 인용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송바르 드로우 기준이 있는데, 주택 건축면적의 유효기준을 1인당 16㎡이상이면 개인적 혹은 가족적인 융통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계기준은 1인당 14㎡이하로 거주용 융통성 보장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리기준은 1인당 8㎡이하로 거주자의 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4-13 일반주택수준(영국)

가족의 수	실의 수	주택면적(㎡)	1인당면적(㎡)
4	2	69.5~74.0	17.4~18.5
5	3	83.5~98.0	16.7~19.6
6	3	91.0~95.5	15.2~15.9
6	4	93.0~161.0	15.5~26.8
7	4	102.0~109.0	14.6~15.6

\* 건축계획(1988)의 26쪽 [표2-2]를 보완

- 또한, 영국에서는 일반주택 수준에 대하여 [표4-13]과 같이 가족의 수에 따라서 실의 수 및 주택면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세

3) 이광로 외 4인, 건축계획, 문운당, 1988, 26쪽

4) 타다미는 900×1,800mm를 1조(疊)를 기준으로 하며, 1인당 3.0~3.5조를 최저한도의 소요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건축면적의 평균인 55% 정도로 하여 계산하면, 9~10.5㎡/인이 된다.

계가족단체협회 콜로뉴 기준과 프랑스의 송바르 드로우 기준에서 정한 1인당 1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평균 17~18㎡/인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전술한 모범사례에 대하여 거주유형별 내부공간면적 및 1인당 면적에 대하여 분석하면 [표4-14]와 같이 나타난다.

표 4-14 공동생활 홈 거주유형별 내부공간 면적의 검토

유형	지역	명칭 (주소)	거주 인원 (인)	내부공간의 면적						1인당 면적 (㎡)	검토내용 (송바르 드로우)	
				방 (㎡)	거실 (㎡)	주방 (㎡)	화장실 (㎡)	기타 (㎡)	계 (㎡)			
공동 거주형	전북	월성 여자경로당 (김제시 월성동 230-1)	16	26.0	18.9	14.3	10.3	26.5	96.0	6	병리기준 미달	
	경남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143-1)	6	34.5	42.5	12.2	12.2	11.2	112.6	18.8	유효기준	
	경북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162-3)	6	39.8	21.6	12.8	7.4	28.9	110.5	18.4	유효기준	
	소계			28	100.3	83	39.3	29.9	66.6	319.1	43.2	
	평균			9.3	33.4	27.7	13.1	10.0	22.2	106.4	14.4	
독립 침실형	전북	갈산리 공동생활홈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64-5)	3	29.2	14.2	7.0	3.4	15.2	69.0	23.0	유효기준 초과	
	전남	덕암리 공동생활홈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22)	5	57.0	20.1	14.2	13.9	50.3	155.5	31.1	유효기준 초과	
	충남	장승리 공동생활홈 (청양군 청양읍 장승2리 280-1)	3	31.4	11.8	16.4	6.2	28.7	94.5	31.5	유효기준 초과	
	소계			11	117.6	46.1	37.6	23.5	94.2	319	85.6	
	평균			4	39.2	15.4	12.5	7.8	31.4	106.3	28.5	
독립 거주형	충북	송면리 공동생활홈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27-5)	3	69.7	-	-	10.3	21.7	101.7	33.9	유효기준 초과	
	충북	월문리 공동생활홈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05)	3	56.6	-	-	8.2	3.4	68.2	22.7	유효기준 초과	
	충북	부흥리 공동생활홈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0-21)	3	62.0	-	-	12.7	8.9	84.6	28.2	유효기준 초과	
	소계			9	188.3	0	0	31.2	34	254.5	84.8	
	평균			3	62.8	0	0	10.4	11	84.8	28.3	
총계			45	344.2	129.1	76.9	71.9	185.9	808	185.4		
총계 평균			5.3	45.1	14.3	8.5	9.4	21.6	99.2	23.7		

- 1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수준을 검토해 보면,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최소기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독립침실형과 독립거주형의 경우에는 평균기준이거나 평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월성여자경로당의 경우에는 6㎡/인으로 송바르 드 로우의 병리기준(8㎡이하)에도 한참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거주유형에 따른 시설규모 분석

- 공동거주형은 병리기준 미달인 월성여자경로당의 사례를 제외하고, 유효기준에 해당하는 ‘평촌 독거노인공동체’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의 두 사례를 중심으로 6인 거주 기준의 공간규모에 대하여 내부공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방(공동취침)

- 방의 면적은 약 37~38㎡가 유효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6㎡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6㎡/인에는 가구 및 수납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4~5㎡/인이 유효면적이라고 판단된다.

### ② 거실

- 거실의 면적은 두 사례의 평균치인 약 32~34㎡의 범위를 유효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매우 협소하여 거주자간 커뮤니티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실면적의 유효기준에 관한 1인당 규모는 5.5㎡정도가 소요되어 방의 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주방

- 주방의 면적은 약 12㎡가 유효기준으로 판단되며, 1인당 규모는 2㎡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두 사례에서는 식사를 모두 거실에서 행하고 있어, 식당의 기능의 제외한 취사에만 필요한 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화장실

- 화장실의 면적은 약 10m<sup>2</sup> 정도가 유효기준으로 판단되며, 1인당 규모는 1~1.8m<sup>2</sup>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거주인원 수 대비 개소와 더욱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sup>5)</sup>.

⑤ 기타

- 주로, 현관, 보일러실, 창고 등의 면적에 해당되며, 특히 2층 규모일 경우 계단실의 면적도 산입된다. 기타 공간은 각 개소마다 설비방식, 수납공간에 대한 계획 등 필요 기능에 따라 다종·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약 20m<sup>2</sup> 정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독립침실형의 사례는 모두 유효기준 초과에 해당되어 거주에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 거주자 수인 4인 거주 기준의 공간규모를 내부 공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방(개별취침)

- 방의 면적은 약 39m<sup>2</sup>가 유효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9.8m<sup>2</sup>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 대부분이 수납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8~9m<sup>2</sup>/인이 유효면적이라고 판단된다.

② 거실

- 거실의 면적은 두 사례의 평균치인 약 15m<sup>2</sup>의 범위를 유효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실면적의 유효기준의 1인당 규모는 4m<sup>2</sup>정도가 소요되어 독립침실형 개인 침실 크기의 약 50%면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주방

- 주방의 면적은 약 12~13m<sup>2</sup>가 유효기준으로 판단되며, 1인당 규모는 3.5m<sup>2</sup>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거주형과 달리 식사는 주로 주방에 설치된 식탁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방공간을 계획할 때 취사 및 식사공간에

5) 화장실의 개소 수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다시 기술하고자 한다.

대한 고려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④ 화장실

- 화장실의 면적은 약 7.5㎡ 정도가 유효기준으로 판단되며, 1인당 규모는 공동거주형과 비슷한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 ⑤ 기타

- 기타 부분은 약 30㎡가 유효기준으로 보이며, 공동거주형과 독립거주형보다도 월등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립거주형의 사례 또한 독립침실형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효기준 초과에 해당되어 거주공간의 융통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 거주자 수인 3인 거주 기준의 공간규모를 내부 공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방(개별거주)

- 방의 면적은 약 60~65㎡가 유효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2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립침실형의 방(9.8㎡), 거실(4㎡), 주방(3.5㎡)에 대한 1인당 면적을 합산해 보면 17.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화장실

- 화장실의 면적은 10㎡가 유효기준으로 파악되며, 1인당 규모는 3.3㎡정도가 소요되어 공동거주형과 독립침실형 보다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기타

- 기타 면적은 약 10㎡가 유효기준으로 판단되며, 1인당 규모는 3㎡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작은 규모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상과 같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각 거주유형별 실의 규모 및 면적기준, 그리

고 거주인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분석·정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4-15]와 같다.

표 4-15 공동생활 홈 거주유형별 내부공간 면적구성의 검토

유형	실명	면적기준 (m <sup>2</sup> /인)	거주인원 수								비고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공동 거주형	방	6.0	18.9	25.2	31.5	36.0	39.9	45.6	51.3	57.0	6인 거주면적 기준
	거실	5.5	17.3	23.1	28.9	33.0	36.6	41.8	47.0	52.3	
	주방	2.0	6.3	8.4	10.5	12.0	13.3	15.2	17.1	19.0	
	화장실	1.8	5.7	7.6	9.5	10.8	12.0	13.7	15.4	17.1	
	기타	3.0	9.5	12.6	15.8	18.0	20.0	22.8	25.7	28.5	
	소계	18.3	57.7	76.9	96.2	109.8	121.8	139.1	156.5	173.9	
독립 침실형	방	9.8	30.9	39.2	46.6	55.9	65.2	74.5	83.8	93.1	4인 거주면적 기준
	거실	4.0	12.6	16.0	19.0	22.8	26.6	30.4	34.2	38.0	
	주방	3.5	11.0	14.0	16.6	20.0	23.3	26.6	29.9	33.3	
	화장실	1.8	5.7	7.2	8.6	10.3	12.0	13.7	15.4	17.1	
	기타	7.5	23.6	30.0	35.6	42.8	49.9	57.0	64.1	71.3	
	소계	26.6	83.8	106.4	126.4	151.8	177.0	202.2	227.4	252.8	
독립 거주형	방	20.0	60.0		95.0	114.0	133.0	152.0	171.0	190.0	3인 거주면적 기준
	화장실	3.3	9.9	12.5	15.7	18.8	21.9	25.1	28.2	31.4	
	기타	3	9.0	11.4	14.3	17.1	20.0	22.8	25.7	28.5	
	소계	26.3	78.9	99.9	125.0	149.9	174.9	199.9	224.9	249.9	

\* 각 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거주인원 수를 바탕으로 증감에 따라 콜로뉴 기준과 송바르 드로우 기준을 참조하여 5%의 증감의 보정율을 적용(기준 거주인원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1.05, 큰 경우에는 0.95를 적용)

■ : 각 유형별 면적산정 기준 거주인원

- 공동거주형은 3인 거주(19.2m<sup>2</sup>/인)에서 10인 거주(17.4m<sup>2</sup>/인)의 편차가 1.8m<sup>2</sup>/인이고, 독립침실형은 3인 거주(27.9m<sup>2</sup>/인)에서 10인 거주(25.3m<sup>2</sup>/인)의 편차가 2.6m<sup>2</sup>/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립거주형은 3인 거주(26.3m<sup>2</sup>/인)에서 10인 거주(24.9m<sup>2</sup>/인)의 편차가 1.4m<sup>2</sup>/인으로 파악되었다.
- 독립침실형(2.6m<sup>2</sup>/인)이 공동거주형(1.8m<sup>2</sup>/인)과 독립거주형(1.4m<sup>2</sup>/인)에 비하여 거주인원 구성에 따른 면적편차가 큰 이유는 거주인원 구성의 변화에 따라 면적변화가 크다는 의미이며, 즉,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융통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독립거주형(1.4m<sup>2</sup>/인)의 경우에 거주인원 구성변화에 따른 면적편차가 적은 이유는 원룸 형태의 개인공간으로 구성되어 공간적 융통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4.1.3 유희시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지침

- 마을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는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하지 않는 유희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둘째, 미관상 좋지 않은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토지 및 건축물 대부분이 마을자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활용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 넷째, 입지적으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인지성 및 접근성이 좋다는 점, 다섯째, 기존 시설의 장소성을 토대로 하여 거주자의 심리적 친밀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앞서 4.1.1 및 4.1.2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시설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의 기존 건물의 세부용도를 살펴보면, 구 마을회관(또는 노인회관)이 대부분이며, 구 보건지소 등도 있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농촌지역의 유희시설로서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대표적 건물용도를 정리해 보면, 마을회관(또는 노인회관), 보건지소, 창고(주로, 농협창고)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각 마을별로 건립된 마을회관은 65~100㎡(구 20~30평)의 면적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평면 형태는 중앙부에 거실과 주방을 두고 거실의 양쪽 편에 남녀를 각각 구분하여 방을 설치하는 소위 “단독주택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 보건지소는 90~150㎡(구 30~50평)의 규모가 존재하며 지역의 여건 등에 의해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평면 형태는 전면 폭이 넓은 장방형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건물 전면에 일정 이상의 마당을 확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창고의 경우에는 농협창고 또는 농산물 창고가 가장 일반적으로, 120~180㎡(구 40~60평)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창고는 3칸의

소규모형과 5칸의 대규모형의 두 종류가 일반적으로, 내부공간에 기둥 및 내력벽이 없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층고 또한 일정 높이(대부분 2개 층 정도인 5~6m)이상으로 중층으로 시설 및 공간계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설계지침은 마을회관(노인회관 포함), 보건지소, 창고의 세 가지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공간규모에 따른 거주유형별 활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건축물의 공간규모에 따른 거주유형별 활용가능성과 지침

용도	규모 (㎡)	거주 유형	적정 거주인원 수(■) 및 한계 거주인원 수(▒)											수용 인원 범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14인
마을 회관 (소형) ↑ 보건 지소 (중형) ↓ 창고 (대형)	60~70 (구 20평)	공동거주형	■	■	▒										3~5인
		독립침실형	■	▒											
		독립거주형	■												
	90~100 (구 30평)	공동거주형	■	■	▒										4~7인
		독립침실형	■	▒											
		독립거주형	■	■											
	110~120 (구 40평)	공동거주형	■	■	▒										5~9인
		독립침실형	■	▒											
		독립거주형	■	■											
140~150 (구 50평)	공동거주형	■	■	▒										6~11인	
	독립침실형	■	▒												
	독립거주형	■	■												
170~180 (구 60평)	공동거주형	■	■	▒										7~13인	
	독립침실형	■	▒												
	독립거주형	■	■												



- 한편, 이와는 별도로 [그림 4-19]와 같이 독일에는 케른 기준이 존재한다. 이 기준은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침실 수와 사람 수의 조합에 의해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등의 면적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특히 화장실의 개수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 F. H. P. 케른기준 (m<sup>2</sup>)

침실수/ 사람수									
거실겸 식당	13 5 18	13 5 18	13 5 18	14 6 20	16 6 22	16 6 22	17 7 24	18 8 26	18 8 26
부엌	6	7	7	7	8	8	8	8	8
주침실	14	14	14	14	14	14	14	14	14
제 1 부침실	8	12	8	12	12	12	12	12	12
제 2 부침실			8	8	12	8	12	12	12
제 3 부침실						8	8	12	8 8
세면·욕실, 화장실	4	4	4	4 1.2 1	4 1.2 1	4 1.2 1	4 1.2 1	4 1.2 1 1	4 1.2 1 1
창고	1.5	1.5	1.5	2	2	2	2.5	2.5	2.5
예비실								8	8

그림 4-20 I.F.H.P 케른 기준에 의한 주택 내부공간 면적구성

※ 건축계획(1998), 문운당, 29쪽에서 인용

- 이 기준에 의하면, 3~4인까지는 화장실 1개소로 사용 가능하며, 5~8인까지 화장실 2개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화장실은 4인 단위로 1개소가 적정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공동거주형에서 다수의 인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콜로뉴 기준과 송바르 드로우 기준에 의한 보정율(0.95)을 적용<sup>6)</sup>하여 화장실 개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사용인원이 4인단위로 증가할 때 마다, 화장실 개수를 5% 차감하여 적용

### 4.1.4 운영관리 방안

- 공동생활홈 총 9개소의 모범사례에 대하여 조사된 연간 운영비를 정리하면 [표4-17]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7 공동생활 홈 운영유지관리 현황

유형	지역	명칭 (주소)	거주인원 (인)	운영비*(천원/연)				1인당 운영비 (천원/연)	비고
				지자체	마을회	거주자	계		
공동 거주형	전북	월성 여자경로당	16	6,500	0	0	6,500	406	임대료 없음
	경남	평촌 독거노인 공동체	6	1,080	0	0	1,080	180	임대료 없음
	경북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6	8,600	0	0	8,600	1,433	임대료 없음
	평균		9.3	5,390	0	0	5,390	673	
독립 침실형	전북	갈산리 공동생활홈	3	500	0	0	500	167	임대료 없음
	전남	덕암리 공동생활홈	5	0	0	0	0	0	임대료 없음
	충남	장승리 공동생활홈	3	0	0	1,080	1,080	360	임대료 월 3만원
	평균		3.6	167	0	360	527	176	
독립 거주형	충북	송면리 공동생활홈	3	500	0	720	1,220	240	임대료 월 2만원
	충북	월문리 공동생활홈	3	0	0	360	360	120	임대료 월 1만원
	충북	부흥리 공동생활홈	3	0	0	1,080	1,080	360	임대료 월 3만원
	평균		3	167	0	720	887	296	

\*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운영비 산출을 위하여 거주자 친인척 등에 의해 부정기적인 지원금(+a)은 배제하였음

-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및 조례에 의거하여 경로당 지원비 및 공동생활홈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거주자의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거주형 세 곳의 평균 운영비에 대하여 거주인원 9.3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5,390천원/년이 소요되고 있어, 거주자 1인당 운영비는 673천원/연으로 나타났다.
- 독립침실형은 거주자 스스로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냉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거주자가 마을회에 임대료를 내어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침실형(3.6인 기준)의 평균 운영비를 살펴보면, 연간 527천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거주자 1인당 운영비는

176천원/연으로 파악되었다.

- 독립거주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임대비를 마을회에 지불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송면리의 경우만 난방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립거주형(3인 기준)의 평균 운영비를 살펴보면, 연간 887천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거주자 1인당 운영비는 296천원/연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의해 이루어진 형태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독립침실형 및 독립거주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거주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운영·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운영주체, 임대료, 임대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운영·유지비 절감방안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운영주체

- 마을에 설치되는 공동생활홈의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해당 마을회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자체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향후 해당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및 지원은 요원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 하여금 자생적인 공동생활이 아닌 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이다.

#### ② 임대료

- 마을회에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는 대부분이 독립침실형 또는 독립거주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임대료 금액을 살펴보면 1~3만원/월의 범위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임대료는 주로 건축물 장기수선금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외에도 건축물의 일반적인 관리 등은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조직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봉사화,

자치회 적립금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생활 공동체적 연대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임대료는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대상은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모범사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금액 범위인 1~3만원/월의 이내에서 징수하여 운영 및 유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③ 임대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 공동생활홈 입주자의 임대료에 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공동생활홈의 입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수급비에서 임대료를 자동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여 거주자가 따로 금융시설을 방문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불편을 없애고, 공동생활홈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 ④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한 방안

-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공동생활홈에서의 거주에 따른 각종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공동생활홈의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하여 공동생활홈을 설치할 때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을 도입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2 공동급식시설

### 4.2.1 모범사례의 시설규모 및 기준

- 공동급식시설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를 분석·검토하여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적정 시설규모 및 기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 완주군 학동마을 공동급식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학동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농촌체험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기존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유형으로 경로당과 화장실 부분을 연결,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학동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님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급식소의 운영비는 완주군에서 조리사 인건비와 부식비로 연간 14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족한 비용은 마을기금과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운영횟수는 봄과 가을에 지원금으로 40회씩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운영은 마을자체에서 공동으로 재료를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18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주 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71-24		
	사용인원	일일 20명 내외		
	건축유형	기존시설 일부 이용		
	건축방식	기존 경로당 일부 증축		
운영 형태	사업주체	학동마을 부녀회		
	운영주체	학동마을 부녀회		
	연간 운영비	농촌체험마을 국비지원 마을 자체 조달		마을회 + 국비
건축 개요	운영횟수	봄, 가을에 40회씩 고정 운영, 수시운영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83.0㎡		
	지역·지구	생산농지지역		
	건물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173.8㎡(급식시설 60.3㎡)		
	건폐율	46%		
	연면적	231.8㎡		
	용적율	61%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점유면적	
	식당	27.6㎡	약 3㎡/인	
	주방	10.8㎡		
	화장실	4.9㎡		
	기타	17㎡		
	계	60.3㎡		

-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는 기존 시설의 일부를 이용한 유형으로 기존 경로당 옆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이 급식소와 경로당 양쪽 내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급식소는 현관, 식당, 주방, 보일러실로 구분되어 있고, 일일 이용자를 20명으로 볼 때 급식소 전체면적(60.3㎡)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은 약 3㎡/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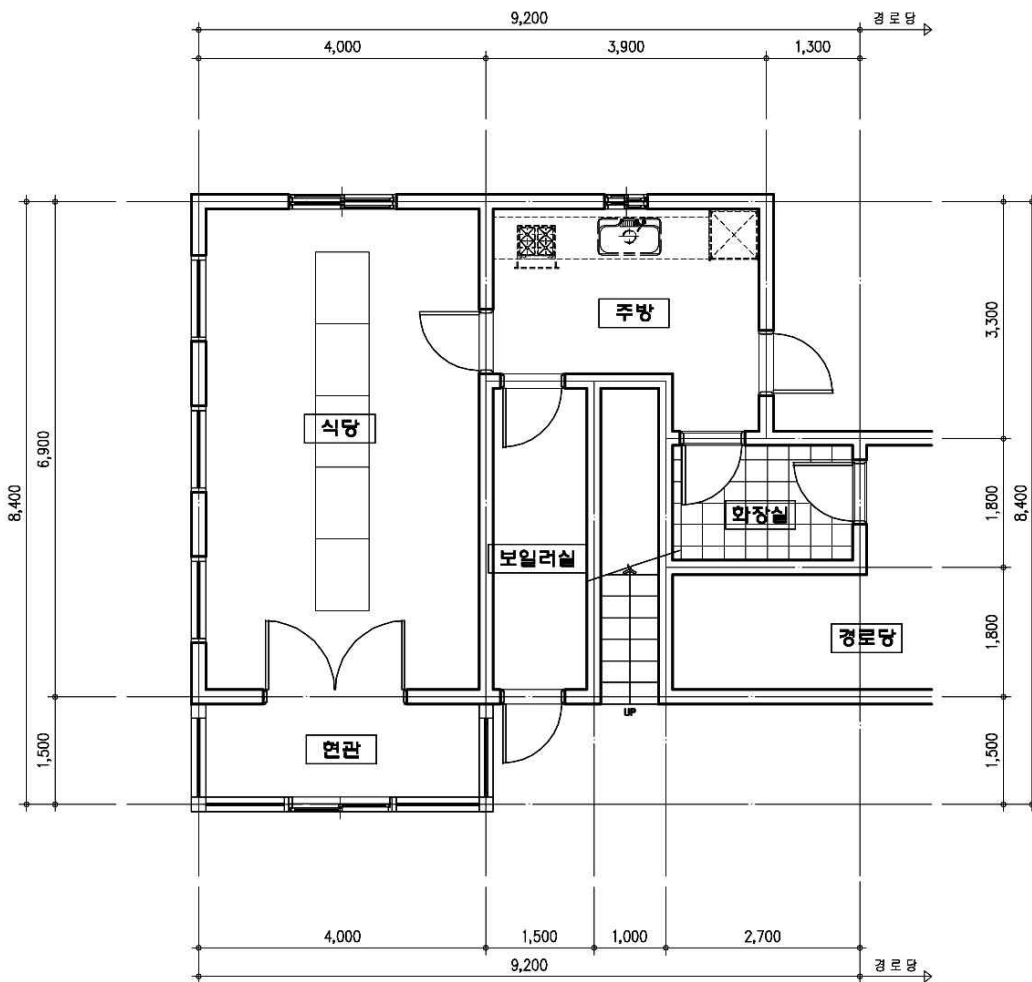


그림 4-21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평면구성

- 평면구성을 보면 현관, 식당, 주방,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천정은 서까래를 노출시키는 연등 천정마감을 하였다. 식당의 실면적은 27.6㎡로 1인당 약 1.4㎡/인을 점하고 있고, 화장실은 급식소와 경로당 두 곳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 내부에는 식탁이 4개가 있어 20명이 한 번에 식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4-22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내외부

#### 4.2.2 유지관리방안

-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바를 것으로 생각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시설에 인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3 작은 목욕탕

#### 4.3.1 모범사례의 시설규모 및 기준

- 작은 목욕탕은 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연계건물과 같은 대지에 설치하는 별도신축유형과 연계시설 없이 별도의 대지에 설치하는 신축유형,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유형과 기존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별도 신축유형에 속하는 옥곡 공중목욕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9 옥곡 공중목욕장 개요

- 옥곡 공중목욕장은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 광양시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도비 150,000천원과, 시비 250,000천원을 지원받아 신축되었다. 별도 신축유형으로 옥곡면 사무소와 같은 대지 내에 면사무소 옆에 증축되었다.
- 목욕장은 광양시 옥곡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남자는 약 20명, 여자는 약 50~60명 정도이며, 일반인은 1,500원, 65세 이상은 1,000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의 이용요금은 받고 있다. 시설의 이용 가능한 시간은 화, 수요일(여자), 목요일(남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1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12시~1시 점심시간은 이용할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옥곡공중목욕장		
	주 소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75-3		
	사용인원	70~80명		
	건축유형	별동신축		
	건축방식	옥곡면사무소 옆에 신축		
운영 형태	사업주체	광양시 옥곡 보건소		
	운영주체	광양시 옥곡 보건소		
	연간 운영비	광양시 지원금, 보건소 예산, 이용 요금으로 운영		
	운영횟수	주 3회		
건축 개요	법적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184.0㎡		
	지역·지구	근린상업지역		
	건물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121.4㎡(급식시설 60.3㎡)		
	건폐율	10.2%		
	연면적	121.4㎡		
	용적율	10.2%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점유면적	
	목욕장	41.5㎡	1.5㎡/인	
	샤워장	0㎡		
	탈의실	18㎡		
	화장실	8.9㎡		
	기타	53.0㎡		
	계	121.4㎡		



수 없다. 그 한 명은 보건소 직원으로 목욕장을 담당하고 있다. 목욕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광양시의 지원과 보건소 예산, 그리고 사용자 이용요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온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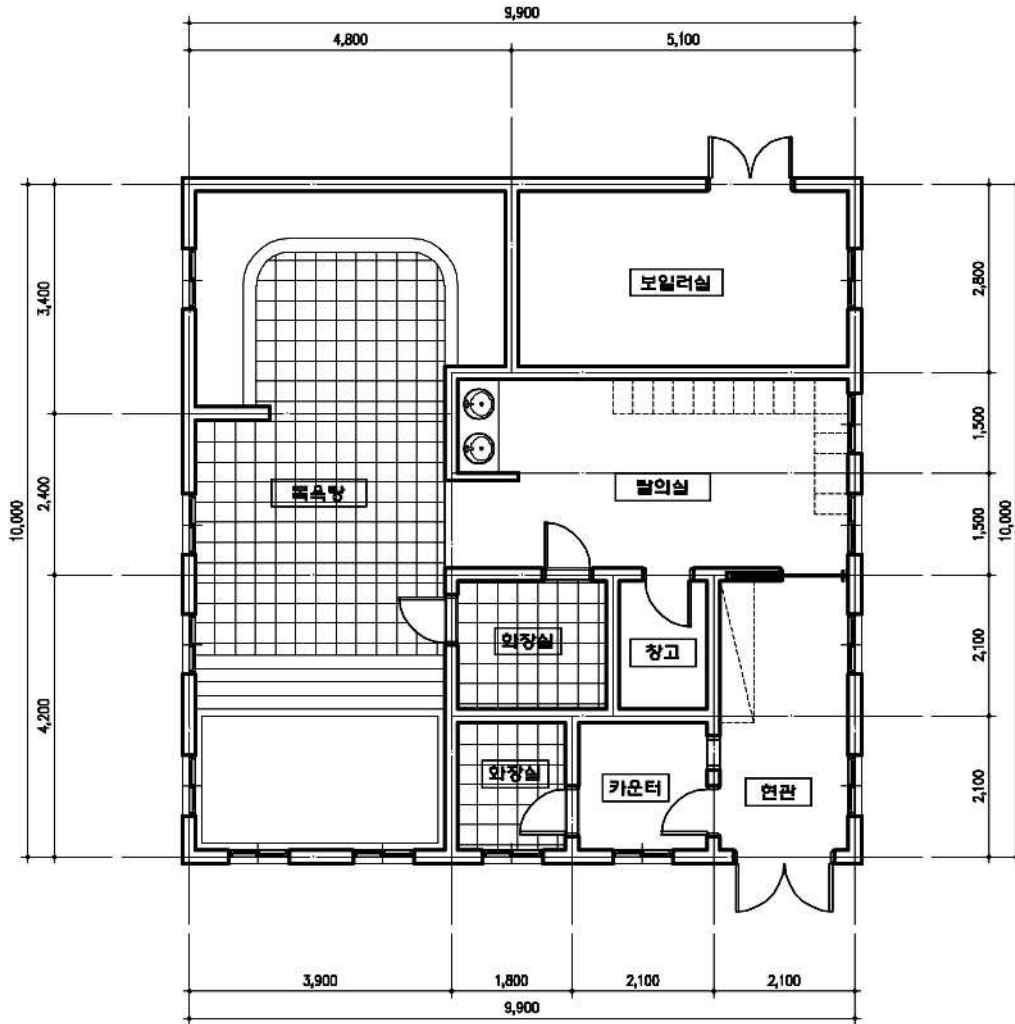


그림 4-23 옥곡 공중목욕장 평면구성

- 옥곡 공중목욕장은 목욕탕과 탈의실, 화장실, 카운터, 창고, 보일러실,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121.4㎡으로 1인당 점유면적은 1.5㎡/인 정도로 나타났다.
- 평면은 탕과 샤워시설이 있는 목욕탕과 탈의실, 화장실 2개소, 카운터, 현관, 보일러실이 있고, 남녀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격일제로 번갈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목욕탕의 실면적은 41.5㎡로 1인당 0.5㎡/인을 점하고

있고, 탈의실은 18㎡로 1인당 0.2㎡/인을 점하고 있다. 화장실 1개소는 목욕장 내부에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카운터 관리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4-24 옥곡 공중목욕장 내외부

#### 4.3.2 유지관리방안

- 작은 목욕탕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고찰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두고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작은 목욕탕의 운영비용은 공동생활홈 및 공동급

식시설과 비교할 때 마을회 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규약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생관리, 시설에 대한 장기 수선충당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서로 상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더불어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한다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4.4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적 복합화와 그 가능성

- 본 절에서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세 가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건립비용 절감,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기능적 복합화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적 복합화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복합형과 기존 공공시설과 인접하여 연계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4.1 복합형

- 먼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의 3가지 기능에 대하여 복합화가 가능한 조합유형을 살펴보면, [공동생활홈+급식시설]형, [공동생활홈+목욕탕]형, [공동급식시설+목욕탕]형, [공동생활홈+급식시설+목욕탕]형의 총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조합유형별로 특성을 고찰하면 [표 4-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먼저, [공동생활홈+급식시설]형은 고령자와 마을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공동급식시설에서 고령자와 마을주민이 함께 식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대감을 도모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다른 조합유형에 비하여 운영유지비가 적게 들고, 기타로 각종 마을행사 개최 시 이에 대한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 다음으로, [공동생활홈+목욕탕]형은 마을 내 고령자의 위생복지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고령자가 목욕탕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고령자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비교적 젊은 층의 마을주민이 고령자와 더불어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다소 크다.

표 4-20 복합형의 조합유형에 관한 특성고찰

구분	조합유형	입지	조합상의 특징	활용도
2기능 복합화	공동생활홈+급식시설	마을/중심지	① 고령자와 마을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 ② 고령자의 영양불균형 문제해결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③ 각종 마을행사 개최 시 대응에 유리 ④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적음	매우 높음
	공동생활홈+목욕탕	마을/중심지	① 고령자의 위생복지에 가장 적합 ② 고령자가 목욕탕 출입을 관리하는 등 소일거리 제공이 가능 ③ 고령자와 마을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불리 ④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큼	보통
	공동급식시설+목욕탕	마을/중심지	① 고령자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 ② 고령자의 영양불균형 문제와 위생문제 해결에 대응이 가능 ③ 시설에 상주하는 거주자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④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매우 큼	낮음
3기능 복합화	공동생활홈+급식시설 +목욕탕	중심지	① 시설의 건립을 위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큼 ②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가장 효율성이 높음 ③ 주로 중심지에 입지하게 되어 공공인력의 활용이 가능 ④ 다양한 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높음

- [공동급식시설+목욕탕]형은 마을주민의 여러 계층이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고령자의 영양불균형 문제와 위생문제 해결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설에 상주하는 거주자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생마을 내 고령자의 위생복지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매우 큰 단점이 있다.
-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능이 복합된 [공동생활홈+급식시설+목욕탕]형은 주로 읍면소재지 등의 중심지에 필요한 조합유형으로 인식되며, 시설건립을 위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가장 효율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인력의 활용에도 유리하며, 다양한 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이상과 같이 복합형의 조합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찰한 결과, 마을 단위에서는 [공동생활홈+급식시설]형이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읍면소재지 등의 중심지 단위에서는 [공동생활홈+급식시설+목욕탕]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4.4.2 연계형

- 연계형의 조합유형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를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로 변경하는 전용형과 기존 공공시설 부지에 증축을 통하여 연계시켜 운영하는 증축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4-19]과 같이 각각의 다양한 세부 형태가 나타난다.
- 먼저, 전용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전용양상에 따라 개별조성과 부분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조성은 기존 공공시설 전체를 공동이용시설로 전용하는 사례로, 시설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인지성이 강하며, 시설의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부분전용은 기존 공공시설 일부 면적을 공동이용시설로 전용하는 형태로, 시설의 건립단가가 비교적 낮은 이점이 있고, 시설물 관리동선이 짧아 유지관리에 편리하며, 유지관리비용 또한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연계형의 경우에는 크게 단일연계와 복합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연계는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한 가지 기능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이고, 복합연계는 두 가지 기능의 공동이용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형태이다.
- 단일연계의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에 인접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행정과 마을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관리대상이 명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매우 유리한 형태로 파악된다.
- 복합연계의 경우에는 4.4.1의 복합형과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기존 공공시설에 각종 공동이용시설을 복합화하여 마을 주민의 다양한 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 이상의 각 유형별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전용형의 경우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기존 건축물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건립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1 연계형의 유형구분과 특징

유형	구분	형태	유형상의 특징	비고
전용형	개별조성		<건물 전체를 전용(공동생활홈의 사례)> ① 시설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인지성이 매우 강함 ② 시설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에 유리 ③ 시설건립이 비교적 편리	유희시설의 활용
	부분전용		<건물 일부를 전용(공동생활홈의 사례)> ① 시설의 건립단가가 비교적 낮음 ② 관리동선이 짧고 편리하여 유지관리에 유리 ③ 유지관리비가 저렴	건립비용 절감효과
연계형	단일연계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증축(공동생활홈의 사례)> ① 시설의 건립단가가 보통 ② 관리동선이 짧고 편리하여 유지관리에 유리 ③ 유지관리비가 저렴	시설물 관리에 유리
			<공공시설과 별도로 증축(공동생활홈의 사례)> ① 시설의 건립단가가 증축하는 사례에 비하여 높음 ② 관리동선이 비교적 먼 반면, 이용자의 접근성에 유리 ③ 공공시설과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	
	복합연계		<공공시설+공동생활홈+급식시설> ① 행정과 마을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 ② 각종 고령자 복지해결에 유리 ③ 유지관리비가 저렴	각종 시설의 집적화로 운영효율 도모
			<공공시설+공동생활홈+목욕탕> ① 고령자의 위생복지에 가장 적합 ② 고령자가 목욕탕 출입을 관리하는 등 소일거리 제공이 가능 ③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다소 큼	
			<공공시설+공동급식시설+목욕탕> 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가능 ② 고령자가 목욕탕 출입을 관리하는 등 소일거리 제공이 가능 ③ 운영유지비에 부담이 매우 큼	
			<공공시설+공동생활홈+급식시설+목욕탕> ① 각종 고령자 복지해결에 가장 유리 ② 시설의 집적화를 통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가장 효율성이 높음 ③ 다양한 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법례 : □ 공공시설, ■ 공동생활홈, ■ 공동급식시설, ■ 작은목욕탕

- 또한, 연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일연계의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인접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매우 유리하며, 특히 복합연계의 경우에는 각종 공동이용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사료된다.

결\_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 결\_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로서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 시설, 공동목욕탕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정립과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고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또는 건축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유형별로 분석·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구결과를 종합한 후,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결과의 종합

- 첫째, 국내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면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거(거주기능)'와 '시설(케어기능)'로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원체제로 정비·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 밀착한 공동체적 생활 거주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 둘째, 공동생활홈은 크게 공동거주형, 독립침실형, 독립거주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동거주형

-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주로 마을회관을 활용한 사례로 기존 마을회관의 평면구성에서 큰 변화가 없고, 낮 시간대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및 수납공간 부족, 각 실의 단차형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부엌은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방의 일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시설이 많고, 다수의 인원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식사준비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

다. 그리고 정해진 식단으로 운영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치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 ② 독립침실형

- 독립침실형은 취침만을 개별적으로 하고 취사는 공동으로 하는 유형으로 개인 취침공간의 기본 점유면적을 무시한 채 구획되어 취침 시 불편을 주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내부공간에서 문턱 등 베리어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③ 독립거주형

- 독립거주형은 시설 내 취침과 취사 모두 개인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프라이버시 확보에 가장 유리한 한편, 거주자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거주형은 데크 및 공동거실과 같은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공동생활홈으로 가장 알맞은 유형으로 보인다.
-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공동생활홈은 각 실의 기본 거주면적을 제시하여 활동하기에 불편함 없는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성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 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필수사항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공동급식시설이 위치한 마을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식재료 조달, 조리, 식사준비 등에 대한 인력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신체적·체력적 한계가 있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향후, 과제로는 공동급식시설의 예상 급식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시설 규모, 설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해야 하고, 조리구역과 식사구역, 식자재 보관시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급식수요가 다를 것을 대비해 계획시 유동적 공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영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의 운영규칙을 수립하고, 급식(가사)도우미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새마을 부녀회, 복지관과 같은 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작은 목욕탕은 시설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징수하여 운영비 일부로 충당하고 있지만, 높은 운영비로 인해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으며, 특히 찜질방의 경우에도 연료비 부담 및 고령자 안전성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 또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적정규모로 설치하고, 남녀를 교대 운영, 운영기간 조정 및 공공근로 등을 적극 활용하며, 공기열원히트펌프,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찜질방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이용료 부과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 원활한 운영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 다섯째,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운영주체, 임대료, 임대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운영·유지비 절감방안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

- 마을에 설치되는 공동생활홈의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해당 마을회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거주자로 하여금 자생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 임대료는 1~3만원/월의 범위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임대료는 주로 건축물 장기수선금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건축물의 일반적인 관리 등은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조직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봉사와, 자치회 적립금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생활 공동체적 연대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③ 임대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 공동생활홈의 입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수급비에서 임대료를 자동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여 거주자가 따로 금융시설을 방문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불편을 없애고, 공동생활홈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④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한 방안

-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공동생활홈에서의 거주에 따른 각종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설비 등을 도입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체계

-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5-1]과 같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추진 전반의 절차에 관여하게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괄계획가는 ‘14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의 사업량을 고려할 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 정도로 구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조건은,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고령자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마을 또는 중심지로하고, 기존 시설(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 공동시설을 조성 또는 확충 가능한 대상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활용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대지 내에 여지를 활용하여 증축 또는 별동으로 조성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건축물의 활용에서는 기존 건축물(마을회관, 노인회관, 보건진료소, 창고, 빈집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가급적 공공시설과 인접하여 연계활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특히,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소형(마을회관), 중형(보건지소), 대형(창고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거주인원 및 한계 거주인원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소형의 경우(60~120㎡)에는 최소 3인에서 최대 7인까지가 적정 거주인원으로 파악되고, 중형의 경우(90~150㎡)에는 최소 4인~9인이며, 대형의 경우(140~180㎡)에는 최대 11인까지가 적정 거주인원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 목욕탕의 경우에는,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① 기존 공공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설치, ② 공공시설과 연접하여 증축, ③ 공공시설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곳에 설치 등의 세 가지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공동생활홈의 경우에는 SW(가사도우미·찾아가는 의료·교육·문화 등의 복지 서비스 및 공동생산을

위한 텃밭 조성·가내 수공업 등의 농가수익사업) 등이 결합된 유형에 가점 부여하고, 공동급식시설은 기존 주민공동식사 또는 급식봉사 등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가점 부여하며, 작은 목욕탕은 추진의지가 강하고 행정 및 예산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점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마을현황 및 여건, 재료 및 에너지,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기반의 운영 및 관리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지원 체계 및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적 협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공사 진행시에는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실시설계·감리와 시공에 대하여 일괄발주도 가능하게 하고, 가급적 실시설계·감리와 시공 등의 일련의 과정에 총괄계획가의 자문과 참여를 도모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행하고, 환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사업으로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충실하도록 반드시 베리어 프리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사업완료 후에는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우수 사례의 선정 및 평가를 위임하여 향후 공동이용시설의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며,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수 사례의 선정평가 시에는 유희시설의 활용에 대한 적정성, 운영조직의 적절성, 유지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점, 고령자 배려사항, 공동생활 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회의록]

[조사양식]

[조사진행과정]



## [참고문헌]

- 1) 박헌춘외 2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11, 1~8쪽
- 2) 오찬옥,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3호, 2008, 59~70쪽
- 3)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 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2권 2호(통권208호), 2006, 23~32쪽
- 4) 조원석외 1인, 독거노인용 경로 홈의 유형개발과 계획기준의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4호(통권47호), 2012, 27~35쪽
- 5) 노래원의 1인,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를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활성화 계획,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141~144쪽
- 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
- 10)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1호(통권48호), 2013, 21~28쪽
- 14) 조원석외 1인,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 제도와 경로 홈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45쪽
- 15) 노래원의 1인(2010),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를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활성화 계획,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제30권 제1호(통권 제54집), 2010, 27~28쪽
- 24)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2호(통권45호), 2012, 59~66쪽
- 3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2014
- 3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
- 35) 농림부, 농어촌연구원, 농촌임대주택의 도입방안 및 사업 운영체계 연구, 2007
- 36) 농림부, (사)문화도시연구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기존 농촌마을 정비방안 연구, 2007
- 37)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 시스템 및 주거개



- 선에 관한 연구( I ), 2005
- 38)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 시스템 및 주거 개선에 관한 연구, 2006
- 39)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임대주택의 도입방안 및 사업운영체계 연구, 2007
- 40)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2007
- 41)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매뉴얼 개발, 2007
- 43) (사)문화도시연구소, 인제군 서화면 독거노인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 2009
- 44) (사)문화도시연구소, 상남면 및 기린면 농촌형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연구 용역, 2010
- 45) 노래원 외 1인,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를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 시설 활성화 계획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 계 제30권 제1호(통권 제 54 집), 2010
- 46) 최병숙 외,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7권 제3호, 2006
- 47) 김대년 외, 저소득층의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 대한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4호, 2002
- 48) 광인숙,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공간의 대안들, 생활과학논집 제6권 5호, 2002
- 49) 김현진 외 1인,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7권 제3호, 2006
- 50) 김현진 외2인,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과 거주자의 생활 실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6권, 2005
- 51) 최명규, 도시-농촌 거주에 따른 한국노인의 주의식 차이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1호(통권 7호), 2000
- 52) 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제9호, 2000
- 53) 최명규, 농촌지역 내 노인 단독가구의 주거환경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2호(통권 8호), 2001.6
- 54) 박상희 외, 노인들의 위하여 급변하는 건축적 O.D.L과 I.D.L, 한국농촌건축학

- 회 논문집 제3권 2호(통권 8호), 2001.6
- 55) 안금순,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2
  - 56) 김연호, 독립생활을 위한 노인 주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3
  - 57) 이희승, 농촌지역 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2004
  - 58) 조부철, 농촌노인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 박사논문, 2007
  - 59) 박미지, 클러스터 구성방식을 통한 그룹형 노인주거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7
  - 60) 방점숙, 그룹홈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 석사논문, 2005
  - 61) 손관호, 치매노인 그룹 홈의 활성화 방안 연구, 신라대 석사논문, 2007
  - 62) 방승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지역 이용시설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8
  - 63) 유종국, 재가노인케어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7
  - 64) 강경숙, 농촌형 노인주간보호시설 모형개발, 원광대 석사논문, 2003
  - 65) 황지움, 자활노인용 코하우징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4
  - 66) 유정현, 장애인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 석사논문, 2009
  - 67) 제갈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Aging in Place 개념으로서의 노인용 코하우징 계획안, 가야대 석사논문, 2004
  - 68) 박준영, 권혁삼, 권성순,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4호(통권222호), 2007.4
  - 69) 박준영 외,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개발, 2006
  - 70) 구한나리 외, 치매노인을 위한 일본 그룹홈 현장 사례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1호, 2004.4
  - 71) 권오정 외,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6권 제5호(통권139호), 2000.5
  - 72) 김태완 외6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
  - 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철휘, "고령화시대 노인주거환경 조성방안, 2007.4
  - 74) 선우덕, 오지선, 『고령화심화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기능자립을 위한 보건 복지

- 지지원체계 구축방안』, 2008
- 75)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76) 통계청,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2008.12
- 77) 천진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디자인』, 2008.10
- 78) 집문당 유병선, 고령사회의 노인주거 복지과제, KSI한국학술정보(주), 2006
- 79)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10
- 80)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농촌지역의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시설 외 복합화 계획방향, 2010
- 81) 선우덕, 오지선, 『고령화심화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기능자립을 위한 보건 복지 지원체계 구축방안』, 2008
- 82) 마에다 다이사쿠, 일본의 노인주택정책, 주택보당과 주택정책, 1998
- 83)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2007
- 84)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 85) 박신영, 고령자주거 지원 법안 마련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 86) 박신영 외,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트러스트 조성과 활용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8
- 87) 박신영,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2004

[회의록]



## 회 의 록

<b>사 업 명</b>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b>회의일자</b>	2013년 11월 10일	
<b>회의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령자 이용시설의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개념 및 유형</li> <li>- 국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li> <li>- 국외 선행연구 및 정책</li> <li>- 국내외 연구 및 사례에 나타난 시사점</li> </ul> </li>   <li>2.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홈(721개소 대상)</li> <li>- 공동급식시설(338개소 대상)</li> <li>- 목욕탕(250개소 대상)</li> </ul> </li>   <li>3. 주요 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향 검토</li> <li>- 현장조사를 통하여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ul> </li> </ol>	
<b>사진</b>		



## 회 의 록

<b>사 업 명</b>	<b>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b>
<b>회의일자</b>	2013년 11월 17일
<b>회의내용</b>	<p>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유형 및 모델제안</p> <p style="padding-left: 20px;">- A형(개별형), B형(복합형-1), C형(복합형-3)</p> <p>4.1 A형(개별형/소형): <b>마을단위(50가구 이하)를 원칙으로 함</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공동주택용 / 공동급식시설 / 공동목욕탕을 각각 개별로 설치(마을단위)</p> <p>→ 공동주택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 A형(1개 규모/3~4실)~AA형(2개 규모/6~8실)</li> <li>• 규모 : 100㎡ 내외(방 3개를 기준) / A(단위)</li> <li>• 입지 : 마을회관(노인회관) 또는 보건진료소와 인접</li> </ul> <p>→ 건축방식 : 신축형 / 리모델링형</p> </div> <p>4.2 B형(복합형-2/중형): <b>마을(50가구 이상) 또는 읍·면소재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공동주택용,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 중 2개 기능을 복합화(마을/읍·면소재지)</p> <p>→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형 : 공동주택용(A형~AAA형)+공동급식시설</li> <li>• B2형 : 공동주택용(A형~AAA형)+공동목욕탕</li> <li>• B3형 : 공동급식시설+공동목욕탕</li> </ul> <p>→ 규모 : 공동주택용은 개별형을 따르되, 나머지는 예산 내에서 조정가능</p> <p>→ 입지 : 마을회관(노인회관) / 읍·면사무소 / 보건진료소와 인접</p> <p>→ 건축방식 : 신축형 / 리모델링형(Advantage)</p> </div> <p>4.3 C형(복합형-3/대형): <b>읍·면소재지를 원칙으로 함</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공동주택용,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의 3개 기능을 복합화(읍·면소재지)</p> <p>→ 유형 : 공동주택용(AA형~AAA형)+공동급식시설+공동목욕탕</p> <p>→ 규모 : 공동주택용은 개별형을 따르되, 나머지는 예산 내에서 조정가능</p> <p>→ 입지 :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진료소와 인접</p> <p>→ 건축방식 : 신축형 / 리모델링형(Advantage)</p> </div> <p>2. 주요 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필요성 토의</li> <li>- 사업진행 후, 환류방안 토의(총괄계획가에게 의뢰)</li> <li>- 3가지 기능을 복합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li> </ul>

## 회 의 록



<b>사 업 명</b>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b>회의일자</b>	2013년 11월 18일	
<b>회의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부추진방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흥 선정에 대한 기본조건 제시</li> <li>- 가점항목 제시</li> </ul> </li>   <li>2. 추진방향에 따른 대상지 선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 검토, 대상지여건 분석, 주민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선정하고 주민자치 기반 형성, 유희시설물 리모델링, 사후관리를 위한 체제여건 대안제시</li> </ul> </li>   <li>3. 주요 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진행과정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토의</li> <li>- 모범사례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토의</li> </ul> </li> </ol>	
<b>사진</b>		

## 회 의 록

사 업 명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회의일자	2013년 12월 04일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유형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마을, 중심지로 크게 나눈 후, 마을에서는 개별형, 연계형, 복합형으로 나누어 분석</li> <li>- 중심지에서는 연계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분석</li> </ul> </li> <li>2. S/W의 결합과 연계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문화, 여가, 급식 등 산재되어 지원되는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서비스 수요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li> </ul> </li> <li>3. 무장애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으로 고령자공동시설에 대한 모델제시</li> </ol>	
사진		



## 회 의 록

<b>사 업 명</b>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b>회의일자</b>	2013년 12월 23일	
<b>회의내용</b>	<p>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실태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현황의 유형별 분류 및 그래프 작성</li> <li>- 운영주체 및 방식의 유형과 특성파악</li> <li>- 운영실태조사</li> </ul> <p>2. 보고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이용시설 중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목욕탕에 대한 내용 기술(사례조사, 개념)</li> <li>- 고령자 이용시설의 현황과 과제</li> <li>-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li> <li>-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의 유형 및 모델제안</li> <li>-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li> </ul>	
<b>사진</b>		

[조사양식]

[조사양식 1]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모델연구 설문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 실태조사총괄표

문서번호①

V. 1.0

연	번	2013 -
---	---	--------

조사유형	예비 <input type="checkbox"/>	분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
------	-----------------------------	----------------------------	-----------------------------

지자체명	
주 소	

조사일시	
------	--

조 사 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순번	시설명	운영 여부	
		개방	폐쇄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관련 자료현황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MEMO

## 운영실태조사표

시설명 : \_\_\_\_\_

문서번호②

총괄표	I.사업 주체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마을회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I.부지소유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름(공유지) <input type="checkbox"/>	
	III.건물소유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V.사업지원비	국비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국비+지자체비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V.운영 주체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복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VI.거주 유형	원룸형 <input type="checkbox"/>	개별거주형 <input type="checkbox"/>	공동거주형 <input type="checkbox"/>	공동취사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VII.운영비조달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공동 <input type="checkbox"/>	마을자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VIII.지원근거	노인복지법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시책사업 <input type="checkbox"/>	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체규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문서번호③

I.사업주체	지자체	( )도 ( )시 ( )군 ( )과	연락처 ( )
	마을회	경로당 노인회 <input type="checkbox"/> 부녀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민간	사랑의 집 <input type="checkbox"/> (주)문화도시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사)한국농촌건축학회 <input type="checkbox"/> (재)다솜동지복지재단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한국 건설협회 )	
	기타	( )	

문서번호④

II.부지소유	지자체	( )도 ( )시 ( )군 ( )과
	마을회	마을 법인 <input type="checkbox"/> 노인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개인	성명 : _____ / 주소 또는 연락처 ( )
	기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문서번호⑤

III. 건물소유	지자체	( )도 ( )시 ( )군 ( )과
	마을회	마을 법인 <input type="checkbox"/> 노인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개인	( )
	기타	( )

문서번호⑥

IV. 사업지원비	국비	금액 ( )	지자체	금액 ( )
	국비+지자체	금액 ( ) + ( )		
	지자체+민간	금액 ( ) + ( )		
	기타	( )		

문서번호⑦

V. 운영주체	지자체	( )도 ( )시 ( )군 ( )과
	마을회	경로당 노인회 <input type="checkbox"/> 부녀회 <input type="checkbox"/> 이장 <input type="checkbox"/> 노인회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민간위탁	지구촌사회복지재단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회장 <input type="checkbox"/> 대한노인회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 ) 기타 ( )
	거주자	( )
	기타	( )

문서번호⑧

VII. 운영비조달	지자체	
	공동	
	마을자체	
	거주자	월세: / 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기타	월세: / 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문서번호⑩

스케치			
현장 사진			



4. '농어촌 공공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정비(시·군)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예산지원②운영관리 지원③운영방안 및 지침 마련④공동체 홈의 모델개발⑤기타( )

5. 농어촌 공공생활홈의 입주(정책)대상자는 누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기초생활수급계층 중 무주택자 ②기초생활수급계층 중 불량주택 거주자(유주택자 포함)  
 ③차상위계층 이상 무주택자 ④차상위계층 이상 불량주택 거주자(유주택자 포함)  
 ⑤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⑥기타( )

6.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총 사업비의 30% ②총 사업비의 50% ③총 사업비의 70% ④기타( )

7. 농어촌 공공생활 홈의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지방정부(시·군)소재지 ②읍·면 소재지 ③마을단위④기타()

■ 시군 주거 개선사업

1. 현재 귀 시·군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공공생활홈 조성 시범사업, 예 : 사랑의 집지어 주기 사업)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기타( )

2. 현재 귀 시·군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명	구체적 내용(지원비용 포함)	지원처(√표시)	
		지자체 독자수행	중앙정부 지원

3.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개선 사업이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부족하다 ②부족하다 ③보통이다 ④충분하다 ⑤매우 충분하다



4. 귀 시·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_\_\_\_\_

5. 중앙 정부(농림수산식품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_\_\_\_\_

■ 일반사항

1. 귀하의 담당업무는?

①복지전체 ②노인복지 ③건축 및 주택관련 업무 ④기타()

2.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_\_\_\_\_ 월

[조사양식 3]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생활홈 개발연구 설문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은 강동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주거욕구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제의 수립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2013.01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세는? \_\_\_\_\_세
3. 귀하의 현재 직업은? \_\_\_\_\_
4. 귀하가 어린시절(학창시절)을 보낸 곳은 주로 어디(지명기재)입니까?  
①특별시·광역시②중소도시③읍지역④면지역⑤기타:
5. 귀하가 청년시절(결혼 전)을 보낸 곳은 주로 어디(지명기재)입니까?  
①특별시·광역시②중소도시③읍지역④면지역⑤기타:
6. 귀하가 중, 장년시절(결혼 후)을 보낸 곳은 주로 어디(지명기재)입니까?  
①특별시·광역시②중소도시③읍지역④면지역⑤기타:

■ 가족사항

7.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8.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혼자②배우자③미혼자녀④기혼자녀⑤부모⑥손자녀⑦기타(친척, 친구 등)

8.1 (부부또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 : 8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①차를 타고 \_\_\_\_\_ 분 ②걸어서 \_\_\_\_\_ 분

③자녀가 없어서 응답할 수 없다. ④ 자녀가 사는 곳을 잘 알지 못 한다.

8.2 (부부또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 : 8.1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①5번 이내 ②6~15번 ③매일 만난다. ④거의 안 만난다

⑤기타 :

8.3 (부부또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 : 8.2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①생일 또는 기일 ②명절 ③어버이날·어린이날 ④아무 때나

■ 경제 상태

9.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원

10. 귀 닥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_\_\_\_\_ 원

11. 귀 닥의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원

12. 귀하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미 상속을 하셨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상속할 재산이 없다.

13. 귀하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①본인이 벌어서 ②자녀들이 부담 ③ 모아둔 돈으로 ④정부보조금으로

⑤기타 :

14. 현재 귀하의 생활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① 식비 \_\_\_\_\_ 원    ② 난방비 : 여름 \_\_\_\_\_ 원 / 겨울 \_\_\_\_\_ 원  
③ 의료비 \_\_\_\_\_ 원    ④ 사교비 \_\_\_\_\_ 원    ⑤ 기타 :

■ 건강 상태

15. 다른 노인에 비해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은 편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야간 나쁜 편    ⑤ 아주 나쁜 편

16. 귀하는 건강검진 및 진료를 1년에 몇 번 받고 있습니까?

- ① 1번    ② 3번 이상    ③ 5번 이상    ④ 10번 이상    ⑤ 몸이 아플 때마다

17. 특별한 질병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현재 고생하고 계십니까?

- ① 과거 질병이 있었다    ② 현재 질병이 있다    ③ 없다

17.1 질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분(17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병명(구체적으로 기재) : \_\_\_\_\_

18. 몸이 아플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 시설은 어디입니까?

- ① 집 근처 보건소    ② 읍내 의원    ③ 인근 대도시 병원    ④ 이용하지 않음  
⑤ 기타 :

18.1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18에서 ①,②,③에 답한 경우)

- ①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②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다  
③ 가족이 데려다 준다    ④ 기타 :

18.2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을 특별히 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8에서 ①,②,

③에 답한 경우)

- ①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② 시설이 좋고 유명하다고 해서  
③ 의료진을 신뢰하기 때문에    ④ 의료비가 저렴한 것 같아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주거 상태

19. 현재 살고계신 주택에서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_\_\_\_\_ 년
20. 귀하가 거주하는 집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모두 골라 주세요)  
(겨울에 춥다, 여름에 덥다, 샤워시설 없다,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부엌, 어두운 조명, 텃밭이 없다, 기타 : \_\_\_\_\_ )
21. 본인 혹은 가족 중 몸이 불편해서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있습니까? (인테리어 목적이 아닌, 단차제거, 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등) ① 있다 ②없다
22. 본인 혹은 가족 중 살고계신 주택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22-1문항으로) ② 없다  
22-1 누가 사고를 당했습니까?(중복 응답) ①본인 ②배우자 ③기타
23. 귀하의 주거생활 중 계절별(여름·겨울)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① 취침장소 (여름 : \_\_\_\_\_ / 겨울 : \_\_\_\_\_ )  
② 손님접대 (여름 : \_\_\_\_\_ / 겨울 : \_\_\_\_\_ )  
③ 식사장소 (여름 : \_\_\_\_\_ / 겨울 : \_\_\_\_\_ )  
④ 휴식장소 (여름 : \_\_\_\_\_ / 겨울 : \_\_\_\_\_ )  
⑤ 가사노동 (여름 : \_\_\_\_\_ / 겨울 : \_\_\_\_\_ )  
⑥ 가족단란 여름 : \_\_\_\_\_ / 겨울 : \_\_\_\_\_ )
24. 귀하는 개인적인 특별한 취미활동이 있으십니까?  
①있다(관계 : \_\_\_\_\_) ②없다
25. 귀하를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시다면 주로 어떤 관계이신가요?  
①있다(관계 : \_\_\_\_\_) ②없다

26.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    ②다가구/다세대 주택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기타(상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
27. 주택규모	① 아파트(연립, 빌라, 다세대 포함) 면적 _____ 평 ② 단독주택 건평 _____ 평 / 대지 _____ 평
28. 주택소유	①본인(배우자소유)    ②자녀 소유    ③전세 ④보증부월세    ⑤사글세    ⑥기타(            ) ①대지와 주택 모두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②주택만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③기타
29. 건축연도	언제 지어진 집입니까? _____ 년

■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30. 귀하의 주택소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①노후에는 자기 소유의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②노후에는 자기 소유의 집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

31.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정부(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택구입자금·전세금 융자 혜택    ②주택 수리비 융자혜택
- ③매월 일정액의 주거비 지원    ④노인공동생활주택 보급 및 입주
- ⑤일자리 마련    ⑥ 기타 :

32. 귀하는 어떠한 집이나 환경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거비 지출(임대료, 난방비, 관리비 등)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주택에 살고 싶다.					
범죄의 위험이 없는 치안이 확보된 지역에 살고 싶다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에 살고 싶다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					
자녀 및 친척들과 가깝게 살고 싶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살고 싶다					

33. 귀하는 귀하의 동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3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

34. 귀하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① 과거에 있었다(34-1 문항으로)    ② 현재 있다(34-2 문항으로)    ③ 없다

34-1 과거에 주민들과 함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 \_\_\_\_\_ )

34-2 현재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_\_\_\_\_ )

34-3 함께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4에서 ① 또는 ②를 답한 경우)  
( \_\_\_\_\_ )

35. 지역에 계신 분들 중 귀하와 특별히 더 친한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분은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있다(어떤 관계 : \_\_\_\_\_ )

② 없다

35-1 나중에 그 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① 그리고 싶다(35-2 문항으로)

② 그리고 싶지 않다(이유 \_\_\_\_\_ )

35-2 언제쯤, 어디서, 어떻게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까?(35-1에서 ①에 답한 경우)

① 언제 : \_\_\_\_\_

② 어디서 : \_\_\_\_\_

③ 어떻게 : \_\_\_\_\_

④ 기 타 : \_\_\_\_\_

※ 다음의 상황에 따라 **각각 살고 싶은 거주 형태**를 골라 주세요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정부에서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고령자전용주택
노인공동생활홈(그룹 홈)	인근에 노인복지센터를 두고, 주택 내부를 안전을 위해 장애제거 설계 10가구 이내 소규모 단지의 노인전용주택으로 개인공간(침실, 거실, 부엌) + 공유공간(공동거실, 공동부엌) + 관리인 + 서비스(식사 및 치료, 상담 등) 제공

* 모든 노인께 질문하세요		
36. 지금보다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① 현재의 집에서 산다	①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 ② 현재의 집을 좀 더 편하게 고쳐서 살고싶다
	②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① 현재의 집보다 작고 관리가 편한 집 ② 의료시설에 인접한 일반주택
	③ 노인전용주거시설로 이사	①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② 노인공동생활주택(그룹 홈)
	⑤기타	③ 대규모 유료 실버타운 ④ 무료양로시설 어디 :

* 모든 노인께 질문하세요		
37. 건강한 경우	① 현재의 집에서 산다	①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 ② 현재의 집을 좀 더 편하게 고쳐서 살고싶다
	②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① 현재의 집보다 작고 관리가 편한 집 ② 의료시설에 인접한 일반주택
	③ 노인전용주거시설로 이사	①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② 노인공동생활주택(그룹 홈)
	⑤기타	③ 대규모 유료 실버타운 ④ 무료양로시설 어디 :

* 모든 노인께 질문하세요		
38. 혼자 되었을 경우	① 현재의 집에서 산다	①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 ② 현재의 집을 좀 더 편하게 고쳐서 살고싶다
	②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 사	① 현재의 집보다 작고 관리가 편한 집 ② 의료시설에 인접한 일반주택
	③ 노인전용주거시설로 이 사	①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② 노인공동생활주택(그룹 홈)
	⑤기타	③ 대규모 유료 실버타운 ④ 무료양로시설 어디 :

39. 노인공동생활주택(그룹 홈)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료는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6, 37, 38에 ③-②로 응답한 경우)



## [조사진행과정]

### 1) 예비조사

- 일정 : 2013년 10월 21일(월)~2013년 10월 31일(목)
- 진행과정 : 1. 국내외 선행연구자료 수집 및 검토  
2. 지자체 현황자료 정리 및 분석  
3.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내용의 설정

### 2) 현장조사(본조사)

- 일정 : 2013년 11월 01일(금)~2013년 11월 10일(일)
- 진행과정 : 1. 사업주체 및 운영관련 관리자 인터뷰  
2. 거주자 인터뷰  
3. 사진촬영, 실측 등 시설물 파악



### 3) 조사내용 정리

- 일정 : 2013년 11월 11일(월)~2013년 11월 18일(월)
- 진행과정 : 1. 시설물 및 프로그램  
2. 시설별 사진 정리  
3. 조사내용의 정리 및 검토

### 4) 보완조사

- 일정 : 2013년 12월 18일(수)~2013년 12월 20일(금)
- 진행과정 : 1. 현장조사시 누락된 사항 추가 조사



### 5) 조사대상지 분석

- 일정 : 2013년 12월 23일(월)~2013년 12월 31일(화)
- 진행과정 : 1. 시설별 사업 추진, 물리적 현황, 운영에 관한 분석